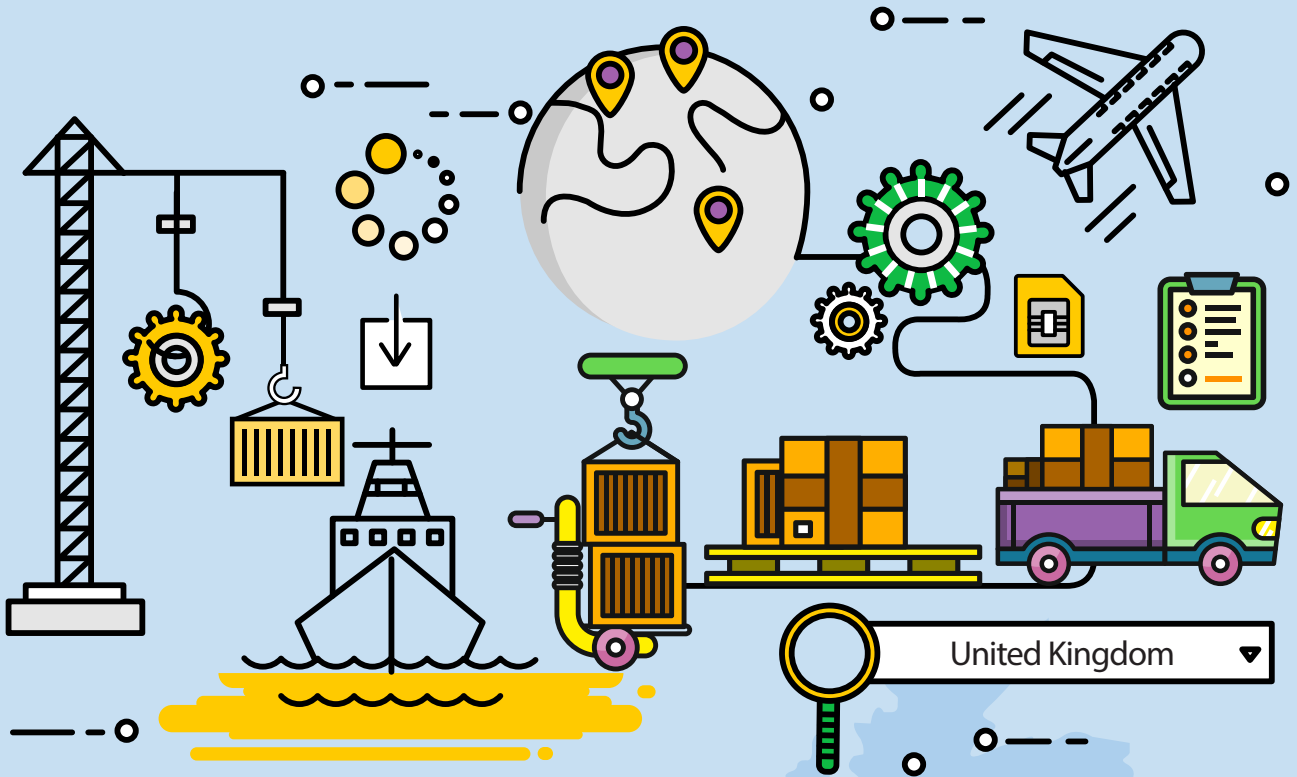




영국 United Kingdom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 United Kingdom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힘든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19년 한국의 무역액은 3년 연속 1조 달러라는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역대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세계 시장을 누비며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실현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글로벌 무역갈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 지역과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생형 FTA는 신흥 유망시장과 FTA를 통한 공조와 협력으로 시장 개방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핵심 외교·경제정책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최근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중미와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영국·이스라엘·인도네시아와 협상을 타결하고 이외에도 메가 FTA 등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E-book에서는 최근 발효 또는 발효 예정인 신규 FTA 체결국 중 영국을 중심으로 한-영 FTA의 활용부터 영국 최신 통관·통상환경까지 영국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정보를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로 수록하고자 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 가운데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E-book은 영국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출처 원문이나 관련 법령,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한-영 FTA 활용 및 영국 현지의 최신 통관·통상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제 I 장 도입

제 1 절	영국 개황	8
제 2 절	영국 주요 사회·경제지표	9
제 3 절	영국 시장환경·특성	19
제 4 절	영국 FTA 체결현황	28
제 5 절	브렉시트 체결일지	31
제 6 절	영국 통관·통상환경	33

제 II 장 영국의 무역현황 및 한-영 FTA 활용방안

제 1 절	영국의 무역현황	36
제 2 절	한-영 교역현황	49
제 3 절	한-영 FTA 개관	54
제 4 절	한-영 FTA 적용절차	60
제 5 절	한-EU(영국) FTA 활용 및 산업별 수출현황	67
제 6 절	한-영 FTA 수출유망품목	71

제 III 장 영국의 통관제도

제 1 절	영국 통관 관련 조직	84
제 2 절	영국 통관 관련 최신 개정사항	87
제 3 절	영국 수출입 통관 절차	97
제 4 절	영국 관세	122

United Kingdom



제Ⅳ장 영국의 통상정책

제 1 절	최근 영국의 통상 관련 동향	128
제 2 절	한-영 양국 간 이슈사항	142
제 3 절	영국의 수입규제	144
제 4 절	영국의 수출규제	187
제 5 절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188

제Ⅴ장 우리기업의 對영국 수출 및 FTA 활용애로와 그 대응방안

제 1 절	우리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194
제 2 절	주요 애로별 사례 및 대응방안	195

부 록 <전문가기고>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전망 및 시사점	KIEP 윤형준 연구원	206
----------------------------	--------------	-----

참고문헌	215
------	-----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United Kingdom



I

도입

제1절 영국 개황

제2절 영국 주요 사회 · 경제지표

제3절 영국 시장환경 · 특성

제4절 영국 FTA 체결현황

제5절 브렉시트 체결일지

제6절 영국 통관 · 통상환경

1

영국 개황

국가명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 적	190만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국 기	 - 영국의 공식 대표 국기 - 명칭: 유니언 잭(Union Jack)
수 도	런던(London)
면 적	243,610 km ²
기 후	온대 해양성
인 구	66,436,000명(2019. 7월 기준)
민 족	백인(86%), 아시아인(7.5%), 흑인(3.3%), 혼혈(2.2%), 기타(1%)
언 어	영어(공용어), 웨일스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종 교	기독교(영국성공회, 로마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포함)(59.3%), 무교(25.1%), 불특정교(7.2%), 이슬람교(4.8%), 힌두교(1.5%), 기타(2.1%)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국왕: 現 엘리자베스 2세 여왕 / 행정수반: 現 보리스 존슨 총리)
통화단위	파운드 스텔링(GBP / 통화기호 : £)



자료 : 영국 통계청, KOTRA, 구글지도

2

영국 주요 사회·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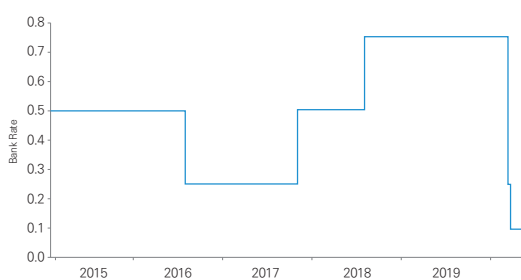
» 영국 주요 사회·경제지표(전망치)

주요지표		단위	2018	2019	2020(f)	2021(f)
금리		%	0.50	0.75	0.10	—
경상수지		% of GDP	−3.86	−3.78	−4.38	−4.48
국내총생산 (GDP)	GDP(PPP)	십억\$	3,065	3,162	2,975	3,155(f)
	GDP 성장률	%	1.34	1.40	−6.50	4.03
무역수지		백만€	−159,133	−196,974	−15,152(1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117.57	119.62	—	—
실업률		%	4.07	3.82	4.82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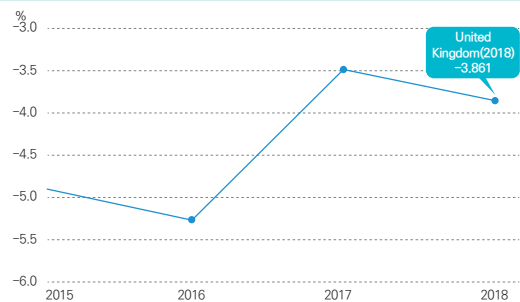
주: f는 추정치를 의미

자료: The World Bank, Bank of England(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0.4), K-stat

이자율 변동 추이(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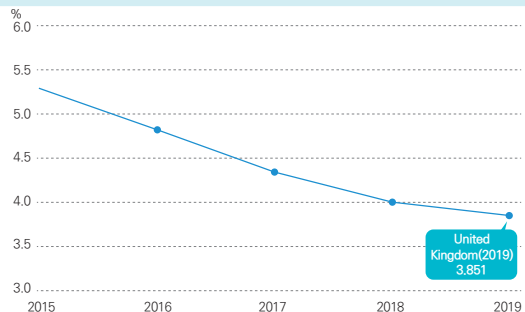
경상수지 변동 추이(2015-2018)



GDP 성장률 변동 추이(2015-2018)



실업률 변동 추이(2015-2019)



자료: Bank of England, World Bank

✓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해석

- **금리(Bank Rate)** : 영국 금리는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매달 결정하여 발표하며 금리의 변동은 가계대출 · 저당 · 채권 · 환율 등 금융시장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줌
(예상치 상회 시 : 파운드 가치 **하락** 예상 / 예상치 하회 시 : 파운드 가치 **상승** 예상)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 기업 등 경제단위가 행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소득, 지불되는 통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국의 국제적인 경제흐름과 장기적인 환율 및 발전을 예측할 수 있게 함.
前분기 수치에 비해 변화된 수치를 퍼센트로 나타냄(예상치 상회 시 : 파운드 가치 **상승** 예상 / 예상치 하회 시 : 파운드 가치 **하락** 예상)
- **국내총생산(GDP)** : 영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 국민총생산(GNP)에서 순수출을 빼서 산출함(예상치 상회 시 : 파운드 가치 **상승** 예상 / 예상치 하회 시 : 파운드 가치 **하락** 예상)
- **무역수지(Trade Balance)** :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 의해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말함. 무역수지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 등을 반영하여 국제수지항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통화가치에도 영향을 미침
(예상치 상회 시 : 파운드 가치 **상승** 예상 / 예상치 하회 시 : 파운드 가치 **하락**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소비자들이 구입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 바구니의 평균 물가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됨
(예상치 상회 시 : 파운드 가치 **상승** 예상 / 예상치 하회 시 : 파운드 가치 **하락** 예상)
-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 매 달 실시하는 조사로 영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가격의 변화를 추적함. 공장에서 1차 출하가격을 조사하여 공장도가격수치라고도 하며, 수치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이 예상됨
(예상치 상회 시 : 파운드 가치 **상승** 예상 / 예상치 하회 시 : 파운드 가치 **하락** 예상)
- **실업률(Unemployment Rate)** :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낮은 실업률은 보다 많은 소득으로 분배되고 많은 소비가 이루어져 경기의 활성화를 이끌지만, 이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음(예상치 상회 시 : 파운드 가치 **하락** 예상 / 예상치 하회 시 : 파운드 가치 **상승** 예상)

자료: 신한금융투자 영국 경제지표 따라잡기

» 2019년 영국 기업환경평가 순위¹⁾

■ '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영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8위를 기록함

* 10위권 국가 :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덴마크, 5위 대한민국, 6위 미국, 7위 조지아, 8위 영국, 9위 노르웨이, 10위 스웨덴

- 종합순위는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9→8위)하였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서유럽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 영국 및 EU국 중에서 10위권 내에 진입한 국가는 덴마크 · 영국 · 스웨덴 3개국뿐이며, 영국은 덴마크(4위)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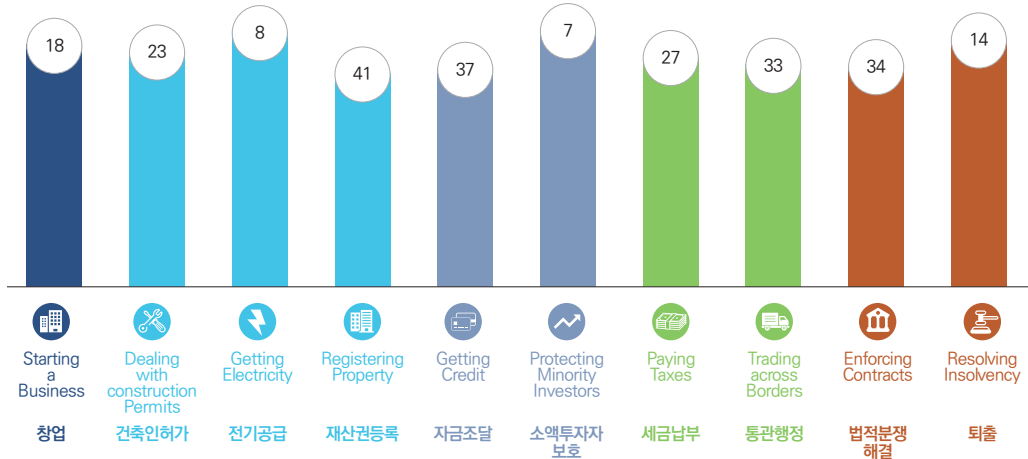
* EU 27개국 순위 : 덴마크(4위), 스웨덴(10위), 리투아니아(11위), 에스토니아(18위), 라트비아(19위), 핀란드(20위), 독일(22위), 아일랜드(24위), 오스트리아(27위), 스페인(30위), 프랑스(32위), 슬로베니아(37위), 포르투갈(39위), 폴란드(40위), 체코(41위), 네덜란드(42위), 슬로바키아(45위), 벨기에(46위), 크로아티아(51위), 헝가리(52위), 키프로스(54위), 루마니아(55위), 이탈리아(58위), 불가리아(61위), 룩셈부르크(72위), 그리스(79위), 몰타(88위)

- (부문별) 총 10개 부문 중 3개 순위 상승, 1개 유지, 6개 하락
 - 창업(▲1) · 재산권등록(▲1) · 소액투자자보호(▲8)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며, 건축 인허가(▼5) · 전기공급(▼1) · 자금조달(▼5) · 세금납부(▼4) · 통관행정(▼3) · 법적분쟁 해결(▼2)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함
 - (세금납부) 최근 영국에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세금납부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됨

* 최근 정년이 사라진 영국에서는 과거의 직장연금과 다른 종류의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제도를 도입함. 이는 피고용자가 자신의 연봉 3%를 내면 고용자가 2%를 보조해주는 연금제도로 최대 8%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개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임

■ 영국 정부는 앞으로 더욱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자유무역거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영국의 기업환경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영국 종합 및 주요 지표 순위



자료: World Bank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World Bank, Doing Business rankings) 평가방식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총 순위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 이는 국가별로 동일 기준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국가 간 순위 비교시 평가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제한된 부문에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법령 중심으로 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 영역은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



» 2020년 영국 경제 전망²⁾

■ 2020년 1/4분기 영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2.0%로 역성장을 기록함(전기대비, 속보치)

○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20.3.23일 시행) 등이 영국 경제 전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됨

– 물리적 이동을 철저히 제한하는 이동제한(lockdown) 조치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지출·정부 지출·총고정자본형성·기업투자·무역수지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에서도 -1.6%를 기록하였으며, 비록 1분기 GDP 속보치가 시장예상(전기대비, -2.6%)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임

영국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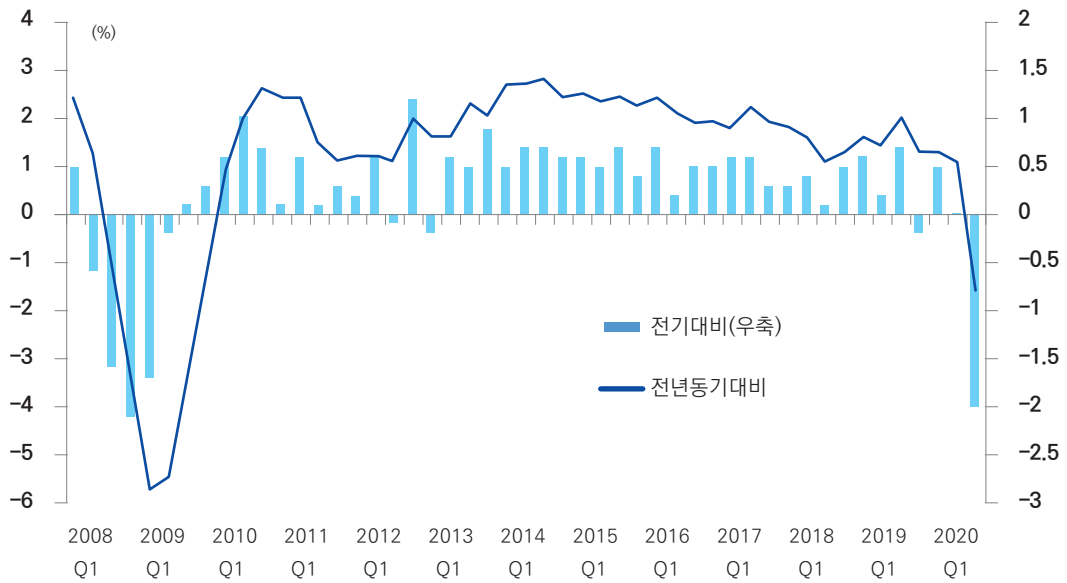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
	1Q	2Q	3Q	4Q	1Q	2Q	3Q	4Q	–
전기 대비	0.5%	-0.6%	-1.6%	-2.1%	-1.7%	-0.2%	0.1%	0.3%	중략
전년동기 대비	2.4%	1.2%	-1.1%	-3.6%	-5.8%	-5.5%	-3.9%	-1.6%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전기 대비	0.1%	0.5%	0.6%	0.2%	0.7%	-0.2%	0.5%	0.0%	-2.0%
전년동기 대비	1.1%	1.3%	1.6%	1.4%	2.0%	1.3%	1.3%	1.1%	-1.6%

자료: 주영국대사관

■ 최근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의 영향으로 서비스업·건설업 부문이 특히 크게 부진하였으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동 영향이 본격화되는 2분기 GDP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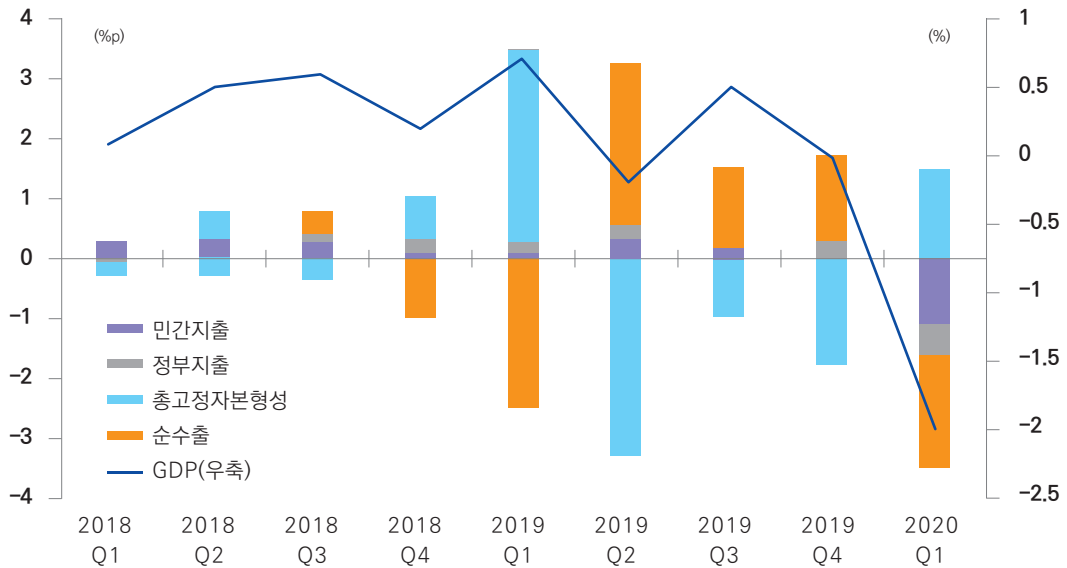
○ 영국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 -17.5%(DB), -25%(영란은행)

영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ONS, 주영국대사관

영국 주요 경제 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ONS, 주영국대사관

» 최근 영국의 통화정책³⁾

■英格兰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는 '20. 6월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역사상 최저 수준인 현 정책금리(0.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英格兰은행(Bank of England)의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MPC)는 매월 9명으로 이루어진 구성위원의 표결을 통해 영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함
- 가장 최근인 6월에 개최된 영국 통화정책회의('20.6.19)에서는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현 금리(0.1%)의 동결이 결정되었으며, 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되지 않음

영국의 정책금리 추이

단위: %

2007년 6월	2007년 7월	2016년 8월	2017년 11월	2018년 8월	2020년 3월 11일	2020년 3월 19일	2020년 6월(현재)
5.50	5.75	0.25	0.50	0.75	0.25	0.10	0.10

■ 또한 이와 함께 현재 6,450억 파운드인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Facility)의 한도를 1,000억 파운드 가량 증액하고, 증액분 전부를 국채 매입에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위원 9명 중 8명 찬성)

- 이는 지난 5월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9명 위원 중 2명이 1,000억 파운드 증액 의견을 제시한 바에 따른 결정사항임

■ (결정배경) 최근 영국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안들이 결정된 까닭은 올해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인한 영국 경제성장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 최근 코로나 19 확산 대응조치 완화 등으로 영국 내 경기개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문별로 리스크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영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근래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매우 침체된 상태이나 최근 각국에서 대응조치를 완화하면서 소비지출 증가, 추가 통화·재정 정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2분기 중 세계경기 하락 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아직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는 아니며, 이로 여전히 코로나 19 관련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태임

○ 최근 영국의 경제지표 추이는 이러한 영국의 통화정책 결정 배경을 보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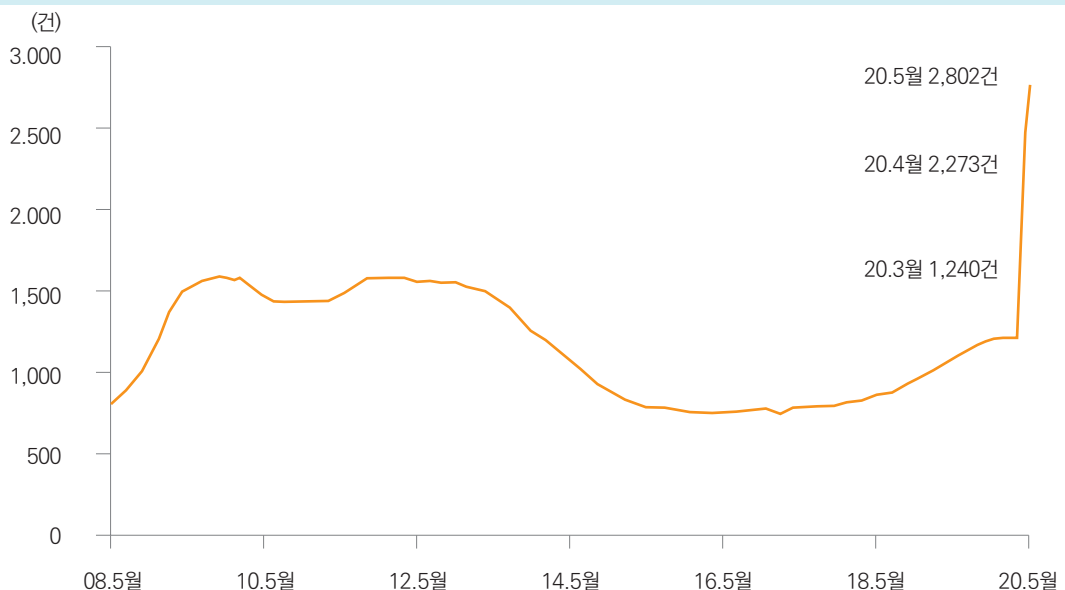
- '20년 2~4월 간 영국의 실업률은 지난 1~3월과 거의 비슷한 상태이나,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월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비자발적 휴직(furloughed) 근로자 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영국 노동시장의 회복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하락, 국내 생산 활동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영란은행 목표수준인(2.0%)을 크게 하락하는 수치**이며, 영국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한 동안(in coming quarters) 수요 위축 등에 따른 하방압력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월 1,234.7천 건 → 3월 1,240.1천 건 → 4월 2,272.8천 건 → 5월 2,801.7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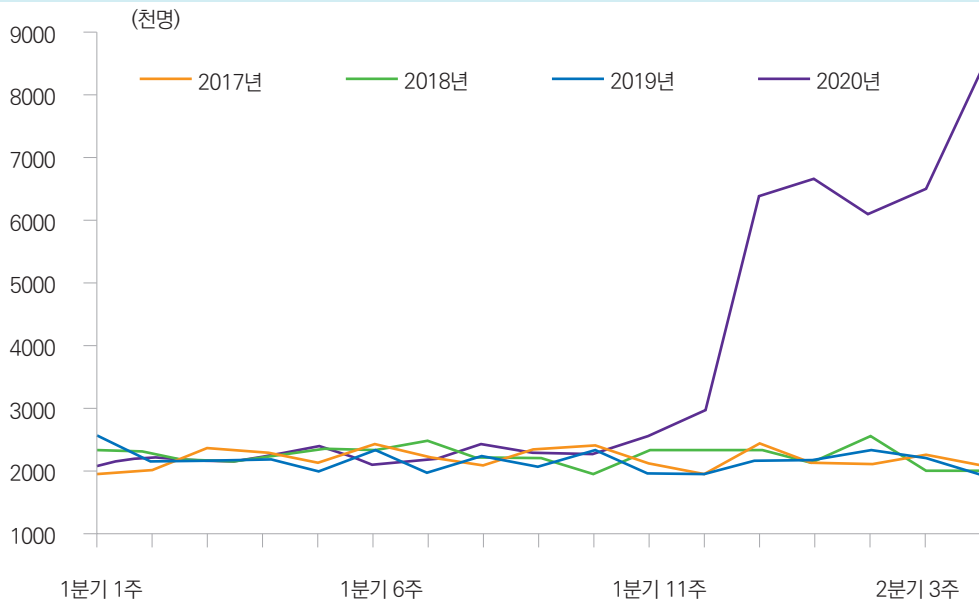
** 4월 0.8%, 5월 0.5%

영국의 실업급여 신청건수 추이



자료: DWP, 주영국대사관

영국의 비자발적 휴직자수 추이



자료: ONS, 주영국대사관

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ONS, 주영국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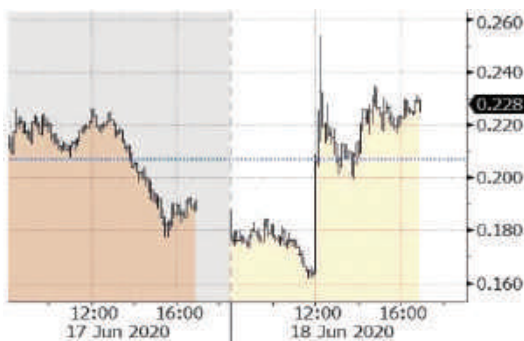
- (정책방향) 영국정부는 향후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금번 결정된 국채매입 규모 증액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적 대책이며, 앞으로 자산매입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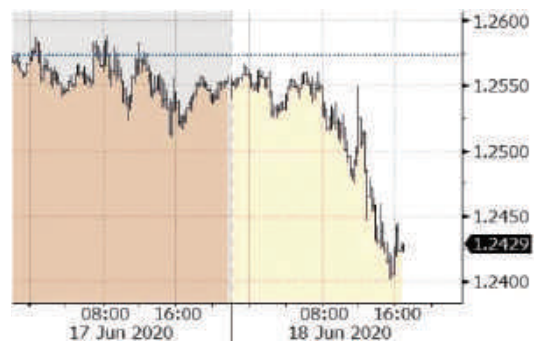
- (향후전망) 금번 영란은행 통화정책 기조는 통화량과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hawkish)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가까운 시일 내 영란은행이 금리를 변경하거나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영국 국채(10년물) 금리 및 파운드화 환율

[영국 국채(10년물) 금리]



[파운드화 환율]



자료: 영란은행, 주영국대사관

3

영국 시장환경 ·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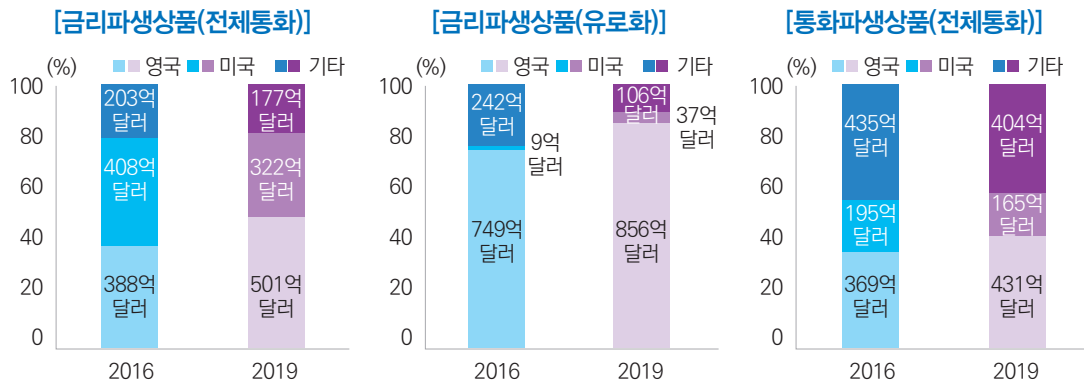
»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⁴⁾

■ 영국은 세계 금융의 절반을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금융거래 허브(hub)로 금융시장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음

- 영국의 금융특구인 ‘런던시티(City of London)’는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으로 약 5,0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이에서 결제되는 금융거래의 규모와 종류는 엄청남
- 실제 '19년, 국가별 장외파생상품 거래 중 영국은 금리파생상품과 통화파생상품 거래 모두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리파생상품(전체통화) 50.1%, 금리파생상품(유로화) 85.6%, 통화파생상품 43.1%(2019, BIS)

국가별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



자료: BIS,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2019)

- 이처럼 런던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중심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 비해 낮은 규제수준, 미국 및 아시아 지역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간대와 용이한 접근성, 영어 사용, 우수한 법률 및 회계 서비스, 인적자본의 집중 등과 같은 경쟁력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임

■ 그러나 최근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브렉시트(Brexit)*發 관련 정책 · 규제변화에 따른 혼란으로 영국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관련 투자자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결정됨

✓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① **(영국 금융회사의 EU내 영업 제약)** 영국 금융회사가 규제 동등성*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진입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EU의 불명확한 판단기준, 결정주체 분산, 무협의 철회 가능성 등으로 안정적 영업이 제약될 소지가 있음

*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수준에 부합한다고 결정할 경우 동 비회원국의 금융 회사는 개별 회원국의 별도 인가 없이 EU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

② **(영국 내 금융회사의 EU 이전)** 영국 금융회사들이 규제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EU에 자회사 및 지점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최근 런던에서 여타 유럽도시로 사업부문 재배치를 완료 또는 계획 중인 영국 내 금융 회사는 '19.10월 기준 332개로 조사됨

③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 유로화 거래가 많은 영국 내 중앙청산소와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위기 시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영란은행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책임*이 불분명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영국은 브렉시트로 EU회원국 간 분쟁조정기구인 유럽재판소 관할에서 제외되며, EU의회나 감독기구를 통한 논의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융 위기 시 통화스왑이나 구제금융을 위한 EU와의 합의도출이 과거 보다 어려워질 수 있음

- 또한 EU내 중앙청산소들이 유로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영국 중앙청산소들의 거래 유동성이 줄면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 또한 존재함

▶ **(종합평가)** 영국이 현행 금융법규를 유지하여 EU의 규제 동등성 인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런던의 금융 중심지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금융위기 시 정책 당국들의 공동대응 지연 가능성에 대한 준비와 영국 및 EU 시장 양측의 긴밀한 감독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 주영국대사관, Brexit이 영국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20.04.09)

○ 영국 정부는 최근 영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기반 이전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런던의 금융서비스 인프라와 이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때 세계금융회사의 런던 선호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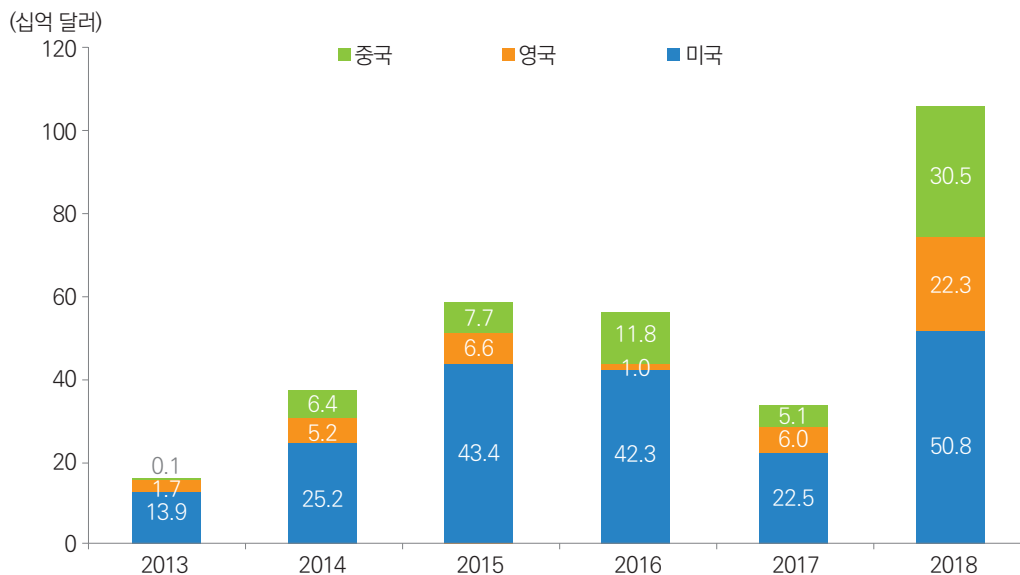
- 그러나 영국 산업에서 금융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에 영국 정부는 핀테크(FinTech)를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하고 핀테크 중심의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임

- '18년 기준, 영국의 핀테크(FinTech) 투자액은 약 223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달성했으며, 현재 영국은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핀테크 주요 국가 중 하나임

✓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혁신형 금융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임. 핀테크는 최근 모바일·빅데이터·SNS 등 첨단정보기술을 통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 핀테크(FinTech) 투자 추이



자료: Pitchbook, 삼정 KPMG Analysis, 2019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영국의 성장하는 핀테크 시장은 뛰어난 IT 기술을 갖춘 우리기업에게도 매우 유리한 기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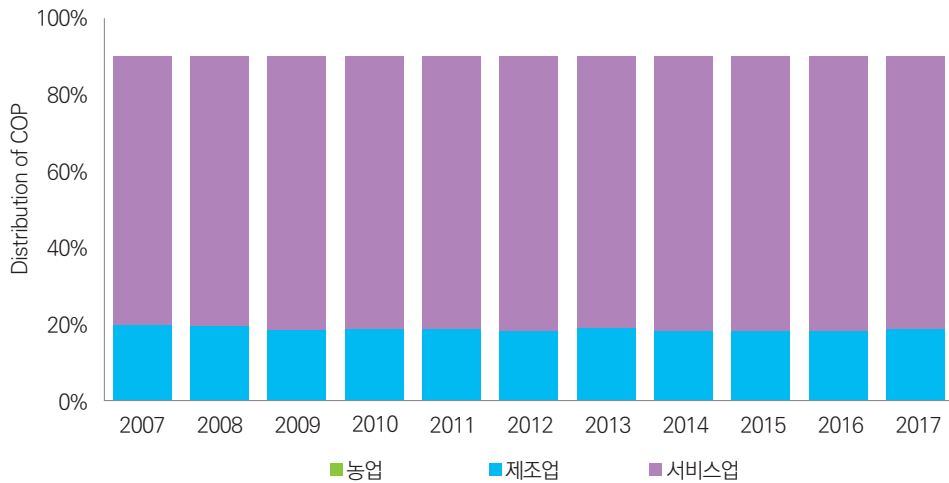
- 최근 영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금조달,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국은 우수한 금융인재, 디지털 활용에 대한 높은 소비자 인식 등을 갖추고 있어 세계 최대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하기에 최적화된 매력적인 시장임
 -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은 현재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IT 서비스 및 인프라는 꾸준히 발전중임
- 이로 우리기업은 현재 영국의 금융시장 및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영국 핀테크 시장으로의 진출 및 확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핀테크와 같은 신규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주로 비용 대비 효율이나 규제요건의 완화 등 실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중요시하며 이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영국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관련 투자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영국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활발하므로 우리기업은 이를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고객 세그먼트(segment),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해야 함

»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정부의 미래 산업 육성 정책⁵⁾

■ 영국의 경제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영국 통계청(ONS) 자료에 따르면, '07년부터 '17년까지 영국의 GDP 산업별 비중에서 서비스 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이 영국 GDP 산업별 비중에서 계속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 꾸준히 영국 경제구조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뜻함

영국 국내총생산(GDP) 산업분야별 비중('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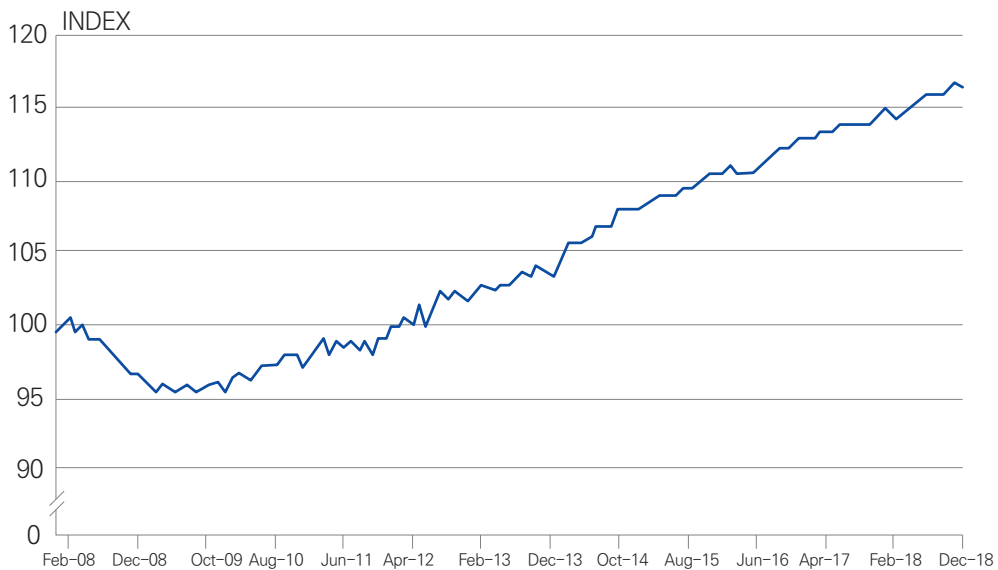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KOTRA

○ 또한 영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영국의 서비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영국 서비스산업 성장지수('08~'18)

Seasonally adjusted, January 2008 to December 2018, Index (2008 Quarter 1 =100)



자료: 영국 통계청(ONS), KOTRA

- 이에 반해 영국의 제조업 발전지수는 '08년에서 '18년까지 약 2.7% 하락하였으며, 영국의 제조업은 서비스 산업에 비해 다소 침체된 상황임

■ 그러나 이처럼 한 쪽에 치우친 산업구조는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며 이로 최근 영국 정부는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 중임

■ 다음은 최근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육성 관련 정책으로 우리기업들은 영국 수출전략 수립 시 해당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미래산업정책)** '17. 11월, 영국 정부는 「산업전략 정책보고서(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에서 생산성 향상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5가지 기본가치와 이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시함

- 영국 정부에서 제시한 5가지 기본 가치는 ① 아이디어, ② 사람, ③ 인프라, ④ 비즈니스 환경, ⑤ 장소이며, 핵심정책은 각 가치를 성장동력 발판으로 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음

○ **(녹색성장전략)**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해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 추구 전략으로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및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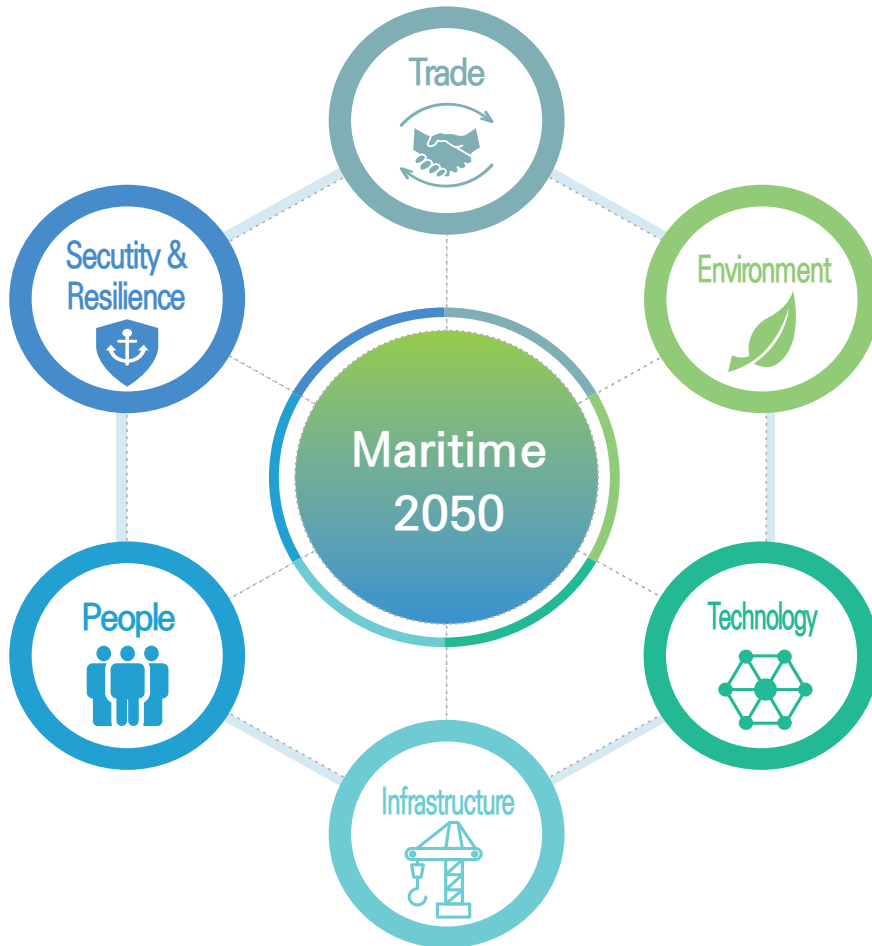
- 대표적인 관련 정책은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Act), 국가재생에너지 실천 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O2계획(Air quality plan for nitrogen dioxide in UK), ULEZ(The Ultra Low Emission Zone) 설정 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저탄소 기술, 공정 및 시스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2050전략)** '20. 1월, 발표된 「해양 2050 전략(Maritime 2050 Strategy)」은 영국 정부의 2050년까지 해양산업 장기전략과 비전을 담고 있음

- 해양 2050 전략에는 해양 클러스터를 통해 정부·해양분야 및 학계와 협력관계를 맺고 영국을 해양사업의 장으로 발전시키며, 전 세계 모든 해양 비즈니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음

영국 '해양 2050 전략(Maritime 2050 Strategy)'



자료: 영국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uk/>), 영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

- **(수출장려정책)** '18. 1월,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전략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이외에도 영국 정부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비즈니스 성장 및 수출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장벽 극복 및 국제 네트워크 창출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영국 소비자들의 주요 특성⁶⁾

- 영국 소비자들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영국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매우 신중하게 구입하는 편이며 해당 제품과 다른 제품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체로 재구입 시에도 기존 제품을 유지하여 구매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영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여 우리기업을 비롯하여 영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진입장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따라서 영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은 영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충성도가 높은 기존 고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leadership)이란?

- 마이클 포터에 의해 제창된 기업 경쟁전략 중 하나로, 특정 제품·서비스의 시장에서 경쟁사의 상품과 비교하여 기능 및 서비스면에서 차이를 마련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얻는 전략을 말함
- 차별화 전략 수립 시에는 크게 다음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함
 - : ① 경제성, ② 기호성, ③ 신뢰성, ④ 기능성, ⑤ 편의성

자료: 동아비즈니스리뷰, 네이버 블로그(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wa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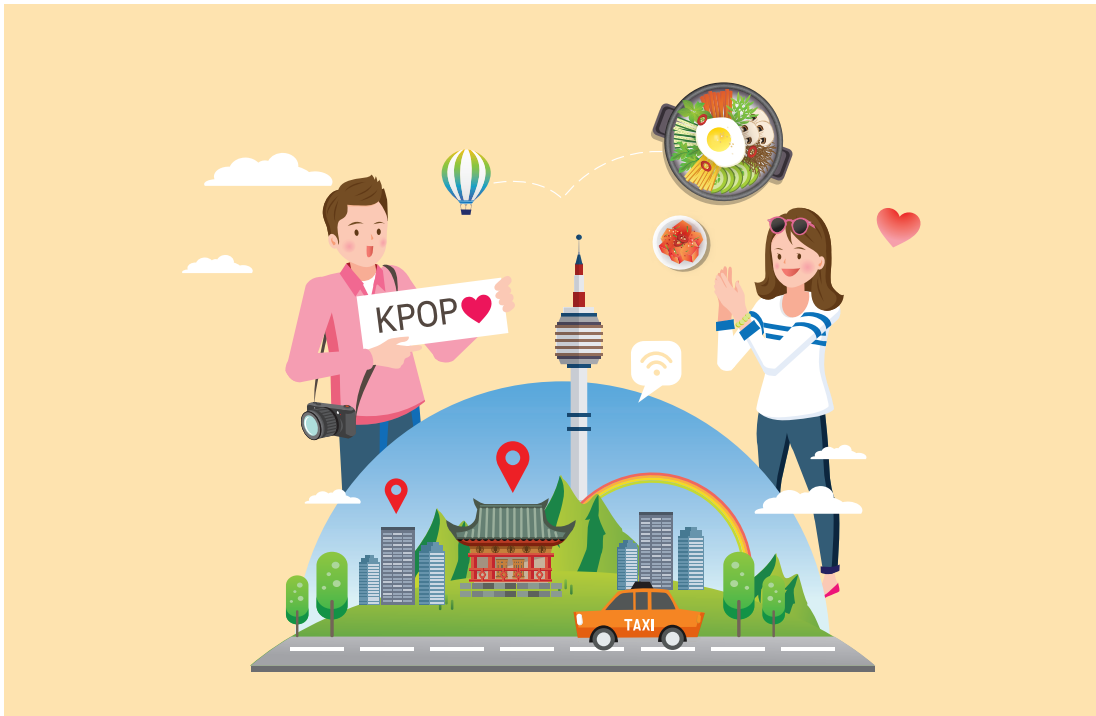
■ 영국 소비자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저가 추구형 소비패턴을 꼽을 수 있음

- 영국 소비자들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저가격을 추구하는 저가 선호형 소비문화에 익숙해졌으며, 고마진의 유통구조와 식품·서적·아동의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에 높은 부가가치세(20%)가 부과되어 평균 상품가격 자체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임
 - 이로 영국 소비자들에게 저가를 추구하는 소비문화가 오래 전부터 자리 잡히게 되었으며 현재도 대부분 그러함
- 이러한 영국 소비자들의 성향은 영국의 소비가 주로 세일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음

- 영국의 주요 세일 기간은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 여름 · 겨울 정기 바겐세일(6월 · 12월) 등이며, 이 중 특히 성탄절 다음날인 박싱데이(Boxing Day)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최대 세일이 이루어지는 날로 영국의 소비는 이러한 주요 세일기간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젊은 연령층에서부터 가격보다 품질에 기준을 둔 소비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함

- 특히 영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은 동남아 등 여타 아시아 시장 제품보다 고품질의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로 주로 젊은 층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이 삼성 · LG · 현대차 · 기아차 등의 주요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여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고 높은 국가이미지와 제품이미지를 형성함
 - 최근에는 K-Beauty와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는 더욱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영국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우리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영국 FTA 체결현황⁷⁾

■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영국은 더 이상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당초 영국 및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년 12월 31일까지를 브렉시트 이행 기간으로 두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기존과 같이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 및 관련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함

- 이로 영국은 이행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그대로 포함되어 기존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불가함*

* 브렉시트 이행기간은 양측 합의 하에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여부는 올해 6.30일까지 결정되어야 함. 그러나 6.15일 (현지시간), 양측 정상은 영-EU 미래관계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이행기간은 당초 계획과 같이 '20. 12.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됨.

■ 이에 영국정부는 기존 협정국들과 교역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조건을 유지 및 복제하여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을 완료한 국가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국가와의 협정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이후 즉시 발효되어 효력을 가짐

- (서명완료) 안데스국가 3개국, 카리브국가 13개국, 중미 6개국, 동남아프리카 4개국, 페로제도, 조지아,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이스라엘, 요르단, 코소보,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피지 ·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자치정부, 한국, 남아프리카관세동맹 5개국 및 모잠비크, 스위스, 튀니지*

* 2019년 말 기준, 영국 정부 발표자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이 완료된 국가는 영국과 교역 시 이행기간 동안은 기존 EU 무역협정을 적용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영국과 새롭게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특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수출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을 완료한 국가

단위: 백만 파운드(£)

국가 또는 블록	영국-채결국 간 교역액('19)
안데스 국가(Andean countries)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	2,893
카리브국가(Cariforum) (안티구아바부다·바하마·바베이도스·벨리즈·도미니카·도미니카공화국·그레나다·자메이카·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트리니다드토바고)	3,226
중미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1,397
칠레	2,150
동남아프리카(ESA) (마다가스카르·모리셔스·세이셸·짐바브웨)	1,615
페로제도	295
조지아	168
아이슬란드·노르웨이	26,680
이스라엘	5,099
요르단	542
코소보	9
레바논	826
리히텐슈타인	121
모로코	2,485
피지·파푸아뉴기니	309
팔레스타인자치정부	11
한국	11,710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및 모잠비크(SACUM) (보츠와나·세스와티니·레소토·나미비아·남아공·모잠비크)	12,129
스위스	39,116
튀니지	618

자료: 영국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uk/>)

○ 반면 기존 EU 협정 체결국 중 다음 국가는 영국과 무역협정 체결은 아니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협상진행) 알바니아, 알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카메룬,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동아프리카공동체, 이집트, 가나, 멕시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 2019년 말 기준, 영국 정부 발표자료

- 만일 협상중인 무역협정이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국들은 영국과 교역 시 이행기간 동안은 EU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나,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는 EU 무역협정의 적용이 불가하며 WTO 협정을 적용받음
- 이로 이행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해당국과 영국 간 교역시 기존 적용되던特惠세율에 비해 고세율이 부과되므로 양국 교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

영국과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

단위: 백만 파운드(£)

국가 또는 블록	
알바니아	가나
알제리	멕시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카메룬	몬테네그로
캐나다	북마케도니아
코트디부아르	세르비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탄자니아 · 케냐 · 우간다 · 르완다 · 브룬디)	싱가포르
이집트	우크라이나

자료: 영국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uk/>)

5

브렉시트 체결일지⁸⁾

■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는 20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발표됨

- 이는 영국이 EU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지 47년만이자,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된 지 3년여만의 일임

브렉시트 체결일지	
일자	주요 내용
'16. 06. 23	국민투표 결과 탈퇴 결정(탈퇴 51.9%, 잔류 48.1%)Cameron 총리 사임 의사 발표 (차기 당대표 선출시까지 총리직 유지)
'17. 01. 17	May 총리, Lancaster House 연설, EU탈퇴 계획(12개 협상목표)발표
'17. 01. 24	대법원(전원재판부) Gina Miller case에서 정부 패소 결정
'17. 01. 26	정부, EU탈퇴통보법안 제안
'17. 05. 16	노동당 총선 공약 발표 (국민투표 결과 수용, 일자리와 생계 우선, EU와의 긴밀한 신규관계, 노동자 권리와 환경 기준 보호, EU시민에 확실성 제공, 협상 중 의회에 의미있는 역할(meaningful role) 부여,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혜택 유지 등으로 보수당과 차별화)
'17. 08. 28	제3자 영-EU 탈퇴 협상
'18. 01. 26	재무장관, EU탈퇴부장관, 기업부 장관 공동으로 업계에 전환기간 중 영국의 기대수준에 관한 서한 발표
'18. 02. 07	EU 집행위, 이행기간 협정 문안 초안 발표
'18. 02. 16	EEA/EFTA 국가들과 협의 개시
'18. 02. 28	EU집행위, 탈퇴협정 초안 발표 (2017.12월 공동보고서 내용을 법률문안으로 전환한 문건)
'18. 03. 05 – 03. 07	영-EU 탈퇴 협상
'18. 03. 07	Tusk 상임의장, 영-EU 미래관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19. 03. 21	EU정상회의 결과, Yes Deal의 경우 5.22 탈퇴, No Deal의 경우 4.12 탈퇴로 결론
'20. 01. 31	영국 EU 탈퇴

자료: 주영국대사관

○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는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을 두고 영국의 EU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미래관계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20년 6월 말 현재, 영-EU 간 미래관계 협상은 4차까지 진행된 상태
- 영-EU 미래관계협상에서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사회보장 공조, 인력이동,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행기간이 종료 되는 올해 말까지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양측 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만일 이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EU 간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앞으로 양측은 WTO 체제를 적용 받으며,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상황이 현실화됨

영-EU 미래관계 협상 진행 경과

일자	주요 내용
'19. 10. 17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협상 기초문서)
'20. 02. 25	EU 이사회 협상지침 채택
'20. 02. 27	영국 협상지침(command paper) 발표
'20. 03. 02 - 03. 05	제1차 협상(협상세척 채택)
'20. 03. 18	EU측 협상 초안 공개
'20. 04. 20 - 04. 24	제2차 협상
'20. 05. 11 - 05. 15	제3차 협상
'20. 05. 19	영국측 협상 초안 공개
'20. 06. 01 - 06. 05	제4차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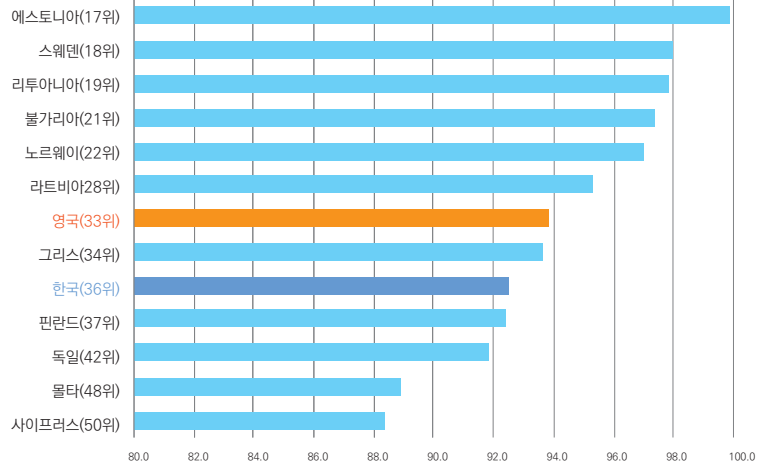
자료: 주영국대사관(2020.6.9.일 기준자료)

6

영국 통관 · 통상환경

영국 및 EU 국경 간 무역 용이성(Trading across Borders)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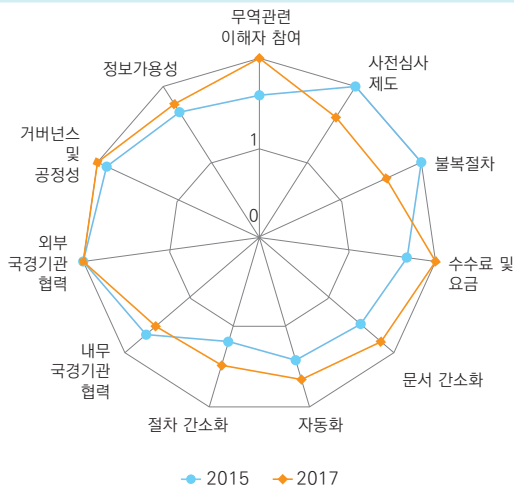
네덜란드·덴마크·루마니아·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
크로아티아·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헝가리(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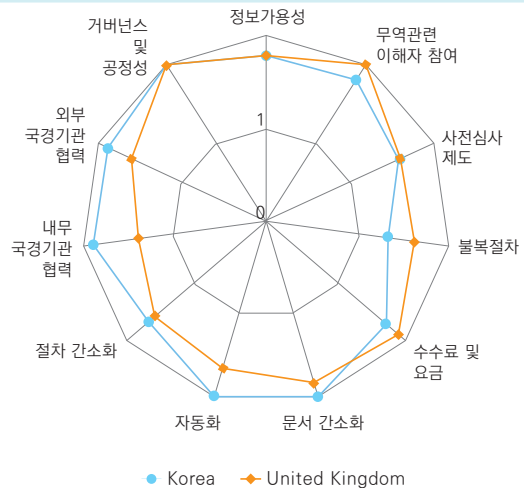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 Trading across Borders

무역원활화 수준

영국 2015-2017 무역원활화 수준 비교



한국-영국 무역원활화 수준 비교



자료: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검색일자:2020년 5월)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United Kingdom



Ⅱ

영국의 무역현황 및 한-영 FTA 활용방안

제1절 영국의 무역현황

제2절 한-영 교역현황

제3절 한-영 FTA 개관

제4절 한-영 FTA 적용절차

제5절 한-EU(영국) FTA 활용 및
 산업별 수출현황

제6절 한-영 FTA 수출유망품목

1

영국의 무역현황

» 세계 무역 중 영국의 위치

단위: USD 백만(\$)

구분	세계 총수출액	영국 수출액	영국 순위	영국 비중	세계 총수입액	영국 수입액	영국 순위	영국 비중
2019년	18,739,914	467,512	11위	2.5%	18,998,049	691,974	5위	3.6%
2018년	19,456,187	490,840	10위	2.5%	19,813,394	671,694	5위	3.4%
2017년	17,701,055	441,847	10위	2.5%	17,929,591	640,908	5위	3.6%
2016년	16,031,154	411,463	10위	2.6%	16,159,373	636,368	4위	3.9%

자료: ITC Trade map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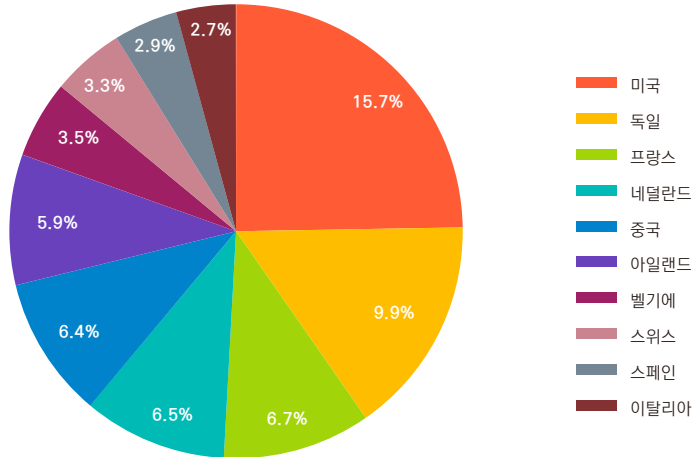
■ '19년 기준, 세계 전체 수출액은 약 18조 7천억, 수입액은 약 18조 9천억으로 총 교역액은 약 37조 7천억에 달함

- 이 중 영국은 수출은 약 4,675억불을 기록하며 세계 11위 수출국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약 6,919억불로 세계 3위를 기록함
 - 최근 4년간('16~'19) 영국의 세계 교역국 지위는 수출입 모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수출 10~11위, 수입 5위)
 - 또한 영국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영국은 수출입이 모두 활발한 세계 주요 교역국 중 하나임

영국의 10대 수출국

단위: 백만불, %

영국의 10대 수출국



순위	국가	금 액				18-19 증감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체	411,463	441,847	490,840	467,512	-5%
1	미국	61,569	59,098	65,985	73,520	11%
2	독일	43,797	46,663	47,511	46,378	-2%
3	프랑스	26,462	30,381	32,082	31,287	-2%
4	네덜란드	25,485	27,556	34,528	30,167	-13%
5	중국	18,142	21,383	27,702	30,106	9%
6	아일랜드	22,901	25,140	28,285	27,568	-3%
7	벨기에	15,716	17,753	18,980	16,457	-13%
8	스위스	19,774	20,287	25,597	15,609	-39%
9	스페인	13,030	13,465	13,976	13,656	-2%
10	이탈리아	13,129	13,204	13,979	12,678	-9%
22	한국	5,958	7,496	7,795	4,801	-38%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자료: ITC Trad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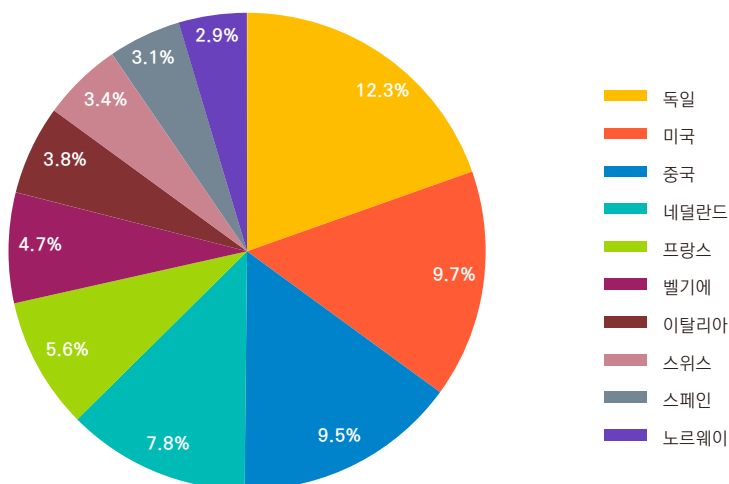
■ '19년 기준, 영국의 10대 수출국은 미국 · 독일 · 프랑스 · 네덜란드 · 중국 · 아일랜드 · 벨기에 · 스위스 · 스페인 · 이탈리아임

- 영국의 10대 수출국은 세계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EU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우리나라는 영국의 상위 22위 수출 대상국이며, 최근 영국의 對韓 수출액은 약 48억 불로 전년대비 -38% 가량 감소함

» 영국의 10대 수입국

단위: 백만불, %

영국의 10대 수입국



순위	국가	금 액				18-19 증감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체		636,368	640,908	671,694	691,974	3%
1	독일	88,077	89,639	92,101	85,204	-7%
2	미국	57,103	58,828	63,294	67,094	6%
3	중국	59,576	59,861	63,392	65,544	3%
4	네덜란드	47,382	51,348	55,888	53,817	-4%
5	프랑스	35,950	36,459	37,854	38,902	3%
6	벨기에	31,523	32,115	34,732	32,190	-7%
7	이탈리아	24,161	24,882	26,733	26,315	-2%
8	스위스	26,596	11,984	7,410	23,665	219%
9	스페인	21,251	20,176	21,119	21,212	0%
10	노르웨이	17,473	23,166	25,567	19,775	-23%
26	한국	5,950	5,305	5,192	5,035	-3%

■ '19년 기준, 영국의 10대 수입국은 독일 · 미국 · 중국 · 네덜란드 · 프랑스 · 벨기에 · 이탈리아 · 스위스 · 스페인 · 노르웨이임

- 영국의 10대 수입국에서도 세계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EU 국이 차지하고 있음
- (한국) 우리나라는 영국 수입국 중 26위이며, 영국의 對韓 수입액은 최근 4년간('16~'19) 평균 53억불 정도로 매해 큰 변동 없이 평균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의 10대 무역 흑자국

단위: 백만불

영국의 10대 무역 흑자국				
영국의 10대 무역 흑자국				
순위	2018년		2019년	
	국가	무역수지	국가	무역수지
	전 체	-180,854	전 체	-224,462
1	스위스	18,187	아일랜드	9,874
2	아일랜드	9,956	아랍에미리트	8,092
3	아랍에미리트	7,884	홍콩	6,812
4	홍콩	7,868	미국	6,425
5	싱가포르	5,198	싱가포르	4,669
6	미국	2,691	아제르바이잔	2,343
7	한국	2,603	사우디아라비아	1,751
8	사우디아라비아	2,227	몰타	1,659
9	호주	2,181	북마케도니아	1,387
10	터키	2,127	카타르	1,269

주: "Areas NES (not elsewhere specified)"는 제외

자료: ITC Trade map

■ 영국은 세계 10위의 수출대국이지만 무역수지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약 436억불 가량 증가함('18년 약 -1,808억불 → '19년 -2,244억불)

○ 그 중, 최근 영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한 10대 국가는 '18년 스위스·아일랜드·아랍에미리트·홍콩·싱가포르·미국·한국·사우디아라비아·호주·터키, '19년은 아일랜드·아랍에미리트·홍콩·미국·싱가포르·아제르바이잔·사우디아라비아·몰타·북마케도니아·카타르로 나타남

- 이 중 아일랜드·아랍에미리트·홍콩·미국·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는 '18~'19년 연속으로 영국의 10대 무역 흑자국을 차지함

○ (한국) '18년 영국의 對韓 교역은 흑자(약 26억불)를 기록하여 한국은 영국의 10대 무역 흑자국 중 하나였으나(7위), '19년에는 흑자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19년 영국의 對韓 무역수지는 약 -2.3억불로 적자를 기록

» 영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단위: 백만불

영국의 10대 무역 흑자국				
순위	2018년		2019년	
	국가	무역수지	국가	무역수지
	전 체	-180,854	전 체	-224,462
1	독일	-44,591	독일	-38,827
2	중국	-35,690	중국	-35,438
3	네덜란드	-21,360	네덜란드	-23,651
4	노르웨이	-20,968	벨기에	-15,734
5	벨기에	-15,752	노르웨이	-15,061
6	이탈리아	-12,754	이탈리아	-13,637
7	폴란드	-7,391	러시아	-10,753
8	스페인	-7,143	캐나다	-9,189
9	캐나다	-6,359	스위스	-8,056
10	러시아	-6,125	프랑스	-7,615

자료: ITC Trade map

- '18년 영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은 독일·중국·네덜란드·노르웨이·벨기에·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캐나다·러시아이며, '19년은 독일·중국·네덜란드·벨기에·노르웨이·이탈리아·러시아·캐나다·스위스·프랑스임

○ 이 중 '18~'19년 영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모두 독일이었으며, 영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은 대부분 EU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영국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EU국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영국과 EU(유럽연합)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EU국과의 교역은 영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오는 요인이자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

○ (한국) '18년 영국의 對韓 교역은 흑자(약 26억불)를 기록하였으며, '19년에는 적자를 기록 하였으나 약 -2.3억불 정도의 적자규모로 영국 무역적자국 중 177위를 차지함

영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 무역수지 적자는 영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영국의 무역 적자규모는 지난 20년 전 대비 약 1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불

최근 20년간 영국의 무역수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9,277	-86,063	-113,310	-147,858	-135,717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56,213	-225,912	-223,323	-192,426	-205,603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0,318	-207,911	-109,181	-183,199	-163,95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24,905	-199,060	-180,854	-224,462	

- 앞선 자료 「영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서 영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대부분 EU국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실제 '17~'19년 영국의 무역수지를 EU 역내 및 역외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영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의 절반 이상이 EU국(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단위: 백만불, %

영국의 EU 역내 및 역외간 무역수지 비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무역수지(對세계)	-199,060	-180,854	-224,462
역외수지(對non-EU국)	-68,320	-47,289	-91,534
역내수지(對EU국)	-130,740	-133,565	-132,928
역내비중(역내수지/무역수지)	66%	74%	59%

주: 역내는 EU국, 역외는 非EU국을 의미함

자료: ITC Trade map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

» 영국의 10대 수출물품⁹⁾

단위: 백만불, %

영국의 10대 수출물품						
순위	2018년			2019년		
	품명 (HS CODE)	수출액		품명 (HS CODE)	수출액	
		對세계	對EU (비중)		對세계	對EU (비중)
	전 체	490,840	227,747 (46%)	전 체	467,512	214,619 (46%)
1	승용차 (8703)	42,043	15,925 (38%)	승용차 (8703)	38,556	15,307 (40%)
2	금 (7108)	31,789	703 (2%)	가스터빈 (8411)	26,339	4,288 (16%)
3	원유 (2709)	27,633	17,438 (63%)	원유 (2709)	23,705	15,833 (67%)
4	가스터빈 (8411)	24,915	4,200 (17%)	금 (7108)	23,308	789 (3%)
5	소매의약품 (3004)	18,928	9,853 (52%)	소매의약품 (3004)	17,978	8,528 (47%)
6	항공기 부분품 (8803)	16,667	10,649 (64%)	항공기 부분품 (8803)	15,980	10,233 (64%)
7	석유조제품 (2710)	13,590	8,894 (65%)	석유조제품 (2710)	11,873	8,225 (69%)
8	인혈·수혈·백신 (3002)	8,782	2,958 (34%)	회화·대생·파스텔 (9701)	8,888	188 (2%)
9	기타의 주류 (2208)	7,963	2,652 (33%)	기타의 주류 (2208)	7,871	2,662 (34%)
10	자동차 부분품 (8708)	7,117	4,961 (70%)	인혈·수혈·백신 (3002)	7,271	1,785 (25%)
	전체 수출액 대비 10대 수출물품 수출액 비중		41%	전체 수출액 대비 10대 수출물품 수출액 비중		39%
	10대 수출물품의 EU 수출 비중		39%	10대 수출물품의 EU 수출 비중		37%

주: HS CODE는 4단위 기준(품목분류상 특정되지 않은 물품은 제외)

자료: ITC Trade map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

■ 최근 2년간 영국의 對세계 10대 수출물품을 확인한 결과, 영국은 자동차·기계류·광물성 연료·귀금속·의료용품·미술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승용차) 영국은 유럽 내 주요 자동차 및 엔진 생산 기반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상용차 시장이
발달해 있어 승용차(HS 8703)는 '18~'19년 연속 영국 수출물품 1위를 차지함

- 그러나 영국에 등록된 자동차의 대다수가 수입 브랜드이고, 수출 주도적인 영국 기반
Tier 1 기업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영국 자동차 수출시장은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변화되는 무역규제 및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금) 금은 '18~'19년 영국의 10대 수출물품에서 2위, 4위를 차지하는 영국의 주요 수출물품 중 하나임

- 영국은 상업용 규모의 금광은 없으나, 전통의 금거래 중심지로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금 보관소를 비롯하여 주요 보관소에 투자자들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 금 수출이 가능함

○ (원유 및 석유조제품) 원유(HS 2709) 및 석유조제품(HS 2710)은 '18~'19년 영국 수출물품 중 각각 3위, 7위를 차지하는 영국 주요 수출물품으로 나타남

- 영국은 한때 북해산 석유로 세계 주요 석유 수출국 자리를 차지했으며 덕분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석유시장에서 국제 유가 기준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유전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채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영국은 결국 '04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돌아섬

- 그러나 최근 영국 북해 유전의 신규 유전 프로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18년 다시 원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하였으나, '19년에는 다시 수입량이 수출량을 넘어섬

- 또한 영국은 석유제품 수출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영국은 '18년 기준 100만 B/D의 정제 처리시설을 기반으로 120만B/D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음(BP 통계 기준, w0.05% 미만)

- 영국의 주요 석유회사는 BP가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전문 정보매체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BP는 '18년 기준 세계 석유회사 중 매장량 15위, 생산량 8위, 정제능력 13위, 매출액 7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글로벌 석유회사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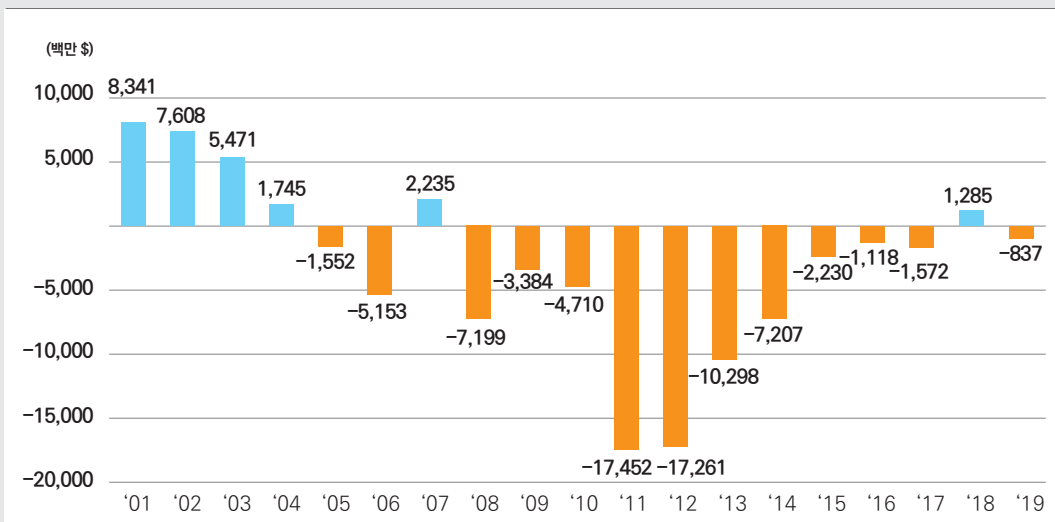
✓ 영국의 석유 관련 통계 요약

단위: 천B/D

구분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증감률	對세계 비중
석유 생산량	유럽	3,616	3,565	3,523	-1.2%	3.7%
	영국	1,013	999	1,085	8.6%	1.1%
정제 능력	유럽	15,443	15,421	15,681	1.7%	15.7%
	영국	1,227	1,227	1,227	-	1.2%
정제 처리	유럽	12,665	13,033	12,786	-1.9%	15.4%
	영국	1,071	1,073	1,054	-1.8%	1.3%
석유 소비량	유럽	15,032	15,351	15,276	-0.5%	15.3%
	영국	1,623	1,637	1,618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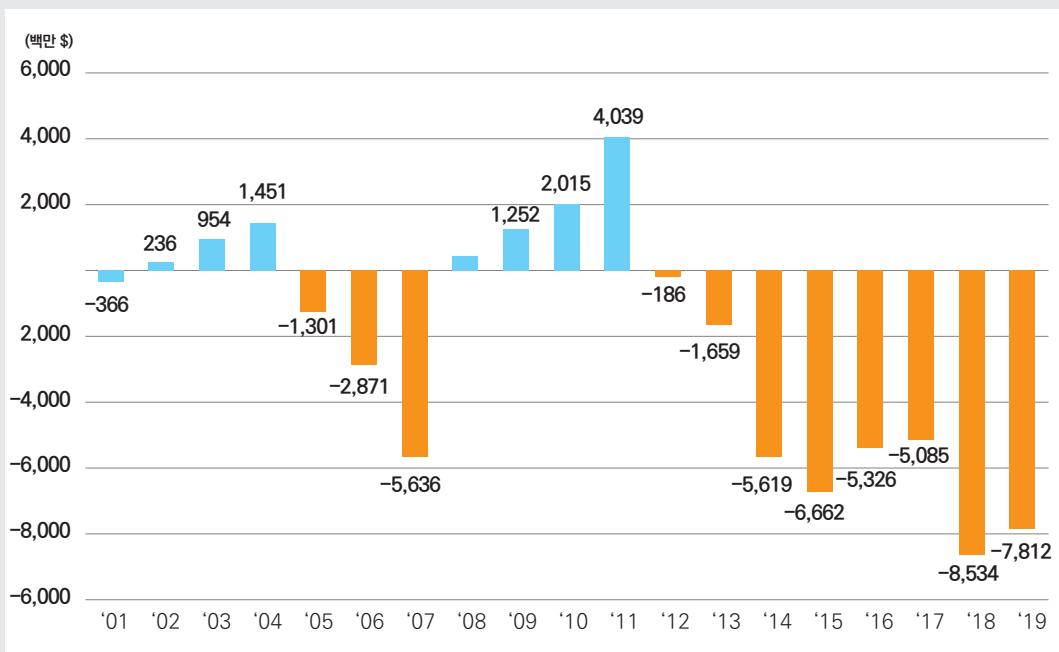
주:증감률 및 비중은 '18년 기준
자료: BP, 대한석유협회

✓ 영국 원유(HS 2709) 순수출 규모 추이



자료: ITC Trade map

✔ 영국 석유조제품(HS 2710) 순수출 규모 추이



자료: ITC Trade map

- (소매의약품 및 인혈 · 수혈 · 백신) 영국에서는 최소 2,600개 이상의 의약품이 제조되고 있으며 영국 제약 · 바이오 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루어 영국 산업에서 점차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신약 및 의료장비 승인 · 첨단신약 접근권 · 자금조달 · 유럽의약품청(EMA)의 새로운 규제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국 내 제약 · 바이오산업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워짐에 따라 유망한 기업 및 인력이 여타 유럽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발생함
 - 영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영국의 FDI 투자 주요 요인인 낮은 법인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등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의 법인세율(Corporation tax rate)

- 영국 정부는 2017/18 예산안에서 법인세 인하 계획을 포함하여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라 영국정부는 기존 20%였던 법인세율을 '17년 19%, '20년 17%까지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브렉시트 이후 기업들의 영국 이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더 낮은 15%로 낮출 방침임
- 영국의 조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국의 핵심지원 영역 중 하나이며 실제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 실제로 2010년, 영국은 기존 28%였던 법인세율을 2015년 20%로 인하함에 따라 2014년 한 해만 미국의 글로벌 기업 15곳이 영국으로 이전하는 등 특목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남

○ (회화 · 대생 · 파스텔) '17년 기준 미술품 거래총액의 83%가 미국, 중국, 영국 미술시장에 의해 점유될 만큼 영국 미술시장은 세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17년 세계미술품 거래총액 \$63.7B(약 72조원) 중 영국 미술시장에서 \$12.9B(약 14조 6천억원)가 거래됨*

* 미국 \$26.6B(약 32조 2천억원), 중국 \$13.2B(약 14조 9천억원)

○ (종합) 영국은 일찍이 석유, 자동차, 제약 · 바이오,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달해왔음

–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관세 · 규제 · 승인의 변경 등이 주요 산업 부문에도 다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동 산업들은 이미 대부분 세계시장에서 선두그룹으로 자리 잡고 있어 산업구조 및 시스템상 아주 큰 변동이 없는 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EU가 영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와 전략 모색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9년 수출금액 기준, 영국의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영국의 10대 수출물품의 EU 수출 비중은 약 37%에 해당함

영국의 10대 수입물품¹⁰⁾

단위: 백만불, %

영국의 10대 수입물품						
순 위	2018년			2019년		
	품명 (HS CODE)	수입액		품명 (HS CODE)	수입액	
		對세계	對EU (비중)		對세계	對EU (비중)
	전 체	671,694	361,312 (54%)	전 체	691,974	347,547 (3%)
1	승용차 (8703)	44,247	38,205 (86%)	금 (7108)	70,791	1,913 (88%)
2	원유 (2709)	26,348	24 (0.1%)	승용차 (8703)	43,813	38,384 (0.3%)
3	금 (7108)	25,564	1,786 (7%)	원유 (2709)	24,542	70 (30%)
4	석유조제품 (2710)	22,124	9,890 (45%)	가스터빈 (8411)	20,706	6,244 (31%)
5	가스터빈 (8411)	20,421	5,337 (26%)	통신기기 (8517)	19,869	6,105 (39%)
6	통신기기 (8517)	20,362	7,786 (38%)	석유조제품 (2710)	19,685	7,656 (81%)
7	자동차 부분품 (8708)	17,200	13,796 (80%)	자동차 부분품 (8708)	15,848	12,827 (83%)
8	소매의약품 (3004)	16,652	11,980 (72%)	소매의약품 (3004)	14,733	12,168 (44%)
9	자동차료처리기계 (8471)	14,713	7,519 (51%)	자동차료처리기계 (8471)	14,698	6,539 (83%)
10	석유가스 (2711)	14,419	2,328 (16%)	화물자동차 (8704)	8,834	7,295 (39%)
	전체 수입액 대비 10대 수입물품 수입액 비중		33%	전체 수입액 대비 10대 수입물품 수입액 비중		37%
	10대 수입물품의 EU 수입 비중		44%	10대 수입물품의 EU 수입 비중		39%

주: HS CODE는 4단위 기준(품목분류상 특정되지 않은 물품은 제외)

자료: ITC Trade map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

■ 최근 2년간 영국의 對세계 10대 수입물품을 확인한 결과, 영국은 자동차·광물성연료·귀금속·전기제품·기계류 등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유 및 석유조제품) 영국은 '18년 기준 세계 10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역외로부터 다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18년 기준 약 3,136만 배럴)

- EU에서 일부 국가(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원유 및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정제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세계 정유 업계의 경쟁 심화, 유럽 정유산업의 과도한 규제, 정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정제마진이 감소하고 유럽 정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주로 석유제품을 역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경우,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다량의 원유도 수입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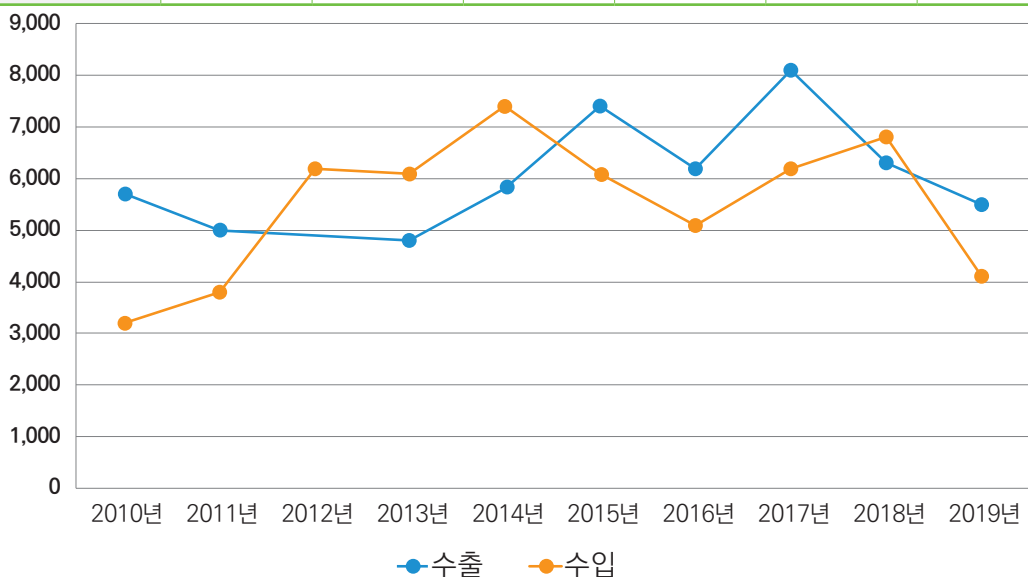
2

한-영 교역현황

» 우리나라의 對 영국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9년	5,515	-13.3	4,169	-38.8	9,684	1,346
2018년	6,359	-21.7	6,809	7.8	13,168	-450
2017년	8,122	29.2	6,319	21.2	14,441	1,803
2016년	6,288	-14.9	5,212	-14.9	11,500	1,076
2015년	7,390	27.8	6,127	-17.7	13,517	1,263



자료: 한국무역협회

- '19년 수출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19대 수출국에 해당하는 영국과의 최근 5년간 교역 동향을 살펴본 결과, '15년 대비 '19년 對英 수출은 약 18억불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약 19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교역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우 주로 수출이 활발한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반면, 영국의 산업은 주로 서비스업과 금융업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對EU 수출에서의 영국 비중

단위 : 백만불,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2019년	비중	순위	국가	2019년	비중
EU 전체		52,758	100%	EU 전체		55,795	100%
1	독일	8,686	16%	1	독일	19,937	36%
2	영국	5,515	10%	2	이탈리아	6,449	12%
3	폴란드	5,315	10%	3	프랑스	5,835	10%
4	네덜란드	4,243	8%	4	네덜란드	4,196	8%
5	이탈리아	3,773	7%	5	영국	4,169	7%
6	프랑스	3,317	6%	6	스페인	2,651	5%
7	스페인	2,770	5%	7	스웨덴	1,744	3%
8	벨기에	2,707	5%	8	오스트리아	1,553	3%
9	헝가리	2,478	5%	9	벨기에	1,323	2%
10	슬로바키아	2,315	4%	10	아일랜드	1,189	2%

자료: 한국무역협회

■ '19년 우리나라의 對EU 교역에서 영국은 수출 2위(10%), 수입 5위(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19년 우리나라의 對EU 수출금액은 약 527억불이며, 이의 16%(약 86억불)가량을 독일에, 10%(약 55억불)을 영국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됨
- (수입) '19년 우리나라의 對EU 수입금액은 약 557억불이며, 이 중 독일이 약 190억불로 총 수입액의 36%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영국은 약 41억불로 총수입액의 7%비중을 차지하여 5위로 나타남
- 영국은 우리나라의 EU 수출입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였으며 양자 FTA가 발효될 경우 교역관계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對英국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불, %

수출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6,359	5,515	-13
1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120	탱커	810	643	-21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135	540	300
3	자동차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586	363	-38
4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나헬리콥터의그밖의부분품	337	326	-3
5	계측제어 분석기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 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218	318	46
6	자동차	870321	실린더용량이1,000시시이하인 것	278	298	7
7	자동차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264	200	-24
8	무선 통신기기	851712	셀룰러통신망이나그밖의무선통신망용 전화기	24	93	288
9	기타 섬유제품	870380	그 밖의 차량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39	89	128
10	건전지 및 축전지	850710	피스톤식 엔진시동용의 연산 축전지	96	87	-9
11	고무제품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wagon) 과경주자동차용을포함한다]	84	74	-12
12	자동차부품	870899	기타	65	65	0
13	철강판	721070	페인팅한것 · 바니시한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것	46	63	37
14	자동차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 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42	60	43
15	정밀 화학원료	850760	리튬이온축전지	52	58	12
16	건설광산 기계	843149	기타	64	56	-13
17	자동차부품	870830	제동장치와그부분품	59	54	-8
18	정밀 화학원료	291736	테레프탈산과그염	91	54	-41
19	자동차부품	870870	로우드 휠일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0	47	-41
20	철강판	721049	기타	43	46	7

주: 2019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영국 수출 상위 품목은 선박, 자동차, 항공기 및 부품으로 나타남

- 이 중, 무선통신기기, 기타섬유제품 경우 전년대비 증감률이 각각 288%, 128%로 큰 폭으로 증가함
- 다만, 수출 상위 품목인 제8703.22호(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19년 기준 전년대비 -38%('18년:586백만불→'19년:363백만불)로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對영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불, %

수입						
순 위	산업분류	HS 코드	품명	금액		'18- '19 증감률
				2018년	2019년	
전체				6,809	4,169	-39
1	자동차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368	237	-36
2	원유	270900	석유와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29	211	-91
3	농약 및 의약품	300490	기타	192	207	8
4	자동차부품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59	202	-44
5	자동차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42	180	27
6	기호식품	220830	위스키류	144	142	-1
7	원동기 및 펌프	840890	그밖의엔진	123	111	-10
8	자동차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103	96	-7
9	합성수지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form)으로 한정한다]	65	70	8
10	자동차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83	66	-20
11	산업용 전기기기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78	61	-22
12	기타화학 · 공업제품	293359	기타	89	52	-42
13	계측제어 분석기	903180	그 밖의 기기	27	47	74
14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47990	부분품	24	47	96

수입						
순위	산업분류	HS 코드	품명	금액		'18-'19 증감률
				2018년	2019년	
15	기계요소	848180	그 밖의 기기	43	46	7
16	수산가공품	160559	기타	43	46	7
17	계측제어 분석기	903149	기타	40	38	-5
18	알루미늄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39	32	-18
19	비누 치약 및 화장품	330499	기타	31	29	-6
20	주방용품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30	27	-10

주: 2019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영국 수입 상위 품목은 자동차, 석유와 역청유,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이 해당됨

- 이 중,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은 '19년 기준 전년대비 9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계측제어분석기 경우 74%('18년: 27백만불→'19년:47백만불)가 증가

3

한-영 FTA 개관

» 추진 경과

■ 2016년 협상을 시작한 한-영 FTA는 2020년 현재, 발효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임

○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이후 즉시 발효됨('21.1.1일 발효 예정)

한-영 FTA 추진 일지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체결 의의¹¹⁾

■ 한-영 FTA의 체결은 한-영 양국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음

-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기업은 이번 한-영 FTA 체결로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기존 한-EU FTA에서 적용되어온 영국과의 특혜무역 관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FTA 협상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금번 한-영 FTA는 다양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FTA 협상을 개선 및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한-영 FTA 발효 후 2년 이내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므로 한-EU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됨

* EU와 합의 없이(No-Deal) 영국이 EU를 탈퇴(Brexit)하는 상황

■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의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고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함

- 양국은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함
 - 특히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양국 혁신기업 간 기술협력 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됨

* '19년부터 한국 및 영국이 각각 매년 30억원, 200만 파운드를 펀딩하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사업[담당기관: (韓)산업기술진흥원, (英)혁신청]

» 한-영 FTA 협정문 구성¹²⁾

-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함

○ 한-영 FTA 협정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문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제10장	지식재산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4장	분쟁해결
제15장	제도 · 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자료: 한-영 FTA 협정문

» **한-영 FTA 주요 내용 및 특징¹³⁾**

■ **(목적 · 일반정의) 한-영 FTA는 양국간 상품 및 무역의 자유화 달성, 투자 및 경쟁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지속가능 개발, 교역 장벽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이 협정에서 참조한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법령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또는 대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봄(한-영 FTA 협정문 제1.3조)

■ **(상품관세) 기본적으로 상품의 관세는 한-EU FTA의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외 예외적 조치는 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함**

○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한-영 양국 간 교역에 한-EU FTA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함

– 이로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 시점은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 7. 1일로 규정되었으며, 한-영 FTA의 관세 인하 스케줄은 다음과 같음

한-영 FTA 관세 인하 스케줄			
1년차	2011. 7. 1 ~ 2012. 6. 30	7년차	2017. 7. 1 ~ 2018. 6. 30
2년차	2012. 7. 1 ~ 2013. 6. 30	8년차	2018. 7. 1 ~ 2019. 6. 30
3년차	2013. 7. 1 ~ 2014. 6. 30	9년차	2019. 7. 1 ~ 2020. 6. 30
4년차	2014. 7. 1 ~ 2015. 6. 30	10년차	2020. 7. 1 ~ 2021. 6. 30
5년차	2015. 7. 1 ~ 2016. 6. 30	—	...중략...
6년차	2016. 7. 1 ~ 2017. 6. 30	20년차	2030. 7. 1 ~ 2031. 6. 30

자료: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9.8)

– 이처럼 한-영 FTA의 관세인하 스케줄은 2011년 7월 1일부터 기산되므로 한-영 FTA의 발효시점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되는 품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즉시 발효되며, 당초 계획대로 이행기간이 종료될 경우 한-영 FTA는 2021.1.1일부터 발효되므로 무관세 해당 품목은 한-영 FTA 양허표상 '즉시철폐~8년철폐' 양허를 가진 품목에 해당

○ (공산품 · 임산물) 한-EU FTA에서 모든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왔으며 한-영 FTA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양허함에 따라 한-영 FTA 발효 즉시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 이로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을 현재와 같이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하여 양국 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아직 영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인접국(일본, 중국 등)에 비해 영국 시장에서 우리 업계가 유리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한-영 FTA 즉시철폐 대상 주요 공산품

한국 양허	영국 양허
승용차, 하이브리드카,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선박용부품, 직물제이류, 칼라TV, 냉장고, 선박, 타이어, 섬유기계, 컴퓨터부품, 항공기부품, 계측기, 기타정밀화학제품 등	승용차,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카, 타이어, 자동차부품, 스웨터, 기타신발, 순모직물, 편직물, 폴리에스테르직물, 칼라TV, 라디오, 영상기록재생용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자료: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9.8)

- (농산물) 양측 모두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영국은 이외 전반적인 농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한 반면, 우리측은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함

*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세번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장기관세 철폐기간 설정 등

- 우리측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적용,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 보조 사료의 경우 수입쿼터 관리방식을 적용함

- (수산물) 영국측은 한-영 FTA 발효 즉시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우리측은 주요 민감품목(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냉동민어 등)에 대해 양허제외 및 현행관세 유지 등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함

■ (원산지)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EU국 경유를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함

- (EU산 원재료의 역내산 인정) 양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함
- (EU 경유 직접운송 인정) 원산지상품이 체약당사국 이외 제3국을 경유하여 이동할 경우, 특혜 관세의 적용이 불가하나 EU 경유 시에도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토록 함

- 이로 우리기업들은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당분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지적재산권)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 및 보호하는 것으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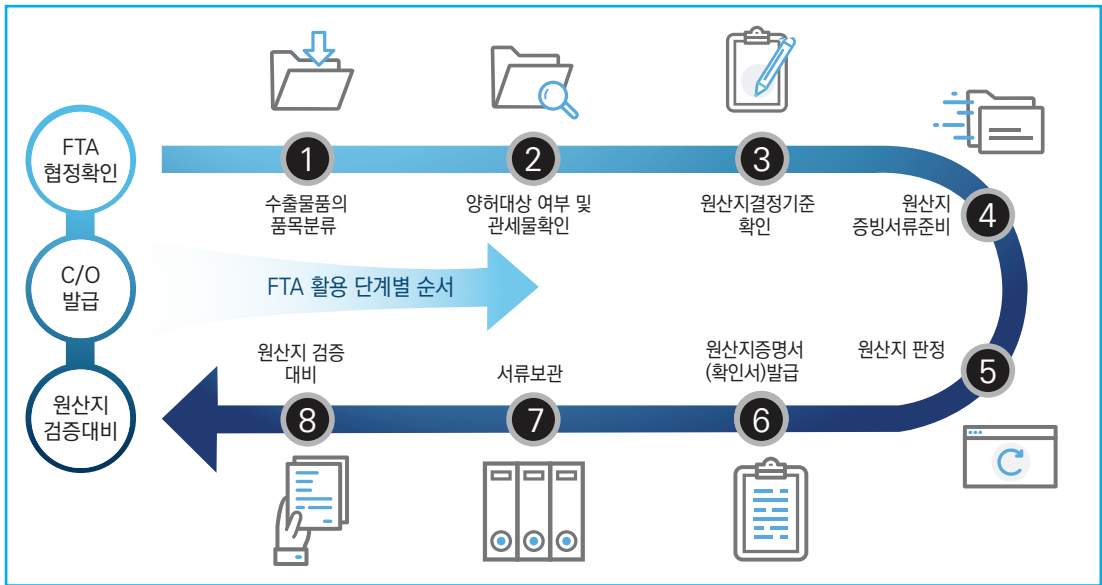
- 한-EU FTA에서는 한국 및 EU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한-EU FTA 협정문 제10.18조 제3항 및 제4항, 부속서 10-가, 나),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한-영 FTA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함
 - (영국) 주류 2개 품목 :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등
 - (한국)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 :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 복분자, 진도홍주 등

4

한-영 FTA 적용절차

» 한-영 FTA 활용 및 원산지 증명서류

○ 한-영 FTA 활용 단계별 순서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영국)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감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과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협정 및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영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

■ 한-영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신고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한-영 FTA에서 “원산지 신고서”는 해당 물품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서,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져야 함

- (문안) 다음은 한-영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며, 이는 각주 설명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한-영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및 작성 요령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²⁾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²⁾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 칸으로 남겨둠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 가능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함

- (작성조건) 또한 한-영 FTA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한-영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한-영 FTA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1. 동 협정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 또는 2.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주로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국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마. 제12조(영역 원칙)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3	위 요건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영국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4	원산지 신고서는 이 의정서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영어 및 한국어)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만일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의미하는 인증 수출자의 경우,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자료: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부(원산지 증명)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해설

■ 한-영 FTA에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신청은 자율발급원칙으로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관련조항)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1항

-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이후 지정됨
- (원산지 증명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
- (원산지 증명서류 서식)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기재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의정서 제15조 제1항)

✓ 한-영 FTA에서 인증수출자란?

-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영국에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요건에 해당함
 - (주요혜택)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시의 원산지신고서 발급권한, 원산지신고서 발급을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
- (한-영 FTA 인증수출자 주요 혜택)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자료: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한-영 FTA 원산지 결정기준

- (직접운송요건) 한-영 양측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①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EU를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며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므로 우리 수출기업은 이점을 유의하여야 함

- (원산지 결정기준 규정) 한-영 FTA에서는 두 나라 교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였음
 - (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역외산 부품 비율을 45%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품은 역외산 부품 비율을 50% 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규정이 적용됨

- (기계 및 전기·전자)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부품 사용비율 45~50% 중 선택 가능
- (의류) 직물기준*이나 섬유사 및 직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스코레이온사 및 나일론 스테이플사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역외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물기준 : 한-미 FTA의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변형기준이라고 함

- (화학제품)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
- (비철금속)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함
- (신발) 역외산 갑피 및 안창의 사용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 단,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 이하 기준 적용 가능

■ 단, 한-영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함

* 제1604.20호[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및 제5408호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1604.20 - 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중(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쿼터 : 100 M/T
5408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인조필라멘트로부터 생산된 것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 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연간 쿼터 : 1,068,320 SME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5

한-EU(영국) FTA 활용 및 산업별 수출현황

» 우리나라의 對EU FTA 수출활용률(2019년)

단위: 백만불, %

수출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활용률*	전체수출금액
한 - EU FTA (전체)	11,190	12,523	89.4%	212,898
- 독일	4,707	5,215	90.3%	8,684
- 이탈리아	2,069	2,322	89.1%	3,773
- 프랑스	1,973	2,195	89.9%	3,318
- 영국	2,440	2,790	87.5%	5,515

자료: 관세청 자료를 가공하여 재구성

* FTA활용률 = 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x100

■ '19년 우리기업의 對영국 FTA 수출활용률은 87.5%로 한-EU FTA 전체 수출활용률인 89.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19년 우리 기업이 한-EU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가장 많이한 국가는 독일(90.3%)이었으며, 영국(87.5%)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활용률을 나타냄
- 이는 영국이 전체수출금액으로는 4개 주요국 중 2위(1위 독일)에 해당하나 특혜대상 금액 즉, 한-EU FTA에서 관세혜택 적용대상이 타국가에 비해 적었기 때문임
 - 한-EU 전체 FTA 활용률이 89.4%로 전체적으로 한-EU FTA는 대부분의 품목에 특혜 관세가 적용되어 매우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편임(84.9%)
 - 그러나 전체 수출금액에서 특혜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수출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침

우리나라의 對영국 FTA활용 수출 주력 산업(2019년)

단위: 백만불, %

	산업분류		특혜 적용금액	특혜 대상금액	FTA 활용률*	전체 수출금액
	MTI 1단위	MTI 3단위				
對영 FTA 활용 수출 주력 산업	전자전기제품	계측 제어분석기	2	2	100.0%	34
	기계류	자동차	1,367	1,369	99.9%	1,37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고무제품	109	110	99.1%	115
	기계류	금속공작기계	39	41	95.1%	43
	전자전기제품	무선통신기기	15	17	88.2%	150
	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	110	125	88.0%	125
	섬유류	인조섬유	28	32	87.5%	33
	전자전기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120	146	82.2%	14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플라스틱 제품	92	115	80.0%	123
	전자전기제품	전력용기기	18	23	78.3%	36
	기계류	자동차부품	167	216	77.3%	222
	농림수산물	농산가공품	18	24	75.0%	30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40	54	74.1%	54
	생활용품	문구 및 완구	17	23	73.9%	49
	섬유류	편직물	21	32	65.6%	33
	섬유류	의류	5	8	62.5%	28
	기계류	항공기 및 부품	2	4	50.0%	362
	전자전기제품	전자응용기기	2	4	50.0%	46
	기계류	기계요소	13	28	46.4%	32
	기계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	3	33.3%	648
	화학공업제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2	8	25.0%	45
	기계류	원동기 및 펌프	9	56	16.1%	61
	기계류	건설광산기계	0	25	—	141
	전자전기제품	컴퓨터	0	0	—	36
	기타품목		239	326	73.3%	1,551
	합계		2,440	2,790	87.5%	5,515

자료: 관세청 자료를 가공하여 재구성

*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x100

■ '19년 한국의 對영국 FTA 활용 주력수출 산업은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등으로 나타남(MTI 1단위 기준)

○ 각 주력 산업별 세부 산업은 각각 다음과 같음(MTI 3단위 기준)

-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금속공작기계, 항공기 및 부품, 기계요소 등
- (전자전기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 (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원료 등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등

■ FTA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산업(MTI 3단위 기준)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전지 및 축전지,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등으로 나타남

○ 해당 산업들의 평균 FTA 수출활용률은 약 87.5%로 대부분 한-EU FTA 특혜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자동차와 고무제품 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거의 10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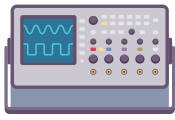
■ 한-EU FTA 전체 활용률(89.4%)를 상회하는 산업(MTI 3단위 기준)은 계측제어 분석기, 자동차, 고무제품, 금속공작기계로 주로 기계류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산업에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산업별 FTA 활용률은 각각 다음과 같음(MTI 3단위 기준)

- 계측제어분석기(100%), 자동차(99.9%), 고무제품(99.1%), 금속공작기계(95.1%)

■ 또한 FTA 활용률이 낮은 산업(MTI 3단위 기준) 원동기 및 펌프, 비누치약 및 화장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으로 해당 산업의 활용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은? (MTI 3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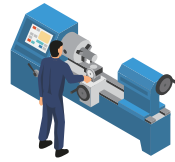
계측제어분석기
100%



자동차
99.9%



고무제품
99.1%



금속공작기계
95.1%



무선통신기기
88.2%

■ FTA 활용률이 10% 이하인 품목은? (MTI 3단위)



음향기기
8.5%



도료 및 잉크
8.2%



수산물
7.8%



유리제품
7.1%



기타 가정용
전자제품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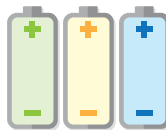
■ FTA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품목은? (MTI 3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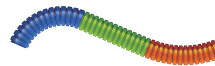
자동차
약 13억불



자동차 부품
약 2억불



건전지 및 축전지
약 1.4억불



합성수지
약 1.2억불



플라스틱제품
약 1.1억불

6

한-영 FTA 수출유망품목

» 한-영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선정 과정

1

2019년 한-EU FTA 적용품목 중 영국 100대 수입물품 추출(HS 6단위 기준)



2

우리나라가 '19년 수출한 내역이 있는 품목 선정



3

FTA 활용이 가능한 품목 : 특혜대상금액이 '0'이 아닌 품목 즉, 한-EU FTA 양허대상 품목인 동시에, '19년 기준 특혜대상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품목 선별*



4

위 단계까지 거친 품목 중 특혜대상금액은 높으나, 특혜적용금액은 낮아 활용률이 영국 평균(87.5%)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을 한-영 FTA 활용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

* 한-영 FTA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함

» 한-영 FTA 수출유망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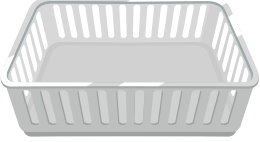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순번	HS코드 (6단위)	품명	2019년		
			영국 수입 순위	특혜대상 금액	FTA 활용률
1	39231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52위	6	1.9%
2	851632	그 밖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40위	8	5.4%
3	841490	기체펌프 · 팬 · 후드의 부분품	14위	34	8.5%
4	851140	시동전동기와 검용 시동발전기	34위	11	12.3%
5	330790	기타 화장용품	41위	8	26.1%
6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	29위	17	34.3%
7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13위	46	38.0%
8	270750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흑갈색계 액상의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의 혼합물 (250℃에서 ASTM D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	35위	11	56.0%
9	850760	리튬이온 배터리	10위	57	54.0%
10	842121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62위	5	59.9%

주: '19년 FTA 활용률 오름차순(FTA 활용률 = 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를 가공하여 재구성

(1)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상품명	플라스틱 사무용 소품 바구니		
	HS 코드 및 품명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한-EU FTA 활용률(*19)	1.9%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0%, 6.5%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4819.10	박스	미상	-
3910.00	실리콘 고무	미상	-
3901.10	에틸렌의 중합체	미상	-
3902.10	프로필렌 중합체	미상	-
3920.10	플라스틱 제판	미상	-

제조과정

원료 투입 > 압출 > 성형 > 후가공 > 검사 > 포장 > 완성

에틸렌의 중합체, 프로필렌 중합체 등의 원재료를 투입한 후 압출, 성형, 후가공, 검사의 과정을 거쳐 포장하고 완성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해당사항 없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함	해당사항 없음

(2) 그 밖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상품명	헤어 고데기(모발용 인두기)	
	HS 코드 및 품명	8516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한-EU FTA 활용률('19)	32	그 밖의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0%, 2.7%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8516.90	헤어 드라이기의 부분품	미상	17.6
8534.00	Printed circuits	미상	9.8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의 기타의 품목	미상	10.6
4016.99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미상	6.6
8541.30	사이리스터, 다이오드, 트라이악(감광성 디바이스 제외)	미상	5.6
7616.99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	미상	5.2
8541.21	트랜지스터	미상	5.6

제조과정

원재료 확보 > 샌딩처리 > 표면처리 > 건조 > 경화 > 압축성형 > 표면마무리 > 완성

원재료를 준비한 후 샌딩처리, 표면처리, 건조, 경화, 압축성형의 과정을 거쳐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완성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원제품과 동일한 호(8516)에 속하는 원재료가 존재하므로 해당 원재료는 반드시 원산지 지위를 보유해야 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함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원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재료는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사용가능

* 부가가치 비율= 비원산지재료의 가격/물품의 공장도 가격 *100

(3) 기체펌프·팬·후드의 부분품

 수출 세율정보 (2020)	상품명	팬의 부분품(HANDLE)		
	HS 코드 및 품명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90	기타
	한-EU FTA 활용률('19)	8.5%		
	기본세율(MFN)	0%, 2.2%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7205.21	합금분말	미상	50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미상	5.6
2804.69	실리콘 금속	미상	5.6
7206.90	잉곳 또는 기타 형태의 철 및 비합금강	미상	5.6
7406.20	라멜라 구조의 분말	미상	5.6
8111.00	망간과 그제품	미상	5.6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미상	5.6

제조과정

원재료 준비 > 혼합 > 성형 > 소결 > 검사 및 포장

합금분말 등 원재료를 투입하여 사출성형 후 소결시킴. 이후 검사 및 포장을 통해 완성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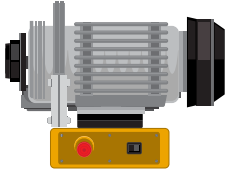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이 있을 경우 해당원재료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여야 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해당사항 없음

(4)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상품명		APU STARTER GENERATOR	
	HS 코드 및 품명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 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 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 기관에 부착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한-EU FTA 활용률('19)		12.3%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0%, 3.2%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8511.90	commutator	미상	-
8511.90	rotor coil	미상	-
8505.11	magnetic	미상	-
8511.90	스타터 코어(starter core)	미상	-
8511.90	계자 코일, 철심	미상	-
8511.90	요크(yoke)	미상	-
8545.20	브러시(brush)	미상	-

제조과정

조립 1 > 조립 2 > 조립 3 > 조립품 입입 및 체결 > 성능검사 > 완성

론트 브라켓에 베어링 압입후 리테이너를 조립하고 프론트 ASSY를 로타 ASSY에 조립하고 스페이서 및 폴리를 조립하는 공정을 거친, 폴리를 고정하기 위해 HEX NUT을 체결하고 스테이너, 렉티, 레귤레이터를 프론트에 조립하는 공정을 거쳐 조립품을 압입하고 프론트 및 리어부품의 고정을 위해 관통볼트를 체결한 후 레귤레이터 체결, 구출선과 리드선을 용접하고 커버를 조립하여 성능검사까지 완료하면 제품 생산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원제품과 동일한 호(8511)에 속하는 원재료가 존재하여 해당 원재료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해야 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세번변경기준 선택시 원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재료는 공장도가격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5) 기타 화장품

	상품명	마스크팩		
	HS 코드 및 품명	3307		면도용 제모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품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90	기타
	한-EU FTA 활용률('19)	26.1%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6.5%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2201.90	정제수	미상	-
2905.39	부틸렌글라이콜	미상	-
2905.45	글리세린	미상	-
2710.19	미네랄오일	미상	-
3402.13	피이지-40스테아레이트	미상	-

제조공정

원재료 혼합 및 제조 > 충전 > 포장 > 최종검사 > 출하
원재료 혼합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서 충전 후 포장, 최종검사작업을 거쳐 출하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비원산지 재료와 완제품의 4단위까지 상이하여 세번변경기준은 고려할 필요 없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은 것	해당사항 없음

(6)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

	상품명	동관(구리 파이프)		
	HS 코드 및 품명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한-EU FTA 활용률('19)	34.3%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0%, 4.8%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7403.11	전기동	미상	-

제조공정

주조 > 압출 > 인발 > Coiling > 열처리 > 검사 > 포장 및 출하

전기동을 주조한 후 압출, 인발, 코일링, 열처리, 검사 후 포장하여 출하함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완제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4단위가 상이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해당사항 없음

(7) 로드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상품명	로드휠(ROAD WHEELS)		
	HS 코드 및 품명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한-EU FTA 활용률('19)	38%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3%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7601.20	알루미늄 A356.2	미상	-
7604.29	알루미늄 스트론튬 10%	미상	-
3208.90	분체도료	미상	-

제조공정

원재료 준비 > 용해 > 계량 > 주입 > 가압 > 제품 취출 > 급냉 > 완성

원재료인 알루미늄을 준비 후 용해 및 계량 한 후 주입하고, 가압함. 제품을 취출한 후 급냉시켜서 완성시킴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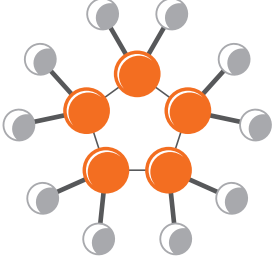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원재료 중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해당사항 없음

(8) 방향족 탄화 수소류

	상품명	흑갈색계 액상의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	
	HS 코드 및 품명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아이·에스·오 (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 (ASTM D)86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 (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한-EU FTA 활용률(*19)	56%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0%, 3%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2710.12	나프타	미상	—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미상	—
2710.19	디젤	미상	—
2901.21	에틸렌	미상	—
2711.14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 부타디엔	미상	—
2707.10	벤조올	미상	—
2711.19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의 기타의 물품	미상	—

제조공정

나프타 분해 >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분리

나프타를 분해 한후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분리하여 흑갈색계 액상의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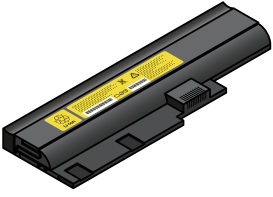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재료 중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9) 리튬이온 배터리

	상품명	V-MOUNT BATTERY		
	HS 코드 및 품명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60	리튬이온 축전지
	한-EU FTA 활용률('19)	54%		
	수출 세율정보 (2020)	기본세율(MFN)	0%, 1.3%, 2.7%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8507.90	케이스	미상	-
8532.23	세라믹 Capacitor	미상	-
8541.40	칩 LED	미상	-
8533.21	칩 레지스터	미상	-
8541.10	다이오드	미상	-
3506.10	글루	미상	-
8507.60	라이온 셀	미상	-

제조과정

원재료 준비 > 극판공정(미싱·코팅·프레스·슬리팅) > 조립공정(와인딩·조립·전해액 주입)
> 화성공정(배터리 활성화 단계) > 완성

원재료가 준비가 되면 극판공정(믹싱, 코팅, 프레스, 슬리팅)이 시작되고 와인딩, 조립, 전해액 주입 등의 조립공정을 완료하면, 화성공정을 통해 완성됨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원재료 중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며, 해당 원재료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은 것	세번변경기준 선택시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제품의 경우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미만일 경우 사용가능

(10)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상품명	가정용 욕조 정화기		
	HS 코드 및 품명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한-EU FTA 활용률('19)	59.9%		
	기본세율(MFN)	0%, 1.7%		
수출 세율정보 (2020)	한-영 FTA 특혜세율	0%		

주요 원재료(예시)

HS CODE	원재료명	원산지	가격비중(%)
8536.50	ASSY 수압스위치	미상	-
7318.15	볼트	미상	-
3919.90	Brine seal tape	미상	-
8481.80	C 타입 어댑터 밸브	미상	-
8532.22	CAPACITOR-ELEC	미상	-
8532.21	CAPACITOR-MONO	미상	-
8536.90	커넥터	미상	-

제조공정

부품 확보 > 부품 조립 및 용접 > 프론트 커버 조립 > 포장 > 완성

부품을 확보하여 부품조립 및 용접 후 프론트 커버를 조립함. 이후 개별 포장 후 완성함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중 선택	원재료 중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해당사항 없음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United Kingdom



III

영국의 통관제도

제1절 영국 통관 관련 조직

제2절 영국 통관 관련 최신 개정사항

제3절 영국 수출입 통관 절차

제4절 영국 관세

1

영국 통관 관련 조직

» 재무부(HM Treasury)¹⁴⁾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 재정과 관련한 모든 부문을 총괄·관리하는 영국 주요 내각부처 중 하나임
 - (주요역할) 국가운영에 있어 예산·세금 등 정부의 공공지출과 관련한 모든 부문을 통제 및 유지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 (주요업무) 공공지출, 재정서비스 정책, 조세제도 감독, 인프라 투자 촉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
 - ① 공공지출 : 부처의 지출,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연간운용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과 복지정책, 자본투자 등
 - ② 재정서비스 정책 : 은행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규정, 재정안정 및 시티런던(영국 금융 특별구역) 경쟁력 보장
 - ③ 조세제도 감독 : 직접세, 간접세, 영업세, 재산세, 대인세, 법인세 등 영국 내 모든 조세운영을 감독
 - ④ 공공부문 인프라 프로젝트의 제공 및 개인 투자 촉진
 - 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 (주요인사) 재무부에 속한 주요 인사로는 국가재정위원장(총리), 장관, 비서실장, 재정비서실장 등이 있음
 - 국가재정위원장 또는 제1재무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은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 관직이나 총리가 겸임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하지 않으며, 재무부의 실질적인 업무는 재무부 장관 또는 제2재무경(Chancellor of the Exchequer, Second Lord of the Treasury)이 담당함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2020/21 예산안 발표('20.03.11.)

- 지난 3.11일, 영국 재무부 수석 재무장관은 「영국 2020/21 예산안」을 발표함
 -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최근 발병한 감염병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 및 개인과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2020/21 정부 총 지출은 9,280억 파운드이며 총 수입은 8,730억 파운드임
 - 주요 부문별 공공지출은 사회보호(2,850억 파운드), 보건(1,780억 파운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 주요 수입원 중에서는 소득세(2,080억 파운드), 부가가치세(1,610억 파운드), 국민보험료(1,500억 파운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 및 투자정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 UK 수출 금융 직접 대출, 스타트업 및 이노베이터 비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됨
 -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 영국의 혁신기업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국제통상부(DIT) 및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약 800만 파운드를 책정함
 - (UK 수출 금융 직접 대출) 신흥시장에서 영국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바이어에게 대출을 제공하여 영국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기금에는 영국의 방위 및 보안상품·서비스의 해외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10억 파운드) 및 청정성장(Clean growth)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금(20억 파운드)가 포함되어 있음
 - (스타트업 및 이노베이터 비자) 국제통상부(DIT)가 외국인 투자자의 비자신청 관련 보증기관이 되어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직접 지원함
- 2020/21 예산안 주요 내용 및 무역·투자정책 등으로 보아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영국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대출 서비스, 비자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www.gov.uk),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3.24.)

» 국세관세청 (HMRC, Her Majesty Revenue & Customs)¹⁵⁾

■ 국세관세청(HMRC)은 영국의 국세청이자 관세청으로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임

-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하여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하여 구성함
- (주요역할) 영국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인 국세 및 관세를 공평하고 정당하게 거둬들이기 위한 시스템의 확립

✓ 영국의 국가행정조직은 크게 내각부처(Ministerial departments)와 비내각부처(Non ministerial departments)로 나뉘며 2020. 6월 기준, 내각부처는 24개, 비내각부처는 20개로 구성되어 있음

· 내각부처 : 24개

법무장관실, 총리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교육부, 환경식품농촌부, 국제개발부, 국제통상부, 노동연금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재무부**, 내무부, 국방부, 주거지역사회 지방정부부, 법무부, 북아일랜드부, 스코틀랜드 법무관실, 귀족원의장실, 서민원의장실, 스코틀랜드부, 웨일스부, 수출신용기구

· 비내각부처 : 20개

자선위원회, 경쟁시장국, 검찰청, 식품기준청, 산림위원회, 정부보험계리부, 정부법무부, 토지등기소, **국세관세청**, 저축투자청, 국립공문서관, 국립범죄수사청, 철도도로국, 가스전력시장국, 시험감독청, 교육기준청, 중대비리수사기소청, 대법원, 통계청, 수도서비스규제청

· 이외 기타 기관 및 공공기관(Other agencies and public bodies) : 410여개

참 고

① 영국 정부 및 공공기관 통합 웹사이트

☞ <https://www.gov.uk/>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uk/>) (검색일자: '20. 6월)

2

영국 통관 관련 최신 개정사항

- 2020. 1. 31일,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면서 영국 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를 대비한 다양한 신규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¹⁶⁾

○ 따라서 이 절에서는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영국의 여러 정책 중 통관 관련 최신 개정사항을 모아 우리기업에게 안내하고자 함

- 상대국 통관 관련 최신 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수출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영국 진출 기업들은 브렉시트 이후 달라지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 해당 내용은 2020. 6.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영국의 최신 법령 및 정책 관련한 추가사항은 영국 정부 통합 웹사이트(www.gov.uk)를 통해 확인 가능함

» ① 영국 수출시 한-EU FTA에서 한-영 FTA로의 전환¹⁷⁾

-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브렉시트*가 현실화됨

* Britain(영국)과 exit(탈퇴)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함

○ (이행기간)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 12. 31일까지를 브렉시트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영국의 EU 잔류 허용 및 양측 간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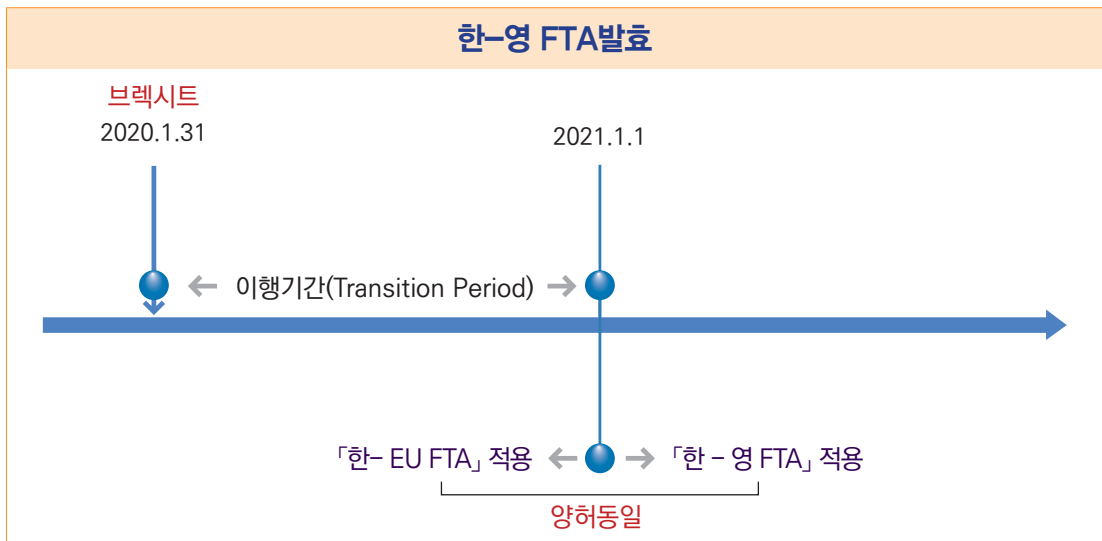
- 이행기간은 양측 합의하에 연장 할 수 있으나, 최근('20. 6월) 영국 및 EU 정상들이 이행기간의 연장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브렉시트 이행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됨

■ 브렉시트 이행기간의 종료일은 우리기업에게도 큰 의미를 가짐

- 그동안 우리기업은 영국 수출시 한-EU FTA를 활용해왔으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더 이상 한-EU FTA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임

■ 그러나 브렉시트 이행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한-영 FTA가 발효되므로 우리기업은 '21. 1. 1일부터는 영국 수출 시 한-EU가 아닌 한-영 FTA를 활용할 수 있음

- 한-영 FTA는 한-EU FTA의 양허수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체결됨
 - 따라서 우리기업이 영국과 무역거래 시 적용받던 관세혜택이 그대로 보장되며, 이로 우리기업은 영국 기업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음
- 즉 브렉시트 이후, 우리기업은 영국 수출시 적용되는 FTA만 달라질 뿐 관세혜택 등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
 - 우리기업은 영국 수출시 브렉시트 이행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처럼 한-EU FTA를 적용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EU FTA 대신 한-영 FTA를 적용하면 됨



✓ [산통부 보도자료] 브렉시트(brexit)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 한-영 FTA 발효 시점

-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행기간 동안 EU와 관세동맹 · 단일시장에 잔류하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EU FTA가 적용,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만약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한-영 FTA의 발효 또한 연장된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이후로 연기되나 '20. 6월, 영국과 EU 정상이 이행기간 연장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행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20. 12. 31일에 종료되며, 한-영 FTA는 '21. 1. 1일에 발효될 예정임

② 한-영 FTA 주요 내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
- 원산지과 관련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 (2) EU를 경유하여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

* 따라서 한국산 제품을 EU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해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영 FTA 적용 가능

자료: 산통부 보도자료(2020.01.21.), KOTRA 해외시장뉴스



>>> ② 영국 글로벌 관세법 신설¹⁸⁾

■ 최근 영국 정부는 영국의 독자적인 관세 체계인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를 새롭게 발표함('20. 05. 19)

-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는 영국 정부에서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신설한 새로운 관세체계임
 - 이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21. 1. 1일부터 EU를 포함한 영국 이외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됨
 - 단, 일반특혜세율(GSP) 및 FTA 특혜세율은 기본관세보다 우선하므로, 기본관세인 영국 글로벌 관세는 개발도상국 또는 영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존 영국 수입품에 적용되던 EU 역외공동관세와 영국 글로벌 관세의 차이점이자 영국 글로벌 관세가 갖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 관세의 단순화) 사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상품군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함
 - 낮은 관세(2%대 이하)의 상품, 영국 내 생산이 없거나 제한된 상품 및 순환경제(circulate economy)* 관련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의 관세를 철폐(0%)하고, 소수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하여 관세를 단순화함

*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널리 확산 중인 자원의 절약,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시스템

물품	변경 전	변경 후
	EU 역외공동관세 (EU common external tariff)	영국 글로벌 관세 (UK global tariff)
가정용 냉장고 (household refrigerators)	2.5%	0%
스크류 드라이버 (screwdriver bits of base metal)	2.7%	0%
베이킹파우더 (prepared baking powders)	2.7%	0%

자료: TRADLINX(<https://www.tradlinx.com/trade-dictionary/UKGT>)

- (2. 관세 유지) 자국 내 산업보호 및 개발도상국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유지함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농수산물, 양고기, 소고기 및 가금류 고기, 세라믹 상품 등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 또한 바닐라(6%), plantation(16%), 침구류(12%) 등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고 영국 시장에의 진출을 돕기 위해 역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지 않고 유지함
- (3. 코로나 19 방역 관련 제품의 무관세화)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인 코로나 19의 방역과 관련한 물품에 일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함
 - 이로 대부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관세가 제로화 되었으며,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한 기타 제품(소독제, PPE, 의료용 공급품 등)의 경우에도 무관세가 적용됨
 - 해당 품목들의 무관세화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나, 아직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잦아들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영국 정부는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의 도입으로 소비자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영국 글로벌 관세는 간단한 체계와 EU보다 더 낮은 세율을 가져 기업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또한 영국 글로벌 관세는 일부 주요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고,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로 표시되는 등 영국 경제에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③ 상품분류체계 유지

- 모든 EU 회원국은 역내 간의 관세는 철폐하고,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CN(Combined Nomenclature) Code에 따라 역외공동관세(Economic and Monetary Union)를 부과함

✓ EU · 영국의 상품분류체계

8504	— 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8504.10	— Ballasts for discharge lamps or tubes
8504.10.20	— Inductors, whether or not connected with a capacitor (CN 코드)
8504.10.20.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TARIC 코드)
8504.10.20.90	— Other (TARIC 코드)

- (CN Code) 8자리로 구성된 EU 상품분류제도로, 앞의 6단위까지는 HS code와 일치함
- (TARIC Code)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정책 및 관세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CN Code 뒤에 2자리를 추가로 부여한 10자리 코드체계로 EU 통합관세제도라고도 함

✓ 영국은 당분간 현행 관세율표상 상품분류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상품분류체계는 변동 없음

📄 영국 및 EU 상품코드 조회 가능 웹사이트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EU집행위의 'TARIC' 사이트 - 상품코드 및 원산국 입력 시 품목별 관세율 확인 가능)

자료: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외교부, KOTRA

» ④ EU 수출자의 정의¹⁹⁾

■ EU에서 설립된 기업만을 세관의 수출신고상 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2020.

4. 1일부터 시행됨

- 종전의 EU의 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에는 “수출자”를 EU내의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어 Non-EU Entity도 “EU 수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왔음
- 그러나 '16년 도입된 EU의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에서는 “EU에서 거주하거나 사람 또는 설립된 법인”만이 “EU 수출자”가 될 수 있도록 수출자의 정의(Definition)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 이 규정은 당초 '19. 12.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정부의 발표에 의해 '20. 4.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됨

✓ EU 신관세법에서의 수출자 요건 (EU 신관세법 위임법령 제1조 19호 a호)

- 1) EU 관세영역 안에 정주한(established) (법)인으로서
- 2) 제3국 수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 3) 해당물품이 EU의 관세영역 밖의 목적지로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자

▶ “EU 관세영역 안에 정주한(established)”의 의미는? (EU 신관세법 제5조 제31항, 제32항)

: EU 신관세법 제5조 제31항에 의거, “EU 관세영역 안에 정주한(established)”이란 EU 안에서 일상적인 거주지(habitual residence)를 가지고 있을 것을 의미하고, 법인과 자연인의 단체(association)의 경우에는 등록된 사무소(registered office), 본사(headquarter)나 고정사업장(permanent business establishment)*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고정사업장이란 동조 제32항에 의거,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필요한 인력과 기술자원들이 상존하고 이 장소를 통하여 관세관련 업무들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를 뜻함

자료: EU Union Customs Code, 법률신문(2020.02.27.)

- EU 수출자 정의에 관한 규정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승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은 이를 잘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마련된 “EU 수출자” 정의에 따라, “EU에서 설립된 기업”만이 세관의 수출신고상 수출자의 지위가 인정됨

- ☞ 따라서 우리기업이 EU에 정주하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EU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시, 인증

- ☞ 한-EU 특혜세율 적용신청 시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고 있는 EU 내 정주하는(established)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판매자로부터 받아 한국세관에 제출해야 함

- 또한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 되면 더 이상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은 EU의 수출자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EU와 거래 중인 기업은 EU 거래처의 공급체인(Supply chain)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⑤ 한-영 FTA 인증수출자²⁰⁾

-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 對영국 수출에 더 이상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이에 우리 관세청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對영국 수출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 관세청은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발효를 앞둔 한-영 FTA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영 FTA 발효 전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따라서 기존 한-EU 인증수출자이며 한-영 FTA 인증수출자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과 같이 인증수출자 지정을 신청하면 됨

- (업체별 인증수출자) 별도의 신청 없이 한-영 FTA 발효 후 자율적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품목별 인증수출자) 한-영 FTA 발효일 당시에 유효한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영 FTA 인증수출자로 자동 추가 지정됨

- 관세청장은 한-영 FTA 발효일에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추가 지정 예정
- 자동 추가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남은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까지이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 이후인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한-영 FTA 발효 일 3년 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재심사함
- 한-영 FTA 자동 추가인증을 희망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한-영 FTA 발효예정일 기준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자율점검 필요
- 인증요건을 불충족하거나,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 추가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거부 신청 가능
 - (신규) 만약 한-EU FTA 인증수출자는 아니나 한-영 FTA 인증수출자를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UNI-PASS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에서 적용대상 협정을 '한-영 FTA'로 선택하여 신청(한-영 FTA 발효 전에도 신청 가능)

인증수출자 제도란?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혜택 1.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 혜택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의 제출 간소화

✓ 협정별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FTA	인증 전	인증 후
한-EU 한-영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수출자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 ·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및 자동발급(수리) · 현지확인 생략 가능
기타 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미적용	

한-EU FTA 및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필수)

✓ 인증수출자 종류

- (업체별) 모든 FTA와 품목에 대해 인증 효력이 발생
 - 업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과 협정을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FTA-PASS)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로 종합적인 원산지관리 능력을 증명해야 함
- (품목별) 특정 FTA와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 효력이 발생
 - HS 6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인증 받은 협정에서만 활용 가능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 · 관리 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 · 관리 능력

자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매뉴얼, 국제원산지정보원

3

영국 수출입 통관 절차

» 수입통관

✓ 영국의 수입 통관은 크게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과 EU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는 물품 적출국이 EU국 또는 비EU국인지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기 때문

✓ 하지만 이는 영국이 EU 회원국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 부터는 EU국 또는 비EU국 여부에 상관없이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모든 수입통관 절차가 동일해짐

비(非)EU국으로부터의 수입²¹⁾



① 수입업체 등록·확인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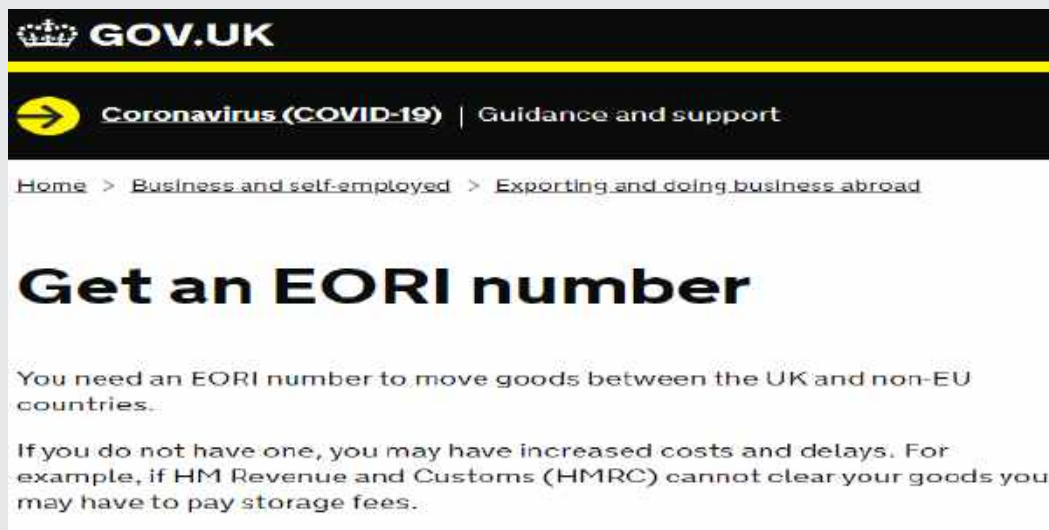
- 영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업체 또는 이를 대신하는 운송업자 및 통관 대리인은 EORI 번호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함
 - (EORI 번호) EU에서 국가 간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09. 7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번호와 유사한 일종의 EU 공동 세관등록번호임

- EU 수출입시 작성되는 통관서류에는 반드시 이 EORI 번호가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EU국으로 통관 시 EORI 번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음
- EORI 번호는 EU 국가별로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1개의 유효한 번호가 EU 회원국 전체에서 통용됨
- 단,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 영국은 EORI 번호가 아닌, **GB EORI 번호**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사용함
 - GB EORI 번호는 기존 EORI 번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번호 앞에 GB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EORI 번호와 거의 동일하며, GB EORI 번호는 EU 역내/역외국인지에 상관없이, 영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통관에서 필수사항임
 - 단, 개인 간의 물품 이동, 국가 간 서비스의 이동 및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의 교역 시에는 제외되며, 우편 및 소포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됨
- 따라서 EORI 번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브렉시트 이행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는 기존 EORI 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GB EORI 번호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영국-EU국 간 수출입의 경우, 브렉시트 이전에는 역내교역에 해당하여 EORI 번호가 불필요했으나, '21. 1. 1일부터는 영국-EU국 간 통관 시에도 EORI 번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신청방법)** EORI 번호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경우 즉시, 영국 국세관세청(HMRC)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5영업일 정도 이내로 발급됨

✓ EORI 번호 신청방법 및 링크

☞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Get an EORI number(EORI 번호 받기)”에서 가능

☞ 링크 : <https://www.gov.uk/eori>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 (준비사항) EORI 번호 신청 시 다음 항목들이 요구되므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영국 EORI 번호 신청 시 준비사항

구분	필요항목	참고
1	VAT number and effective date of registration 부가가치세 번호 및 등록유효기간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VAT registration certificate)에서 확인 가능
2	NINO(National Insurance number) 국민보험번호	개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HMRC 코드통지서, 계정 명세서 등에서 확인 가능
3	UTR(Unique Taxpayer Reference) number 고유납세자참조(UTR) 번호	HMRC 세금신고서 및 계정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4	Business start date and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 사업 시작일 및 표준산업분류(SIC) 코드	기업등록부(companies house register)에서 확인 가능
5	Government Gateway user ID and password 정부 게이트웨이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EORI 번호 신청 시 함께 가입 가능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국가별 납세자번호, 기획재정부(2015. 12)

- **(유효성검사)** 만일 EORI 번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통관 진행 전 수출입자의 해당 EORI 번호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EORI 번호가 있어도 해당 번호의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통관 진행 자체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EORI 번호의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함

✓ EORI 번호 유효성 검사 방법 및 링크

- ☞ 유럽위원회(EC) 홈페이지의 “EORI number validation(EORI 번호 유효성)”에서 가능
-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The screenshot shows the European Commission's website for EORI number validation. The header includes the European Commission logo and a search bar. The main navigation bar shows 'Taxation and Customs Union' and 'Databases > EORI > EORI number validation'. Below this, there's a section titled 'EORI number validation' with a 'Last update 09-07-2020' note. A blue bar contains the text 'Retrieve EORI number validation'. Below this, a message states: 'You can launch a validation request by entering the EORI number and clicking "Validate"'. There is a text input field labeled 'EORI number' with the placeholder 'Enter valid EORI number' and a blue 'Validate' button.

자료: 유럽위원회 홈페이지(<https://ec.europa.eu/>)

② 상품코드분류²³⁾

■ 다음으로는 수입 상품의 코드를 분류하고,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상품분류코드는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및 수입 증명서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반드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영국의 상품분류체계)** 영국은 세계 공통 분류체계인 HS 코드에 CN코드 및 TARIC 코드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EU 공통사항임

- 최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당분간 현행 상품분류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상품분류체계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영국 및 EU의 상품분류체계

8504	- 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for example, rectifiers) and inductors
8504.10	— Ballasts for discharge lamps or tubes
8504.10.20	—— Inductors, whether or not connected with a capacitor (CN 코드)
8504.10.20.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TARIC 코드)
8504.10.20.90	—— Other (TARIC 코드)

- (HS Code) 대외무역거래 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코드로 구분할 수 있도록 분류한 것으로, 1988. 1. 1일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6자리로 이루어진 해당 코드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됨
- (CN Code) 8자리로 구성된 EU 상품분류제도로, 앞의 6단위까지는 HS code와 일치함
- (TARIC Code)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정책 및 관세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CN Code 뒤에 2자리를 추가로 부여한 10자리 코드체계로 EU 통합관세제도라고도 함

📌 영국 상품분류코드 및 관세 · 부가가치세 조회 가능 링크 :

🌐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

- 그러나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영국의 상품분류코드는 그대로 유지되나, 적용되는 관세는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해 두어야 함
 - 영국은 그간 EU 역내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EU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EU 공통의 역외공동관세(Economic and Monetary Union)를 부과해옴
 - 그러나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 영국은 EU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U 회원국을 포함한 영국 이외의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역외공동관세가 아닌 영국의 독자적 관세체계인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가 적용됨(단, 무역협정 체결 시에는 해당 협정세율이 부과)

③ 상품가치 산정²⁴⁾

■ 다음으로는 영국 국세관세청(HMRC)에 해당 상품의 가치를 통지해야 함

- 상품가치는 상품코드와 함께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함

■ 수입 상품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수입자는 상품가치 산정 시, 다음의 (1)에서 (6)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
- 또한 수입자는 제시하는 상품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를 4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1) **거래가격 기준** :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상품을 영국으로 들여오기 이전에 판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함. 이로 산정된 상품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송장사본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여기서 “거래가격”이란 해당 상품을 구매자가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함
 - 단, 거래가격에 운송비, 수수료(구매수수료 제외), 판매조건으로 지불한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 포장(용기)비, 재판매 수익 등의 가산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산정해야 함
- (2)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 : 방법 (1)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품의 생산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2)를 사용할 수 있음
 - 여기서 “동일한 상품”이란 수입품과 해당 상품이 외양의 경미한 차이를 제외하고 물리적 특성, 품질, 소비자 평판 등 모든 면에서 같은 동종·동질의 상품을 말함
- (3)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 기준** : 만일 방법 (2)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품의 생산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3)을 사용함
 - 여기서 “유사한 상품”이란 수입품과 해당 상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을 가지며,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말함

(4) **EU에서 생산된 동일·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 기준** : 이는 수입품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이 없어 방법 (1)~(3)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EU국에서 생산된 물품 중 수입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임

- 그러나 이는 물품의 수입시점, 운송방식 등 조건이 수입물품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5) **산정가격 기준** : 이는 방법 (1)~(4)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 또는 가격을 합한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산정가격”에는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여 당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조립 및 기타 가공비, 포장(용기)비, 노무비, 자재비,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기타 운송비용 등 모든 처리 비용이 포함됨(다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

(6) **합리적 기준** : 만일 방법 (1)~(5)까지로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6)을 사용할 수 있음

- 여기서 “합리적 기준”이란 방법 (1)~(5)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한 것을 뜻함

✓ 영국 수입품 가치산정 가이드

- 영국 관세청(HMRC)는 수입품 가치산정 가이드를 제공 중임
- 영국 수입품 가치산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 가이드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함

📌 영국 수입품 가치산정 가이드 접속 링크

🌐 <https://www.gov.uk/guidance/how-to-value-your-imports-for-customs-duty-and-trade-statistics?step-by-step-nav=849f71d1-f290-4a8e-9458-add936efefc5>

④ 수입 허가 및 인증²⁵⁾

- EU 이외 지역에서 영국으로 특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수입업체로 등록하고 수입 사실을 수입 관세당국에 사전 통지해야 함

○ (사전통지 대상물품) 식물 및 동물성 제품, 고위험 식품 및 사료, 의약품, 섬유, 화학약품, 총기 등

- 살아있는 식물(씨앗 등 식물의 모든 부분을 포함), 신선한 과일·채소·견과류 및 기타 물품 등을 수입시, PEACH (Procedure for Electronic Application for Certificates, 전자 인증서 신청절차) 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로 등록하여 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통지해야 함

식물성 제품 수입 관련 PEACH 시스템 등록 화면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 금지된 식물(씨앗 및 식물의 부분을 포함) 또는 동식물해충(연체동물 및 선충 등), 식물 병원체(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토양 및 기타 유기물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eDomero를 통해 수입업체 등록 및 사전 통지를 해야 함

① <http://edomero.defra.gov.uk/>

- 양식 및 장식용 활어 또는 조개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FHI(Fish Health Inspectorate)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AAH2 양식(form AAH2)을 통해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①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30276/aah2.pdf

AAH2 양식(form AAH2)

Form AAH2



Centre for Environment
Fisheries & Aquaculture
Science

Authorise an importer

This form allows you to apply to import live fish and shellfish.
You must complete all sections of the form before it will be accepted.

Section 1 - Import reason

- To import for farming, restocking, relaying, or purification you must complete the AW1 form, available from GOV.UK.
- A site inspection may be required for imports of coldwater species for the ornamental trade, and for human consumption.
- You must contact the Food Standards Agency for advice on the public health aspects of imports for human consumption, and the Wildlife Licensing and Registration Service for advice on endangered species.

Please select the purpose of your import

- ☐ Ornamental trade - coldwater species
- ☐ Ornamental trade - tropical species
- ☐ Pets and purchases for your collection
- ☐ Scientific research or public aquaria
- ☐ Human consumption
- ☐ Other - please specific below:

Section 2 - Applicant details

Applicant or business name

Applicant or business address

Postcode

Website

Contact details

Landline

Mobile

Email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국 임업위원회(Forestry Commission)에 수입자로 등록하고 수입국 세관에 수입이 사전 통지되어야 함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5936/FCPH005a_form_144dpi_v3_RFT.pdf

- 허가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및 건강관리제품 규제기관(MHRA)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서(license)는 도매상, 제조업체, 마케팅 업체인지에 따라 달리 발급됨

-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국공인수의사회(VMP)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수입자는 수의사, 공인된 도매상, 연구원 등이 있음
- 유럽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유럽화학물질청의 REACH*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동안에는 EU회원국에 해당하므로 다음 규정이 적용되며 이행기간 종료 후 부터는 해당 규정을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해당 규정을 완화 또는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임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 포함)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신(新)화학물질제도”로 '07.6.1일부로 시행됨

- 영국 국제무역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에서 규정한 수입제한품목을 영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라이선스(license)를 발급받아야 함

 수입허가 신청 : www.ilb.trade.gov.uk 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영국의 수입제한품목은 HM Revenue and Customs Integrated Tariff의 1부 3부에서 수입 관리 및 정부 부서의 전체 목록을 확인 가능

⑤ 물품 검사²⁶⁾

■ 사전통지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 한 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국으로의 수입이 허가됨

- (사전통지 대상물품) 식물 및 동물성 제품, 고위험 식품 및 사료, 의약품, 섬유, 화학약품, 총기 등

■ 또한 수입물품의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입자(또는 운송업자 및 대리인)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선택되어야 함
- 또한 상품이 도착하는 시점을 검사 지점에 미리 알려야 하며, 검사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⑥ 수입신고서 제출²⁷⁾

■ 등록이 확인된 수입업체 또는 운송 대리인은 CHIEF (Customing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는 수입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송업자 또는 통관대리인에게 이러한 절차를 위임하여 처리함
- (CHIEF 시스템) 영국 국세관세청(HMRC)의 세관신고 처리 시스템으로 수입업체 또는 운송대리인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세관신고 처리 시스템의 변경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새로운 관세프로세스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영국 국세관세청(HMRC)의 세관신고 처리시스템인 'CHIEF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 · 도입할 예정임
- 당초 새로운 세관시스템(CDS)은 '19년 중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발 및 운영단계에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해 관계자는 오는 '21년에는 영국 세관신고 처리 시스템이 신규 시스템(CDS)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신규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CHIEF)과 신규 시스템(CDS)이 병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BIFA 관세시스템변경 지연에도 정부지지", Cargo news(20.02.17)

- (준비사항) 만약 에이전트 없이 수입자가 직접 CHIEF*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CHIEF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및 C1800 양식 (Request for CHIEF access, 수출입화물 통관처리신청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 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⑦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²⁸⁾

■ 영국 국세관세청(HMRC)은 수입자(또는 운송업체 및 대리인)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알려주며, 이를 납부해야 수입물품이 인도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 통관 시에 납부되어야 함

- 납부방법은 현금, 카드 및 수표, 계좌이체 등으로도 가능함

- 부가가치세 납부시 영국 부가가치세에 등록된 사업체는 양식 C79(수입 VAT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VAT 신고서에 입력하여 세금으로 청구한 후 납부해야 함

○ **(납부지연)** 만일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자주 들어오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30일 정도 요금을 지연하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을 신청할 수 있음

⑧ 물품 인도²⁹⁾

■ **EU 역외국에서 영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도착한 상품은 수입자에게 인도됨**

○ 그러나 만약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지불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수입 증명 또는 허가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물품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않음

- 수입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는 수입자에게 통지되며 조치하여 정정할 수 있음

⑨ 환급 신청³⁰⁾

■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는 환급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함**

○ **(환급대상)** 골동품, 미술품, 수집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영국 내 소재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등록 업체인 경우에도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양식 C79(import VAT certificate, 수입 VAT 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영국 VAT에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함

✓ 영국 부가가치세 안내서(VAT Notice 700)

- 이 외 영국 부가가치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영국 국세관세청(HMRC)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안내서(VAT Notice 700)'를 통해 확인 가능

📄 영국 부가가치세 안내서(VAT Notice 700) 접속 링크 :

🌐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time-of-supply-tax-point-introduction-and-general-rules>

-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영국 VAT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환급은 영국 VAT에 등록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음

■ (관세 환급 · 면제) 비EU국에서 영국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지불됐거나 청구된 관세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의 환급 및 면제가 가능함*

* 관세 환급(면제) 신청 시, 관세가 이미 지불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급되고, 아직 지불되지는 않았으나 수입자에게 관세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관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됨

- (환급대상) 관세가 환급 또는 면제되는 경우로는 수입품에 해당하지 않는 기한에 대한 관세가 납부된 경우, 수입품의 손상 및 결함으로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매자로부터 거부된 경우 등이 해당함
 - 만일 수입품의 손상 · 결함에 대해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판매 계약 체결 시 해당 수입품의 손상이나 결함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수입품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어야 함
- (신청방법) 수입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신청은 양식 C285(form C28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한) 관세의 환급 신청은 수입 통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단, 홍수나 화재 등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기한의 연장이 가능함

⑩ 서류 보관³¹⁾

■ 수입자는 수입을 완료하였더라도 해당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함

- (보관대상) 보관이 필요한 서류로는 상업송장, C79(수입 VAT 증명서) 등 해당 물품의 정상적인 수입통관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포함됨
- (선택사항) 만일 영국에 정기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간이통관신고 또는 AEO 신청을 통해 통관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EU국으로부터의 수입³²⁾

■ EU국에서 영국으로의 수입절차는 비EU국→영국으로의 수입통관 절차와 상이함

- 보통 비EU국에서 영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는 “Import”라고 하나, EU국에서 영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는 “Acquisitions”라고 함*

* 우리말로 “Import”는 수입, “Acquisitions”는 취득, 획득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EU 회원국 간의 물품 이동은 역내 교역으로 수입*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임

* ‘수입’의 사전적 의미는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임

■ 따라서 EU국→영국으로의 물품 이동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 허가 역시 요구되지 않음

- 이때, 물품의 원산지는 EU국 일수도 있고 비EU국 일수도 있음
 - 단, 비EU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일 때는 해당 물품이 EU국으로 처음 수입될 때 수입 관세를 이미 지불한 경우로, 해당 물품이 EU국에서 EU국으로 이동할 때는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그러나 EU국 → 영국으로의 물품 이동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VAT)는 부과되며, 동식물성 제품 · 의약품 · 무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가 요구될 수 있음
- 또한 EU국→영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총 가치가 £1,5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ntrastat Declaration’를 작성해야 함

- 이 경우, 관련 서류는 6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영국 관세당국(HMRC)의 요청 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은 브렉시트 이전 즉, 영국이 EU 회원국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는 EU국에서 영국으로의 수입도 EU 역외국에서 영국으로의 수입과 동일하게 절차와 제세 등이 적용됨

○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함

- 이로 EU국→영국으로의 물품 이동도 “수입”에 해당하므로 수입관세 및 수입허가 등이 EU국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영국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됨

» 수출통관³³⁾

- 영국의 수출통관 역시 수입처럼 EU국 여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함
- 하지만 이는 영국이 EU 회원국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는 EU국 또는 비EU국 여부에 상관없이 영국 이외의 국가로 물품을 내보내는 모든 수출통관 절차가 기존 비EU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 절차와 동일해짐

비(非)EU국으로의 수출



① 관련 규정 확인

■ 영국에서 비EU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상품과 관련한 국내 및 수출국의 수출입 규정을 확인해야 함

- 국내 규정에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영국의 수출허가 또는 인증서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하며, 수입국 규정에서는 해당 상품의 수입제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국과 해당 수출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 단,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되기 전까지는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는 EU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만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영국의 무역협정 체결현황은 동 자료 p.28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업데이트된 사항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 (www.gov.uk)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함

② 수출업체 등록 및 확인 / EORI 번호 및 VAT 등록 확인

■ 영국에서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이는 비EU국에서의 수입통관 절차 중 ① 수입업체 등록·확인에서 설명된 내용과 동일함 (p.97)

■ 또한 부가가치세(VAT)를 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등록대상)** 지난 12개월 간 사업체의 VAT 과세소득이 £ 85,0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다음 30일 동안 VAT 과세소득이 £ 85,0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사업체의 VAT 과세소득이 £ 85,000 미만인 경우라도 자발적으로 VAT 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 자발적 등록이 가능함
- **(등록기한)** 기한은 VAT 등록 경우에 따라 상이하며, VAT 강제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난 12개월 간 VAT 과세소득이 £ 85,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VAT 과세대상 매출액이 £ 85,000를 초과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음 30일 동안 VAT 과세소득이 £ 85,0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VAT 과세소득이 £ 85,000 이상일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함
- **(예외신청)** VAT 과세소득이 일시적으로 기준액(£ 85,000)을 초과한 경우, VAT 등록 예외 신청을 통해 VAT 강제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향후 12개월 간 £ 83,000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영국 국세관세청(HMRC)에 제출해야 함
 - 만약 VAT 등록 예외 신청 후, 12개월 내로 VAT 과세소득이 £ 83,000을 초과하면 해당 업체의 예외 자격은 취소됨

✓ 영국 부가가치세 등록(VAT registration)

- 이에 추가적으로 영국 부가가치세 등록 관련 내용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등록 절차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영국 부가가치세 등록(VAT registration) 관련 링크 :

🌐 <https://www.gov.uk/vat-registration/when-to-register?step-by-step-nav=b9347000-c726-4c3c-b76a-e52b6cebb3eb>

③ 수출 인증 및 허가

■ 수출 상품이 영국의 수출 허가 및 인증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 라이선스 및 인증을 획득해야 함

- **(대상품목)** 수출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한 주요 품목은 동식물성 제품 및 농산물, 의료기기, 농업기기, 화학물질, 약물 및 의약품, 폐기물, 다이아몬드, 예술품 · 골동품 및 문화재, 총기, 탄약 및 방산제품 등이 있음

- 수출시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인증서는 물품의 종류 및 목적국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출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인증 및 허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영국의 상품 및 목적국별 주요 수출인증 · 허가

수출품목	적출국 → 목적국	
	영국 → EU국	영국 → 비EU국
살아 있는 동물 (가축, 가금류 등)	- ITAHC(Intra Trade Animal Health Certificate, 역내 동물건강증명서) : EU 역내 동식물 거래를 위한 인증서로, 공식 수의사(OV)의 진찰을 통해 작성될 수 있음(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수출 시에도 해당)	- EHC(Export Health Certificate, 수출건강증명서) 사본 : 동물을 역외로 수출시 필요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종류를 수출하는 경우, 종류별로 EHC가 각각 필요하며, 인증서에는 공인된 수의사(OV)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의료기기	- 특별한 인증이 요구되지 않음	- CFS(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 해당 제품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회사명, 주소, 연락처, 제품명, 판매국(수출국), 수입국 등이 기재되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영국 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규정을 준수하여 CE마크를 획득한 상태여야 함

수출품목	적출국 → 목적국	
	영국 → EU국	영국 → 비EU국
식물 및 씨앗, 구근	- Plant passport(식물통행증) : EU내에서 생산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이 EU간에 이동할 때 요구되는 EU내 식물위생증명서	- plant health(phytosanitary) certificate(식물 건강(위생)증명서) : 수출국 검사증명서 또는 식물검역증이라고도 하며 수출국에서 해당 식물을 검사한 결과, 규제병해충이 없다고 증명하는 서류로 이는 모든 식물의 수입 시 요구됨
다이아몬드 (원석)	- 국제적으로 절단 및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을 취득한 국가 간에만 거래될 수 있음 - EU는 이를 취득하여 EU간 거래에는 특별한 인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킴벌리 프로세스(KP) 인증을 취득한 국가 간의 교역도 동일함 - 따라서 비EU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할 때에는 KP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취득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은 할 수 없음 - Kimberley Process(KP) Certification(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 반정부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쓰이는 소위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제적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을 인증하는 국제인증체제 - (KP인증 취득국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브라질, EU, 노르웨이, 스위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UAE,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한국, 일본,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영국 수출시장 가이드(Exporting country guides)

- 영국 국제무역부(DIT)에서는 수출국별 관련 규정 및 필요 서류등을 안내하는 수출국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수출시 필요한 인증과 허가는 품목 및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영국 수출시장 가이드(Exporting country guides) 접속 링크 :

🌐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exporting-country-guides>

④ 상품코드분류

■ 다음으로는 수출품의 상품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기재해야 함

- 이와 관련한 내용은 비EU국에서의 수입통관 절차 중 ② 상품코드분류에서 설명된 내용과 동일함(p.100)

⑤ 송장 및 기타 서류 준비

■ 다음은 수출품의 송장, 인증서 및 필요한 기타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송장에 기입되는 상품의 가치는 거래가격 기준이며, 이에 포함된 운송 및 수출 보험료는 별도로 기재되어야 함

⑥ 수출 신고서 제출

■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구비되었으면, 수출국 관세당국에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출 절차를 마무리함

- 수출 신고서의 제출을 포함한 수출통관 일련의 절차는 수출자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으나, 대개 운송업자 또는 통관대리인을 지정하고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함
- **(제출방법)** 대부분의 수출신고는 National Export System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됨
 - 만약 통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수출 통관을 처리하는 경우,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National Export System에 등록을 해야 함
- **(제출기한)** 수출 신고서는 해당 물품이 수출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정확한 기한은 수출 시 사용된 마지막 운송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
 - 내륙운송 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출발 1시간 전까지, 기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출발 2시간 전까지 신고 되어야 하며, 해상 운송 시에는 화물을 싣기 최소 1일 전까지 신고 되어야 함

○ **(기재항목)**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는 다음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세관절차코드(Customs Procedure Code, CPC), 상품코드, 출발지-목적지, 수출자-수입자, 상품의 종류 및 수량, 포장상태, 운송방법 및 비용, 통화 및 가치산정 방법, 인증서 및 라이선스 등

⑦ 물품 출고

■ **위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영국에서 수출한 해당 상품이 목적국으로 출고됨**

- 그러나 만약 해당 물품에 대한 적합한 수출 증명 또는 허가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물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수출품이 출고될 수 없음
 - 수출품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는 수출자에게 통지되며 수출자는 이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물품을 정상적으로 출고할 수 있음

⑧ 서류 보관

■ **수출자는 해당 수출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보관이 필요한 서류로는 상업송장 등 해당 물품의 정상적인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포함함

EU국으로의 수출

① 수출 인증 및 허가 취득

■ **영국에서 EU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제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인증 및 허가를 획득해야 함**

- 수출시 요구되는 인증·허가는 수출물품의 종류 및 목적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내용은 비EU국으로의 수출 통관 중 ③ 수출 인증 및 허가에서 설명된 내용과 동일함(p.114)

② 송장 및 수출서류 제출

- 영국→EU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운송 대리인 또는 세관당국은 수출자에게 **견적 송장(Profoma Invoice)**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견적송장(Profoma invoice)이란 매매계약의 성립 이전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거래물품 가격 계산자료를 말함
 - 수출자는 요구되는 송장 및 인증, 허가 등의 수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 물품이 EU국으로 이동됨

③ 서류 보관

- EU국으로의 수출에서도 수출자는 관련한 모든 수출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단, 여기서 설명하는 EU국으로의 수출 통관은 영국이 EU 회원국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내용이며,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1. 1. 1일부터는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으로의 수출에도 비EU국으로의 수출통관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EU국 및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21. 1.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음

» 화물에 따른 통관제도의 분류³⁴⁾

- 영국의 통관제도를 화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나누면 약식통관, 정식통관 및 우편통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 약식통관 시, 영국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의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 지정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품, Door to Door 운반제품 등)은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검사하기도 함
-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0%) 등은 일반적으로 통관 시 지불됨
- 약식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운송업체의 통관부서나 전문 통관업체에 통관절차를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음

②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 영국의 농수산물·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제품과 관세, 통관, 검역제도 및 절차가 동등하나 일반 제품에 비해 추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 등)가 요구되며 다소 까다롭게 진행됨
 - 영국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 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되며 지금까지는 WTO와 EU의 규정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브렉시트로 관련 법이 달라질 수 있음
- 영국의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 국가 상품과 역외산 제품의 수입통관으로 대별되나, 통관 양식은 동일하였으며 이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영국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Form C1600이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기록도 수용함

-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서류는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탁송 기록(전산화된 제품 목록 시스템) 등이 있음

- 수입신고서의 경우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주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됨
- 그동안 영국의 관세제도는 EU의 관세제도와 동일하여, EU 회원국 제품의 통관 시에는 보통 무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동 농산물정책(CAP) 규정에 의한 관세를 적용하며 EU 역외국에게는 EU 공동 역외관세를 부과해왔음
- 그러나 최근 영국은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영국 글로벌 관세(UKGT)'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의 부과는 새롭게 규정된 영국의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정세율이 부과됨

③ 우편통관

- 영국으로 우편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CN22/CN23)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customs), 소비세(excise),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됨
 - 단, 물품의 가치가 135파운드를 넘지 않을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알코올, 담배, 향수, 화장수 등을 제외한 제품 중 구매금액이 15파운드를 넘지 않거나 선물용인 경우 39파운드를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이 선물일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치가 135파운드 이상, 630파운드 이하일 시 통상 물품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관세가 부과됨(이때, 물품의 가치는 우편료, 포장비 및 보험료를 포함함)
 - 단, 선물의 경우에도 중량 500mg 및 0.25 l 를 초과하는 향수와 화장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알코올과 담배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세가 부과됨

» 기타 통관 관련 정보³⁵⁾

- 영국 무역항 및 공항은 런던 및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항구 및 공항은 다음과 같음
 - (국제항구) London(Thames Port), Tees and Hartlepool, Grimsby and Immingham, Sullom Voe, Milford Haven, Southampton, Liverpool, Forth, Felixstowe, Medway, Dover항 등
 - 선사에 따라 출입 항구가 다르나, 영국-한국 간의 운송은 보통 Felixstowe, Southampton, Thames Port 항이 이용됨
 - (국제공항) Heathrow, Gatwick, Luton, Stansted, City 등
 - 히드로(Heathrow) 공항 이용시, Heathrow 공항에는 5개의 터미널이 있고 또 중간에 터미널이 바뀌는 경우도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터미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 Heathrow 공항 터미널 1, 2, 3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터미널 4, 5까지는 자동차로 약 20분 가량이 소요됨
 - Heathrow 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공항-패딩턴 역(시내중심지)까지는 무정차 특급기차(Heathrow Express, 편도 약 25파운드, 소요시간 15분)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영국 수입시 평균 운송비용은 부산항에서 Felixstowe항까지Port to Port 기준, 20ft 컨테이너가 1,840달러, 40ft 컨테이너가 3,650달러 수준임
 - 이는 2013년 12월 기준이며, 화주와 물동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영국 관세

» 관세의 종류

■ 기본적인 관세 구분에 따라 영국의 관세 종류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음

영국의 관세 종류	
구 분	내 용
기본관세	- 최혜국 세율(MFN rate) :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지위를 획득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최혜국세율(MFN rate) - 관세 부과 시 최혜국 세율과 국정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것이 적용됨
	브렉시트 이전 국정세율(Autonomous rate) - EU 역외공동관세 : EU는 28개국 역내 국가 간의 관세는 철폐하고, 그 이외의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함 - '역외공동관세'는 1968년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한 공동관세율(The common customs tariff)로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국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브렉시트 이행기간까지는 적용)
	브렉시트 이후 국정세율(Autonomous rate) - 영국 글로벌 관세 : 2020년, 영국이 EU를 탈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표한 영국의 독자적인 관세체계임 - 영국 글로벌 관세법(UK Global Tariff, UKGT)은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는 '21. 1. 1일부터 기존 EU에서 적용되던 국정세율인 '역외공동관세'를 대체하므로 영국과 올해 안으로 무역협정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내년부터 수입관세 부과 시 해당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됨
FTA협정관세 (FTA preferential rate)	기본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 간 협의한 물품에 대해 WTO 양허 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음
할당관세 (Quota)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당 수량 범위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잠정세율 (Suspension)	산업·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물품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수출국 기업의 덤핑가격(원가 이하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 수출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질 경우, 수입국이 덤핑마진(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액)에 대해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Anti-subsidy)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질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세이프가드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수입 수량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

자료: 의료기기통합정보BANK, 국가별 통관정보(영국)

○ 영국 관세율 종류에서 눈여겨 볼 것은 기본관세의 종류임

- 브렉시트 이전까지 영국의 기본관세율은 최혜국세율 및 EU 역외공동관세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 브렉시트 이후부터는 EU 역외공동관세를 대신하여 UK 글로벌 관세가 적용됨
- UK 글로벌 관세의 특징, 주요 내용 등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동 자료 p.9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³⁶⁾

■ 영국 국세·관세청인 HMRC(HM Revenue and Customs)는 수입자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품목코드, 관세율 등에 대한 정보(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수입신고 이전에 심사하여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물품의 품목코드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통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법적요건) 영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다음 법에 근거하여 시행됨

✓ <한-EU FTA 협정문> 제6.6조 사전심사

1. 무역업자로부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으로부터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자신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발급한다.

○ (담당기관) HM Revenue and Customs(HMRC)

①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 (신청요건 및 절차) HMRC의 운영절차규정(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대 30 근무일(working days)까지 소요되나 보통 18 근무일 내외로 소요됨

- 외국인 제한규정은 없으며 온라인을 통해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음

FTA 활용기업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

① 관세청 FTA 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e-book > FTA 활용가이드 > FTA 체약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제1,2편 확인



관련 보도자료

“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관세청 보도자료(20.2.13)

-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e System :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공통의 코드체계에 따라 품목(Description)과 품목번호(Code)를 정하는 것

-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 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사례) 창원 소재 A사는 ‘굴착기용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품목번호를 8412.29호로 분류하여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중국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이 8431.49호로 분류된다고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연간 5억원 상당의 관세 추가 부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 받는 것이다.
- 그러나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 이에 관세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하여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 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하여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다.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United Kingdom



IV

영국의 통상정책

제1절 최근 영국의 통상 관련 동향

제2절 한-영 양국 간 이슈사항

제3절 영국의 수입규제

제4절 양국의 수출규제

제5절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1

최근 영국의 통상 관련 동향

» 브렉시트(brexit) : 영국, 47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³⁷⁾

■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20. 1. 31일 오후 11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공식적으로 결정됨

○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에서 「EU 탈퇴협정(일명 ‘브렉시트 합의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20. 1. 31일 23시(현지시각 기준), 영국은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함

–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이 EU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지 47년 만이자,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만의 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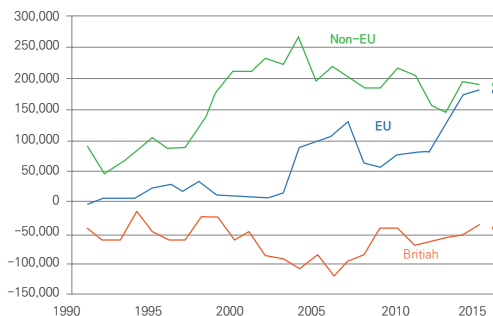
* EEC(European Economy Community, '57년) → EC(European Community, '93년) → EU(European Union, '09년)

■ (추진배경) 영국의 브렉시트는 ① 이민자 증가, ② 재정건전화 정책, ③ EU 분담금 및 EU내 위상 등의 이유로 추진됨

○ (① 이민자 증가) EU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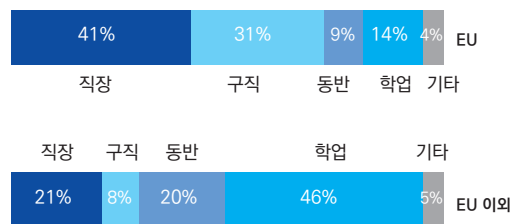
– 실제 영국 순이민자의 50%가 EU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해당 이민자들은 주로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영국 순이민자수 추이



자료: ONS Long term International Migration,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2019.3)

지역별 영국 이주 목적



자료: ON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2019.3)

- (② 재정건전화 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지속되어온 영국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확대한 국가재정지출로 영국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영국정부는 '10년부터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함

– 영국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빈곤층 및 사회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삭감됨*

* 이로 노년층 및 저소득지역에서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우세하게 형성됨

- (③ EU 분담금 및 EU내 위상) 영국의 EU 분담금*은 EU 회원국 중 거의 최고 수준이나, EU 내 영국의 위상**은 오히려 약화되어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10~'14년 중 평균 명목 GDP의 0.4% 수준으로 EU내 최고 수준(주당 3억 5천만 파운드)

** 영국의 EU 의회 의석 수 비중 : 9.7%

■ EU 잔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점차 거세지자 '15. 5월 이루어진 총선에서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referendum)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16. 6.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행함

-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찬성이 과반(51.9%)*을 차지하면서 영국의 EU 탈퇴가 본격화되기 시작함

* 총 유권자 5,650만명 중 72.2%가 투표에 참여하여 EU 탈퇴 찬성 1,741만표(51.9%), 반대 1,614만표(48.1%)를 기록함

– 이후 '18. 11. 25일 영국과 EU 양측 간의 정상회의에서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이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영국의회 의 승인반대로 당초 '19. 3. 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되는 등 진행이 정체되면서 그동안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옴

– 그러던 중 조기총선('19. 12. 12)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 올해 1월,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의 내부절차*가 마무리되고, 최근 EU도 최종적으로 「EU 탈퇴협정」의 의회 및 각료이사회 승인을 완료함

*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국제조약인 「EU 탈퇴협정」을 영국 내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법)의 엡상 하원 의결, 여왕 재가 등

✓ 「EU 탈퇴협정」 개관

- 「EU 탈퇴협정」은 총 58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로 서문, 공통조항, 시민의 권리, 분리조항, 전환 기간, 재정조항, 제도규정, 북아일랜드 의정서, 사이프러스 주둔기지 의정서, 지브롤타 의정서, 부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정부는 동 협정을 내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행법인 「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을 구성하였으며, 최근 이에 대한 상하원 의결 및 여왕 재가가 완료됨

✓ 「EU 탈퇴협정」 주요 내용 일부 발췌

가. 본 협정문

■ [공통조항] 제1조~제8조 (적용 법 및 협정 해석 등)

- (자료) 영국이 EU와 Euratom에서 탈퇴하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영국은 EU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원칙적으로 접근 불가능
- (적용법) 협정상에 언급되는 EU법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되고 있는 EU법을 의미하나 사회보장 상호인정, 이행기간 종료 이후까지 해당되는 재정정산 부분,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에는 이행기간 이후의 개정법도 인정
 - 이행기간 종료 후 EU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영국법원은 ECJ의 판례법을 성실하게 고려(due regard)
- (협정해석) 영국법원은 협정해석 시 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수립된 ECJ 판례법에 합치시켜야 하고, 그 이후에 수립된 판례법도 성실하게 고려

■ [분리조항] 제40조~제125조 (상품, 통관절차, 조세, 지적권, 사법, 정보처리, 조달, Euratom, 내무사법 절차, 행정협력, 특권 및 면제, 기구 운영 등)

- (상품출시 : 제40조~제46조) 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출시된 제품은 자유이동 보장(제품 보장 및 재라벨링 면제, 기존 적합성평가 인정)*

* 출시시점 입증책임은 제품 공급자에게 있음

- 살아있는 동물, 동물 제품 등의 거래에 대해서 영국 수출자는 수출위생증명서(EHC)에 검역관의 서명을 받아 국경검역을 거쳐야 함
- 영국은 의약보건규제청(MHRA), 수의약품총국(VMD), 보건안전청(HSE)의 안전성 평가 중에 있는 이약 및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이행기간 종료이전 영국 시험성적서 보유 제조사가 EU성적서를 신청시 영국 기관은 EU기관에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

- **(통관절차 : 제47조~제50조)** 이행기간 중 세관간 이동 중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EU법 적용
 - 이행기간 중 영국내 임시저장 또는 특별절차 하에 있는 비EU 상품은 이행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시장으로 반출되어야 EU 관세법 적용
 - EU 네트워크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 지속(상세 부속서 4)
 -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 제51조~제53조)** 이행기간 중 세관간 이동 중에 있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및 부가세(excise tax)는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EU법 적용
 - EU 네트워크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 지속(상세 부속서 4)
 - **(지재권 및 GI : 제54조~제61조)** EU 상표권은 중단되어 영국 상표권으로 전환 부여, 특허연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호
 - 이행기간 중 신청과정 중에 있는 EU 상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 상표로 재신청시, 신속히 상표권 부여(상표 및 디자인 9개월, 식물다양성 6개월)
 - 이행기간 중 보호되던 데이터베이스 및 상표권자 권리는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상호 보호
 - 영국 당국에 대한 의약품 및 농화학품 특허에 대한 추가 보호기간 신청에 대해서는 EU 수준으로 보호
 - 현행 EU GI는 미래관계에서 다른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는 계속 보호되고, 영국 GI는 현행 EU체제로 계속 보호
 - **[이행기간] 제126조~제132조 (기한, 공동외교안보정책, 기구참여, 국제협정 등)**
 - **(기간한정)** 이행기간(협정상 명칭은 전환기간)의 범위 및 운영 방식
 - 기간 : 탈퇴일 ~ 2020. 12. 31
 - 동 기간 중 영국은 EU회원국은 아니지만 EU법의 대상
 - **(국제협정)** 이행기간 중 EU가 제3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영국이 협정 목적에 비추어 EU 회원국으로 대우 되도록 EU가 제3국에 통보
 - 동 기간 중 영국은 새로운 국제(통상)협정을 협상, 서명, 비준 가능(발행은 이행기간 종료 이후 가능)
- ※ 위 내용은 주영한국대사관 자료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 및 본문 전체는 주영한국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gb-ko/index.do>) → 브렉시트소식 → ‘영국의 EU 탈퇴협정문 주요내용’에서 확인가능함

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2020.01.23.), 주영한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gb-ko/index.do>)

▶▶ **포스트 브렉시트, 영국의 적극적인 무역영토 확장**³⁸⁾

■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를 대비하여 무역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되므로 더 이상 EU가 맺은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할 수 없음
 - 현재까지 EU가 맺은 FTA 및 관세동맹은 31여개에 달하며 EU는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상당수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받아 현재 세계 최대 교역 경제권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EU의 FTA 및 관세동맹 체결 현황

FTA 및 관세동맹 (발효년도)	
EU-한국 FTA (2011)	EU-멕시코 FTA (2000)
EU-세르비아 FTA (2010)	EU-이스라엘 FTA (2000)
EU-카메룬 FTA (2009)	EU-모로코 FTA (2000)
EU-코트디부아르 FTA (2009)	EU-남아프리카공화국 FTA (2000)
EU-CARIFORUM State EPA (2008)	EU-튀니지 FTA (1998)
EU-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FTA (2008)	EU-Palestinian Authority FTA (1997)
EU-몬테네그로 FTA (2008)	EU-Faroe Island FTA (1997)
EU-알바니아 FTA (2006)	EU-터키 관세동맹 (1996)
EU-알제리 FTA (2005)	EEA(European Economic Area) (1994)
EU-이집트 FTA (2004)	EU-안도라 관세동맹 (1991)
EU-레바논 FTA (2003)	EU-시리아 FTA (1977)
EU-칠레 FTA (2003)	EU-노르웨이 FTA (1973)
EU-요르단 FTA (2002)	EU-아이슬란드 FTA (1973)
EU-산마리노 관세동맹 (2002)	EU-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FTA (1973)
EU-크로아티아 FTA (2002)	EU-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1971)
EU-마케도니아 FTA (2001)	

자료: RTA database, WTO(검색일자: 2020.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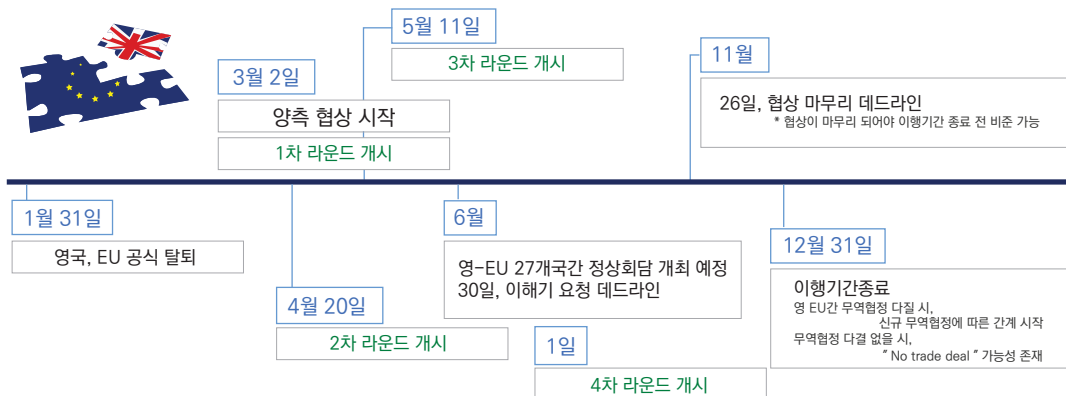
- 이에 영국정부는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 또는 신규로 체결하여 교역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영국 대외무역 중 80%의 FTA 적용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2020. 5월 기준, 영국은 기존 71개의 협정체결국(EU 제외) 중 31개국과 기존 협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40개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영 FTA는 기존 한-EU FTA의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3년간 EU산 원재료의 역내산 인정과 EU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등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어 체결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국회비준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로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발효됨 (발효예정일 : 2021. 1. 1일)

■ 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으로는 EU,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음

- (EU)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는 약 2달 후인 2020. 3. 2일 브리셀에서 미래관계협상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6월에 4차협상을 진행함

영국-EU 간 미래관계협상 추진 일정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 그동안 진행된 英-EU 간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교통, 에너지, 어업,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법 집행 및 법적 협력, Union 프로그램 참여, 이동성 및 사회 보장, 주제별 협력, 수평적 합의 및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옴

*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란, 한 국가에서 기업이 경쟁기업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업에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통 규칙 및 표준을 의미함.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은 EU 단일 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EU 회원국은 사람, 상품, 서비스 및 화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어느 정도 수준의 공정한 경쟁의 장이 영-EU 무역협정에서 다뤄져야 하는지가 협상의 주 쟁점사항이며 EU 측은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호, 과세, 국가보조금 영역에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양측은 6월내 경제적 상호의존성 및 지리적 근접 수준에 맞는 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협상의 지연 및 양측 간 의견차 등으로 6월내 실질적 협의를 도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英-EU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 영국 측은 협상 기본 전제로 동등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EU 측은 시장규모에서 영국과 EU가 동등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견이 나타나고 있음
- 양측은 특히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과 어업분야에 대해 극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은 어떠한 경우든 영국이 EU법과 연계되는 공평한 경쟁의 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업분야의 경우 연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은 지난 2차 협상 이후 EU측이 제안하는 상품무역은 EU가 여타 국가와 체결한 FTA 수준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함
 - 영국정부는 그동안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있어 캐나다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와 FT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옴

EU-캐나다 CEP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주요 내용

- (상품부문) 캐나다 관세라인의 98.6%, EU 관세라인의 98.7% 단계적 철폐
단, 육류 및 유제품 등에는 쿼터 제한
 - (서비스부문) 공정한 접근 보장(시청각서비스, 특정항공서비스 제외)
 - 전문직 및 투자자의 활동 촉진을 위한 출입, 전문자격의 상호인정 보장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일관된 표준 개발
 - 쌍방간 정부조달개방 합의로 각국 기업이 상대국의 입찰에 응찰 가능
-
- 3차 협상 이후, 영국측에서는 EU에서 불균형한 제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영국을 EU법률 및 표준에 묶는 수준의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EU가 접근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EU측은 부문별로 쪼개진 협정이나 과거의 사례에 기반한 협정은 수용이 어렵고 영국의 EU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며, 협상에서 공평한 거래의 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함
 - 가장 최근에 진행된 4차 협상에서도 양측은 별다른 진전을 얻지 못하고 종료했으며, 양측은 여전히 공평한 거래의 장과 어업분야, 새로운 양측 관계에 대한 관리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계속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英-EU 간 협상 체결이 지연되어 양측간 합의없는 영국의 EU 탈퇴(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됨
- **(미국)** 영국-미국 간의 FTA 협상은 2020. 5월에 시작하여 2주간 6주단위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협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체되고 있음
 - 협상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디지털 트레이드, 투자, 중소기업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국가보건서비스의 보호 및 식품안전·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밝힘
 - 미국은 영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영-미 양국간 무역·투자는 이미 활발한 편이나, 영국정부는 영-미 FTA 체결 후 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 150억 파운드, 임금은 18억 파운드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특히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신흥분야인 데이터 및 AI 등에서 영국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며 전문 서비스, 식품가공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혜택도 기대하고 있음
- **(일본)** 영국정부는 2020. 5월 일본과의 FTA 협상 목표를 발표했으며, 영국과 일본 양측은 협상에서 EU-일본 EPA를 기초로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추가협정을 약속함
 - '19년 영국의 對日 총교역액은 약 167억 파운드로 영국정부는 영-일 FTA 체결시 장기적으로 교역 및 고용·임금수준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영국정부는 영-일 FTA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합류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의 영국 산업진출 기회를 확장하는 영국 무역의 다변화 기회로 삼고 있음

» 휘발유 · 디젤 · 하이브리드 신차 판매 금지 가속화³⁹⁾

■ 오는 2035년부터 영국에서는 전기 및 수소 신차만 구매할 수 있음

○ 2019년,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 관련 법령에 최종 서명함

- 탄소 중립이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량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외부에서 탄소를 감축하거나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이를 상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함
- 이와 같은 급진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유럽 주요 7개국(G7) 중 영국이 처음이며, 이를 법으로 제정한 사례도 세계 최초임
- 해당 법안은 저탄소 발전 비중을 기존 대비 4배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당초 내연기관(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은 204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영국 기후 변화위원회 및 정부에서 당초 계획한 2050년까지 순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부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앞당겨짐



▲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의 前장관(크리스 스킴드모어)이 탄소 중립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하는 모습(2019. 6월)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uk/>)

■ 영국은 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함

-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은 올해 11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릴 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영국은 이를 통해 전 세계 탄소배출 순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자 함
 - 영국은 전 세계에 경제성장과 함께 탄소배출을 증가시킨 산업혁명을 시작한 국가지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실제 최근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42% 정도 감소함
- 현재 영국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 따라서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영국정부의 탄소 중립 관련 정책에 주목하여 해당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기·수소차 및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산업의 경우, 영국정부의 탄소 중립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산업이므로 가장 큰 자원과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전기·수소차) 2035년부터 영국 내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금지로 전기 및 수소차가 대량 생산됨에 따라 전기·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 및 관련 기술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
 - (제조·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차의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접근이 용이한 충전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전기·수소차 생산 및 충전 관련 건설 산업이 함께 발달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발전)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풍력,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가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분야의 성장으로 관련 시설의 건설 및 기술 분야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환경 규제정책은 현재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관련 산업 및 시장에도 크게 영향이 미치므로 우리 수출기업은 세계 환경규제 동향을 미리 숙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유럽의 환경규제 정책 및 관련 산업 동향

① EU의 배출가스 규제

- 2019년, EU는 유럽시장에 신규 출시되는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법률인 「Regulation (EU) 2019/631」을 제정함
- 이는 EU내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각각 km당 95g, 147g로 설정한 것으로,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기준을 2021년 대비 37.5%, 31% 더 강화하겠다고 밝힘
- 해당 기준은 2021년부터 유럽에서 출고되는 신차의 100%가 충족해야 하며, 위반시 자동차 1대 기준으로 1g 초과 당 95유로(약 12만 3천원)의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업계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인 EU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에 공격적으로 돌입함

②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 2019년, EU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21.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본 지침은 크게 1. 국가적인 노력(시장출시제한, 사용량 감축 등), 2. 기업의무 확대(제품설계요건, 제품 마킹 등), 3. 소비자 인식 개선활동 등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감축하고자 함
- 이로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라벨링, 생산자책임 등이 강화되면서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시장 진출 기업들은 2020년 말 발표 예정인 관련 규정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미리 숙지하여 기존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EU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 강화

- 2020년, 유럽위원회(EC)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 승인과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에 관한 규정(REACH, Registration, Evaluation&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41조 5항을 개정함
-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규정의 효력은 2020. 4. 27일부터 발생함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화학물질 관리규정(REACH)의 적정이행 여부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에 대해 수령한 전체 서류의 20% 이상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기한은 유럽내 생산 또는 제조된 화학물질이 연간 100톤 이상일 경우 2023. 12. 31일까지, 100톤 미만은 2027. 12. 31일까지임
- 따라서 유럽내 화학물질과 관련한 제품(화장품, 의약품, 에어로졸, 폴리머 등)의 생산기업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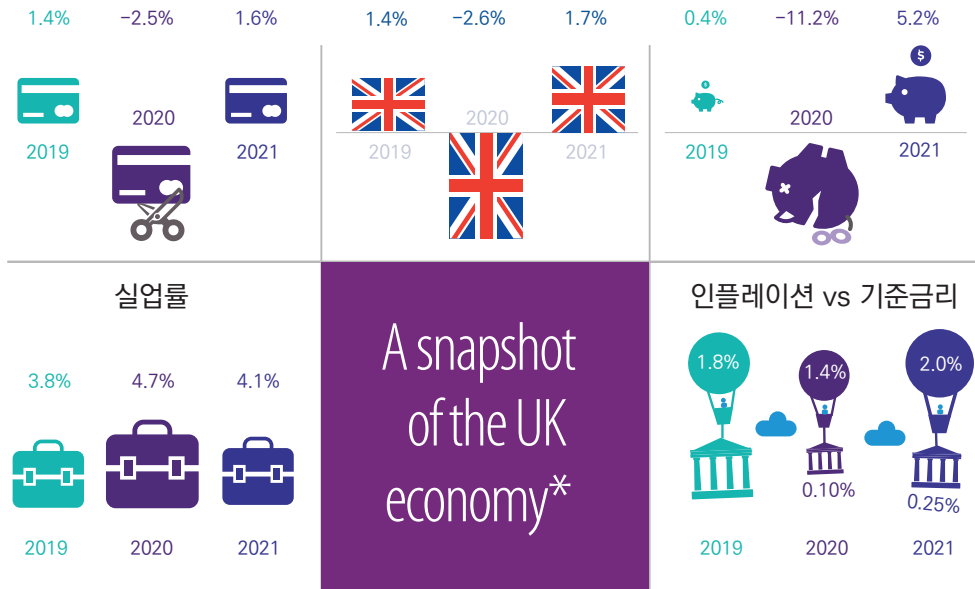
자료: COMPASS(환경규제종합정보망)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코로나 19로 달라진 영국의 경제 및 소비트렌드⁴⁰⁾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 19는 영국의 경제·산업 및 시장구조와 소비트렌드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져옴

- (경제 부문) 유럽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2020. 3. 12일 영국 FTSE 100 지수는 1987년 이후 최초로 10%까지 하락했으며, 얼마 후인 3.23일에는 최저가(4993.89)를 기록함
 - 영국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제한령을 발표했으며, 이로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휴업함에 따라 사업주들은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함
 - 이동제한조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 역시 중단되면서 전체적인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 부문) 어느 특정 산업이라 할 것 없이 전체 산업 부문에 있어 생산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
 - (제조업) 자동차, 항공우주 등 영국내 주요 제조산업은 사회적 거리 유지, 공급망 차질, 수요 및 투자의 감소 등과 같은 이유로 최근 제조 공장 가동을 중지함
 - (운송업) 이동제한령으로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운행시간표를 조정하고 필수 인력만 채용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관광업) 거의 전 세계의 여행제한, 항공편 취소, 여행 및 보험사의 신규여행 중단 등으로 관광객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통업) 소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식량이나 일부 소비재를 비축함에 따라 슈퍼마켓 기업은 임시인력 보강을 위해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나, 의류매장이나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 휴업에 들어가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음
 - (문화예술) 사회적 거리유지로 극장, 영화관 등이 영업을 중단하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영화사 역시 신작 출시를 연기하고 있음

코로나 19로 인한 영국 경제 현황 및 전망



자료: KPMG

- (시장구조) 코로나 19 이후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성장에 필요한 기술이 각광받음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한 운송·물류, 제조업, 금융 등의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물류분야의 발전, 3D 프린팅·사물인터넷(IoT)·산업용 로봇공학 등 제조업계의 생산방법 혁신, 머신러닝과 AI를 통한 금융 자동화 등
- (소비트렌드)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최근 재택근무로 인한 소비 및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
 - 기존에도 영국 기업 내 유연한 출퇴근 시간 및 직장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디에서든 업무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트북 수요와 화상회의의 관련 플랫폼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
 - 또한 최근 외출을 자제하는 추세에 따라 소매부문 소비에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였으며, 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소매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한 고객 소통 및 고객 맞춤형 경험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 19 관련 영국정부의 대응 조치

-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영국의 경제 및 산업부문이 전체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영국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함

① 고용유지 지원금(A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되어 집에서 쉴 수밖에 없는 직원을 계속 고용상태로 유지할 경우(퇴사서류 P45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 급여의 80%(한달 최대 £2,500)를 지원함

② 세금납부 지연(Deferring VAT and Income Tax Payments Scheme) 또는 유예

- 2020. 3. 20~6. 30일 기간 중 납부의무가 있는 부가세(VAT)와 관련하여 납부일이 2020/21 과세연도 마지막 날째(2021.4.5.)까지 자동 지연되며, 소득세(Income Tax)와 관련해서는 2020. 7. 31일이 납부 마감일인 경우 2020. 1. 31일까지 납부가 유예되고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향후 납부지연으로 인한 벌금이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영국 국세청(HMRC)에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자금난으로 납부하고 있지 못하거나 향후 그러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 전화하여 납부 유예 또는 분할 상환을 합의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③ 사업세 납부 면제(Business Rates Holiday Scheme) 및 현금지원(Cash Grants Scheme)

- 잉글랜드(England)에 소재하는 소매(Retail), 유흥(Hospitality), 레저(Leisure) 사업체의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사업세(Business Rates)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됨
- 또한 해당 사업체들에게는 별도의 운영자금 £10,000 또는 £25,000가 지급됨

④ 긴급지원 사업대출(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 영국에 소재하는 사업체 중 연간 매출액이 £45,000,000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금의 80%를 정부가 상환보증하는 긴급 특별대출을 첫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함

⑤ 대기업 긴급대출(CCFF,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서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은 대기업에 한해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함

⑥ 보험(Insurance)

- 코로나 19 및 정부의 이동제한정책 영향으로 갑자기 문을 닫은 사업체에 한해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원론적인 원칙으로 이에 대한 정부 및 보험업계 의견은 모두 합의된 상태이나 각 사업체가 기존 가입한 사업보험계약서 약관 등에 코로나 19 사태를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임

2

한-영 양국 간 이슈사항

» 브렉시트에도 안정적인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⁴¹⁾

■ 지난 2019. 8. 21일, 한-영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함

○ 한-영 공동성명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에 대한 지지를 서로 재확인하고 평화 정착, 투자증진 등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고 있음

- (한-영 공동성명 구성조항) ① 양국간 인권,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에 대한 지지 재확인, ② 규범 기반 국제무역체제하 자유무역 증진지지,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지속,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협력 지속, ⑤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협력 강화, ⑥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협력 지속, ⑦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양국관계 강화, ⑧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 금번 채택된 공동성명으로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가치와 제반분야 협력의지를 선언하고, 영국 신정부와 한국 정부 간 우호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 발효될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채택된 한-영 공동성명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사이먼스미스 주한영국대사(Simon Smith, 左)와 조세영 대한민국 외교부 1차관(右)(2019.08.21.)

자료: 주영한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gb-ko/>)

■ 또한 2019. 10. 28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됨

- 한-영 FTA는 최근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한-영 FTA는 양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면 자동적으로 발효됨
 - 브렉시트 이행기간은 2020. 12.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초 예정대로 이행기간이 종료될 경우, 한-영 FTA는 2021. 1. 1일자로 발효됨
 - 그러나 EU와 영국 양측이 이행기간 연장에 합의하여 이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한-영 FTA는 연장된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효됨

✓ 한-영 FTA 협정문 및 양허표 전문 확인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웹사이트(www.fta.go.kr) 접속

✓ 한-영 FTA 활용 및 영국 통관애로 관련 지원 필요시

☞ 관세청 FTA 기업지원(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YES FTA 컨설팅 및 교육) 활용

☞ 신청세관 및 문의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3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2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자료: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3

영국의 수입규제

3-1.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이란?⁴²⁾

✓ 비관세장벽 및 비관세 조치란?

- WTO 출범 및 국가 간 FTA 체결 확대로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의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또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라고 함
- ☞ 비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는 이론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나 실제로는 자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상호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 따라 본고에서는 두 용어를 동일하게 보며 구분지어 사용하지 않음

〈참고〉*용어의 이론적 정의

- 비관세장벽 : **분명하게(sure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
- 비관세조치 : **잠재적으로(potential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

✓ 비관세장벽의 특징

-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개별 국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국가별로 그 종류와 운영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비관세조치의 분류

- 비관세조치는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하여 분류작업이 쉽지 않은 탓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GATT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등의 국제기구에서 정책적·실무적 입장에 따라 각기 분류하고 있음
- 동 보고서에서는 여러 비관세조치 분류기준 가운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준 중 하나인 UNCTAD TRAINS D/B* 자료를 활용함

* UNCTAD TRAINS(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 D/B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WTO(세계무역기구), World Bank(세계은행)가 공동으로 구축한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조치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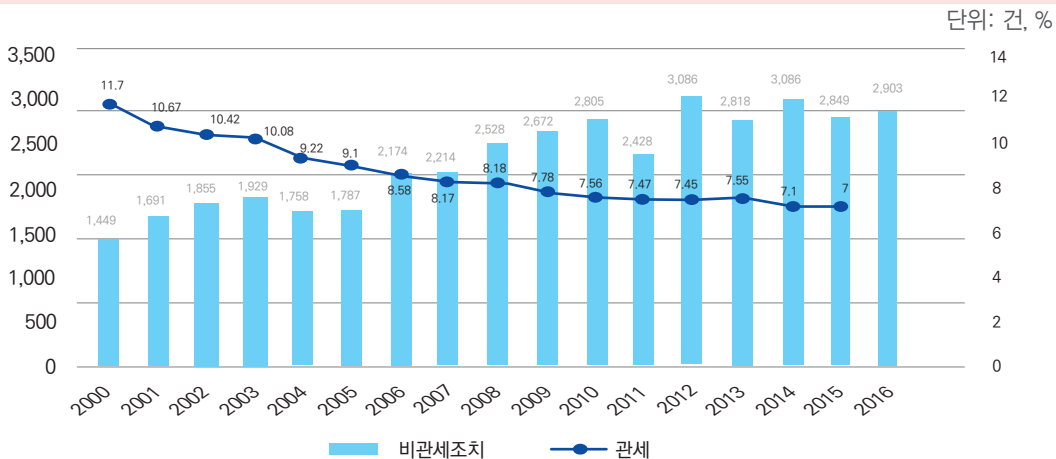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UNCTAD TRAINS

» 세계 비관세조치 동향⁴³⁾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신흥국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

- 최근 각 국의 보호무역조치는 기체결된 WTO 규약, FTA 협정 등으로 이미 인하된 관세율을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탓에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최근 무역환경의 큰 특징은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과 비관세조치 추이



* 주: 비관세조치는 SPS, TBT, 수량제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특별세이프가드의 총 7가지 조치를 포함함(관세할당 및 수출보조금은 '00년대 이후 조치 건수가 미미하여 대상에서 제외)

자료: World bank, WTO,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KIEP

- 이와 같은 비관세조치 및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세계 교역의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교역을 둔화시키고 생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투자 저하, 기술습득을 통한 무역의 장단기 성장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EU(영국)의 비관세조치 개요⁴⁴⁾

■ 영국은 최근까지 EU 회원국으로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를 EU의 규제에 따라 시행해 옴

- EU 회원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어 EU집행위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됨
 - 단, 여러 국가가 모인 EU의 집합체적 성격으로 일부 표준 및 인증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 기준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로 EU 기준과 국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어 對EU 수출기업의 애로가 빈번히 발생함

■ EU는 무역기술장벽, 식품·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가 다소 엄격한 편으로 비관세조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관세조치는 대외무역 증대를 위한 무역장벽 완화, 규정의 미비 등의 이유로 기존 EU 규제에 비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영국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정을 기존 EU 규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추후 완화되는 규정은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EU 및 영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에 해당함*

* '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33%이며, EU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해당

- 우리나라는 '11년 EU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내년 한-영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다양한 비관세조치의 시행으로 FTA 실효성의 위협과 기업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절에서는 최근 EU 및 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한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이 유럽의 비관세장벽을 직면하고 있는 주요 품목 및 유형을 분석하여 우리기업 및 정부가 유럽(영국) 비관세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참고사항

· 본고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UNCTAD NTM D/B를 기반으로 작성됨. UNCTAD NTM D/B는 참여 국가의 제출자료 및 국내법령을 기반으로 정량화된 데이터를 구축하여 통계상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구축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고 법령내용을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과대해석 및 왜곡의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에 앞서 밝힘

☞ 따라서 본고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 건수는 각 국가/산업/유형별로 식별되는 비관세조치 내용의 단순합계로, 비관세조치 건수가 높다고 하여 해당 국가 및 산업에 강력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가 내 비관세조치의 존재여부와 복잡성 및 중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만 의미를 가짐

✓ MAST(Multi-Agency Support Team)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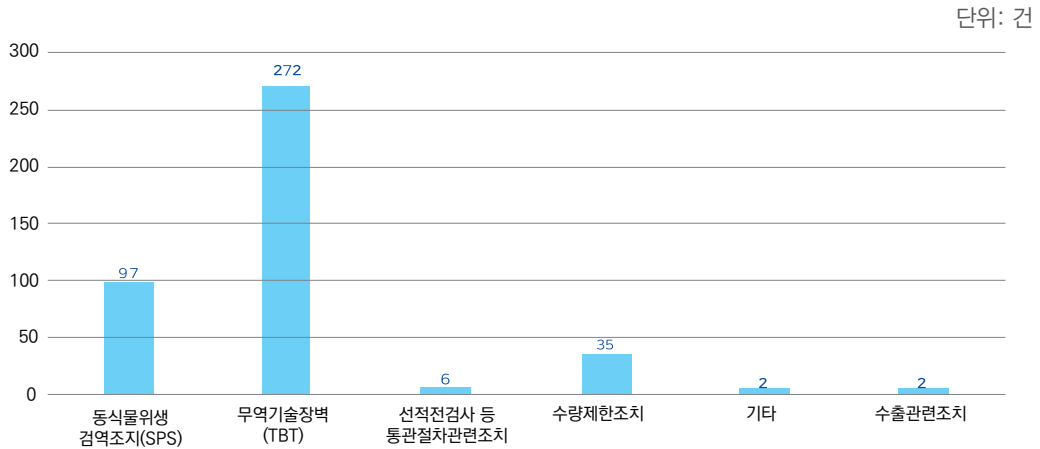
본고에서 활용하는 UNCTAD NTM D/B는 여러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가운데 MAST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동 분류체계는 비관세조치를 크게 A~P까지 16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가장 널리 통용되는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중 하나임

분류 및 코드		내용
수입 관련 조치	기술적 조치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B 무역기술장벽(TBT)
		C 선적전 검사 및 기타 절차
	비기술적 조치	D 조건부 무역보호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E 수량제한조치
		F 가격통제조치
		G 금융조치
		H 경쟁관련조치
		I 무역관련 투자조치
		J 유통제한
		K 판매후 서비스제한
		L 보조금(수출보조금 제외)
		M 정부조달제한
		N 지적재산권
		O 원산지 규정
수출 관련 조치		P 수출관련조치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UNCTAD

▶▶ EU의 對한국 비관세조치 현황⁴⁵⁾

EU의 對한국 비관세조치 적용 현황



주: '수출관련조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입관련조치'에 해당하며, 해당 수치는 전체 국가 및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비관세조치를 수집한 수치임

자료: UNCTAD TRAINS NTM D/B(검색일자 2020.6.16., "in force" 기준)

■ UNCTAD NTM 통계에 따르면, 현재 EU가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주요 비관세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물·식물위생검역조치(SPS), 수량제한조치(QC)로 나타남(검색일자 '20.6.16 기준)

○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EU의 비관세조치 총 414건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역기술장벽(272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동물·식물위생검역조치(97건), 수량제한조치(35건) 순으로 많게 나타남

– 따라서 다음에서는 EU의 對한국 주요 비관세조치인 무역기술장벽(TBT), 동물·식물위생검역조치(SPS), 수량제한조치(QC)를 중심으로 EU의 비관세조치를 살펴보고자 함

▶▶ EU의 무역기술장벽(TBT)⁴⁶⁾

■ 최근 많은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표준·기술규정·인증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부각되고 있음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기술규정 : 적용가능한 행정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표준 :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닌 문서

* 적합성 평가절차 :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하는 절차

- 무역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가 간 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상대국에게는 무역장벽으로 불리하게 작용함

■ 이에 기술규정 및 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원칙과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95년, WTO/TBT 협정이 발효됨

✓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

- 기술규정과 표준 : 기술규정의 통보 및 합리적인 적용시한
- 적합성평가 : 수입상품의 검사, 행정절차 및 수수료의 내국민대우
- 공식질의처 운영 : 타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질의처 운영
- 개도국 우대조항
- 국제표준의 채택 :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
- 분쟁해결

✓ WTO/TBT 협정의 의무

- 무차별원칙(내국민대우)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국가별 차별을 두거나 내국민과 비교하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 국제표준의 채택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국제표준의 채택
- 통보의 의무 :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에 통보해야함 (최소 6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
- 정보답변의 제공 및 질의처 설치

자료: TradeNAVI

■ 앞서 확인한 UNCTA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EU의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총 272건으로 나타남(검색일자 '20.6.16 기준)

- 272건의 TBT는 모두 EU의 개별 회원국들의 무역기술장벽(TBT)이 아닌, EU 공동체 차원에서의 글로벌 무역기술장벽(TBT)에 해당함
 - EU는 회원국 간 경제통합이 점차 진전됨에 따라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개별 회원국 보다는 EU 차원에서의 통합적 기술규제를 주로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간혹 일부 표준·인증의 경우에는 EU 역내국 간 불일치한 경우도 존재하며 이는 역외국 기업의 유럽 진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또한 EU는 회원국 간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 역내 생산자들만 충족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도입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식품·안전분야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여 EU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EU TBT의 주요 적용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우리의 對EU 주력 수출품목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EU TBT 주요 적용 품목은 제84류, 제85류, 제90류, 제73류, 제96류, 제39류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EU의 무역기술장벽(TBT) 주요 적용품목(HS 2단위 기준)

HS 2	품 명	TBT 건수*	수출 순위*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114건	3위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01건	2위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60건	7위
제73류	철강의 제품	47건	12위
제96류	잡품	42건	32위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6건	4위

* 주1: 건수는 류별로 해당하는 TBT 건수를 산출한 것으로 1개의 조치가 여러 류에 해당될 수 있음

* 주2: 수출순위는 '19년 수출금액기준, 한국의 對EU 수출상위품목(HS 2단위)임

자료: UNCTAD TRAINS(검색일자 2020. 6. 16), K-stat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EU TBT는 주로 전기·전자제품,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자의 원칙이 적용되어 EU로 화학, 자동차분야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실제 위 표에서도 우리나라의 EU TBT 주요 적용 품목 중 제96류(잡품)를 제외한 제84류(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 제90류(광학·측정·의료기기), 제73류(철강제품), 제39류(플라스틱) 모두 우리나라의 對EU 상위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우리 정부 및 수출기업은 EU TBT 관련 품목 및 산업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

- 수출기업의 경우 EU TBT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인증 획득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수행하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주요 수출품목과 EU TBT 주요 적용품목이 동일하므로 EU TBT가 완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對EU 및 對영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TBT)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호인정협정, FTA TBT 협정, 조화 등이 있음

(1) 상호인정협정(MRA)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WTO/TBT 협정문에서 적합성 평가란 기술규정 또는 표준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로 정의됨

-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상대 수입국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1단계 협정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상대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인증서도 발급하는 2단계 협정으로 나뉨
- 우리나라는 현재 EU를 포함한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함
 - 이 중 캐나다와는 유일하게 1,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모두 체결

우리나라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협정 체결국	 미국	 캐나다	 EU	 베트남	 칠레
협정단계	1단계	1, 2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체결일자	'05.5월	'01.9월(1단계) '17.12월(2단계)	'11.7월	'06.1월	'08.6월

자료: 국립전파연구원(<https://rra.go.kr/>)

○ 각국과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의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별 시험분야 및 대상품목

MRA 협정	체결국	시험 분야	대 상 품 목
1단계	미국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무선조정기, RFID 등
		EMC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기기 등
	EU	EMC	정보기기, 전동기기, 전기기기 등 제조사(공급자)적합선언(SDoC) 대상품목
	베트남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핸드셋, 무선LAN 등
		EMC	노트북, 서버, 전기기기 등
	칠레	유선, 무선, EMC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미국(FCC) 시험성적서로 시험대체
	캐나다	유선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등
		무선	휴대폰, 중계기, 블루투스 등
		EMC	TV, 모니터, 전기기기 등
2단계	캐나다	무선	비면허 무선기기(와이파이·블루투스이어폰 등), 면허 개인이동 무선기기(휴대폰 등), 면허 일반이동 및 고정용 무선기기(무전기·중계기·디지털스캐너수신기 등), 면허 고정용 마이크로웨이브 무선기기(5G 기지국 장비 등)

* 주: EMC는 EU 전자파 적합성 시험으로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자료: 국립전파연구원(<https://rra.go.kr/>)

○ 한-EU간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에서는 적용 대상을 제조사 적합선언(SDoC) 품목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공급자 또는 제조사 적합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이란 제조업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을 뜻함(ISO/IEC Guide 2)
- 제조사 적합선언(SDoC) 및 유럽의 인증마크인 'CE마크' 취득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은 체결국 간 수출입 기업의 시험·인증 관련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 국내에서의 진행으로 언어장벽을 해소하여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기술장벽(TBT)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님

상호인정협정(MRA) 단계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절차

구분	국내(수출국)	국외(수입국)
1단계	제조업체 (신청인)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발급)	>>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 판매
2단계	제조업체 (신청인)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발급) >> 수입국이 승인한 국내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 판매

*국내시험기관 : 국내 MRA 지정시험기관

자료: 국립전파연구원(<https://rra.go.kr/>)

(2) FTA TBT 협정

- FTA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 철폐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FTA 협정에서 논의되는 TBT 관련 사항은 인증시장의 개방, 인증 및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신규 기술규제 도입, 변경시험의, 기술규제 관련 분쟁해결 방안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체결된 모든 FTA 협정에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담고 있음('20. 6월, 발효 기준)

우리나라의 FTA TBT 협정

구분	상태	FTA 체결국	TBT 관련 장(조항)
1	발효	칠레	제9장 표준관련 조치
2	발효	싱가포르	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부속서 8A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부속서 8B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
3	발효	EFTA	제2.8조 기술규정
4	발효	ASEAN	제14조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5	발효	인도	제2.28조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구분	상태	FTA 체결국	TBT 관련 장(조항)
6	발효	EU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 부록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 부록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7	발효	페루	제7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8	발효	미국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9	발효	터키	제5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10	발효	호주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1	발효	캐나다	제6장 표준관련 조치
12	발효	중국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3	발효	뉴질랜드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4	발효	베트남	제6장 기술무역장벽
15	발효	콜롬비아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6	발효	중미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7	서명	영국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 부록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 부록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주: 서명된 FTA 협정은 현재 협정문이 공개된 협정만 기재

자료: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 한-영 FTA는 현재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 되면 바로 발효될 예정임

■ 한-영 양국간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있는 우리기업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음

- 협정문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 한-영FTA에서 확인 가능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uk/2/>)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0. 개요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등이 양국간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
- 명성 제고 등 기술규정 제·개정 시의 의무 준수, 표준 및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공동 협력 강화, 양국 간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표시 및 라벨링 규제의 교역장애 요소 최소화 등을 포함

1. 기술규정 제·개정시의 의무

-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내(혹은 회원국내) 이해관계자(업계, 단체, 개인 등)는 물론 상대국 이해당사자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규정(한-영 FTA 협정문 제 4.4조 제2항)
- 양국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비공개 과정은 제외)
 - ◆ 이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의견제시(comment) 권리만 포함하고 있는 WTO TBT 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미 FTA TBT 협정문에서도 동일 내용 포함)
- 기술규정의 제·개정시, 상대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기술규정의 제·개정 목적(Objective), 법적 근거(Legal basis), 정당성(Rationale) 등 정보를 제공(한-영 FTA 협정문 제4.4조 제1항다호)
 - ◆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의 채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통상마찰 사전예방 효과 기대)
- 제·개정된 기술규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키 위한 공개된 웹사이트 등 설립 및 상대국 요청시 지체 없이 서면 정보 및 적절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한-영 FTA 협정문 제4.4조 제1항라호)
 - ◆ 우리나라는 TBT 통합포탈정보사이트(www.knowtbt.kr)에서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제·개정 사항 등 TBT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
-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한-영 FTA 협정문 제4.4조 제1항바호)
 - ◆ 60일 기간(WTO/TBT 권고사항) 확보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 “충분한 시간”과 관련하여 WTO/TBT 위원회에서는 이를 60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법에서도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상”으로 규정(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2. 공동 협력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규제대화체(regulatory dialogue)구성 가능
(한-영 FTA 협정문 제4.3조 제1항)
 - 규제대화체의 구성으로 인해 양국간 TBT 정책이슈에서 협력 촉진을 기대
 - ◆ 쟁점 이슈가 있을 때 협의를 위해 관련 규제 기관간에 설치하는 임시적 성격의 대화채널로서 수평적(예: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 혹은 분야별(예: 의약품, 화장품 등) 주제를 다룸
- 양국간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이고 수렴(converging) 혹은 정합(aligning) 가능성을 검토(한-영 FTA 협정문 제4.3조 제2항다호)
 - ◆ WTO TBT 협정에서는 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제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타국 기술규정을 자국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권장(2조 7항)

3. 적합성평가 및 인정(Accreditation)

- 양국은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있음을 인정(한-영 FTA 협정문 제4.6조 제1항)

〈제도적 방안〉

- ① 상호수용에 관한 합의 ②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절차(creditation procedure) ③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governmental designation) ④ 상대국 적합성평가절차결과를 인정(recognition) ⑤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arrangement) ⑥ 공급자적합성 선언(SDoC)의 수용
- 또한, 인정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표준의 사용과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및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등 국제협정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약속(한-영 FTA 협정문 제4.6조 제2항다호)

4. TBT 조정자(Coordinator) 지정

- 양국은 TBT 조정자를 지정하여 TBT 협정의 이행, 행정 사항 협의 TBT 이슈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영 FTA 협정문 제4.10조)
 - ◆ 양국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운영을 의무화해야 하는 정례위원회(TBT Committee)는 설치하지 않는 대신 조정자를 지정(우리: 국가기술표준원, 영국: 국제통상부)하고 필요시 규제대화체(regulatory dialogue),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5. 표시 및 라벨링

- 표시 및 라벨링 규제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 양국간 통상장벽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증(한-영 FTA 협정문 제4.9조)

① 정보제공 목적 외 강제적 라벨요건을 최소화

- 특히 재원확보를 위한(fiscal purpose) 정보표시 등은 교역장애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법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함
- ◆ EU는 “fiscal purpose”를 위한 정보 표시나 라벨의 사례로 제품의 유통채널이나 수입업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시(예: 우리나라 주류의 유통경로별 용도구분 표시제)하였으나, 주류 용도 구분 표시제는 “합법적 목적 수행”을 위한 표시에 해당

② 라벨의 사전승인, 등록, 인증 철폐

- 통관 후 시장 진입 전후로 표시 혹은 라벨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통관 전에 표시 혹은 라벨의 승인, 등록, 인증 절차 요구를 금지키로 합의
- ◆ 통관 시 표시나 라벨에 기재된 사항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제품은 반송처리할 수 있는 수입국의 심사권한은 유지됨

③ 복수언어의 사용

- 한글로 표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타 언어로 병기되거나, 표기되는 내용이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복수언어의 사용을 허용

④ 비영구적, 탈착가능 라벨 허용

- 규제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영구적 혹은 탈착 가능 라벨을 허용하도록 노력키로 합의
- ◆ 표시기재사항의 위·변조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이 어려운 경우는 규제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탈착 가능한 라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전자전기제품 비관세 (한-영 FTA 부속서 2-나, 부록 2-나-1/2/3/4)

0. 개요

- 제품이 양국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또는 전기안전(safety)에 관한 적합성 평가절차는 한-EU FTA 부속서 2-나(전자제품)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함

- ▷ 영국은 EMC, 전기안전 모두, 'SDoC'를 근거한 우리산 제품을 수용
- ▷ 우리는 EMC의 경우, 영국측이 통보한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수용
- ▷ 또한, 전기안전의 경우 (i) 'SDoC' 또는 (ii) '시험성적서에 기초한 SDoC'*를 근거한 영국산 제품을 수용 [(i), (ii) 절차의 선택은 우리측 권한]

- 단,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영국측에 강제인증서(안전인증서)를 요구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목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 발효 후 매 3년마다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양국이 이를 검토
- 양국은 협정 발효 3년 후, 매 5년마다 SDoC 도입의 확대를 통해, 제3자 강제시험을 포함하여 기술 및 행정요건의 점진적 제거 가능성을 검토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 스스로가 시험, 확인한 후 판매하는 방식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전기통신분야 규격을 통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
- IECEE CB Scheme(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ystem for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and Components,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인증제도로써, 통일된 절차와 방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수용

1. 적용범위

-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하여, 양국법이 규율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안전(safety)과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부속서의 적용범위로 규정(부속서 2-나 제1조제2항, 부록 2-나-1 제1항 및 제2항)
 - ◆ 단, 한-EU FTA 협정 부속서 2-나(전기전자제품)의 제4조(경과조치), 제5조(통합 및 요건의 점진적 축소) 및 제6조(예외 및 긴급조치)를 통하여 도입된 요건 또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변경의 효과는 해당 범위에 적용됨
- 양국법과 관련, 영국은 (i) EMC Directive 대상품목, (ii) Low Voltage Directive(저전압지침) 대상품목, (iii) Radio Equipment Directive(유무선 통신기기지침)의 EMC, 전기안전 대상품목을 적용범위로 함
- 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만 적용),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대상품목을 적용범위로 함
 - 우리법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열거하고 있는 체제(positive list)임을 감안, 현재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전기용품에 대한 미래 규제권도 갖고 있음을 확인

2. 적합성 평가 절차

- 영국은 EMC, 전기안전 모두 'SDoC'를 근거한 우리산 제품을 수용(부속서 2-나 제3조, 제4조제1항, 부록 2-나-2 제1항)
 - 우리는 EMC의 경우, 영국측이 우리측에게 통보한 자국 내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수용(예외품목 없음)(부속서 2-나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부록2-나-2 제2항)
 - ◆ 영국측 공급자에 대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공급자 적합성선언서, 시험성적서 사본, 제품의 일반적 설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리는 전기안전의 경우, (i) 'SDoC' 또는 (ii) '시험성적서에 기초한 SDoC*'를 근거한 영국산 제품을 수용하되, (i)과 (ii) 절차의 선택권은 우리측에 부여(부속서 2-나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부록 2-나-2 제2항)
 - * 1. 우리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영국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ICECC CB Scheme(국제전기 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용, 2. 검토를 위하여 적합성선언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 일반적인 제품설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 가능
- 단,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영국측에 강제인증서(안전인증서)를 요구(부속서 2-나 제4조제3항, 부록 2-나-3)
- 안전인증서는 (i) 우리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수용에 대한 MOU를 체결한 영국내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 또는 (ii) IECCE CB Scheme에 따른 CB 시험소의 시험성적서(국가인증기관의 인증필요)를 바탕으로 우리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

3. 전기안전인증 대상품목 축소

- 전기안전인증 대상 품목을 축소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건수 및 시장판매제품 불량률 조사 등에 근거한 위해도 평가를 달리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 발효 후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양국이 이를 검토(부속서 2-나 제4조제3항)
- 위해도 평가 시 해당 제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주의를 갖고 사용되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함
- 위해도 평가 결과, 해당 품목에 'SDoC' 또는 '시험성적서에 기초한 SDoC'를 적용할 경우 인간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이 증명되면 안전인증제도를 계속 유지 가능(부속서 2-나 제4조제3항)

4.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확대

- 양국은 협정 발효 3년 후, 매 5년마다 SDoC 도입의 확대를 통해, 제3자 강제시험을 포함하여 기술·행정요건의 점진적 제거 가능성을 검토(부속서 2-나 제5조제2항)

5 예외 및 긴급조치

- 양국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자 시험 또는 인증 도입 등 예외조치 가능(부속서 2-나 제6조제1항)
 - ◆ 요건 : (a) 인간의 건강 및 안전보호에 긴급한 이유 존재, (b) 조치의 도입 이유가 기술적, 과학적 정보에 기반, (c) 요건이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고, (d) 그러한 필요성이 협정 발효 시에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도입가능
- 예외조치를 도입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며, 요건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가능한 최대한도로 따라야 하며, 채택 후 매 3년마다 검토되어야 함
- 해당 제품이 인간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품회수(recall)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나 그러한 조치는 상대방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통보(부속서 2-나 제6조제2항)

6. 이행 및 협력

- 규제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증진하고 시험성적서 상호수용을 위한 MOU 유지·확대를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부속서 2-나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 부속서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적합성 평가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인증기관이 (i)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영국 시험소와 MOU를 체결하거나 (ii) IEC 기준과 다른 기술규정을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상품목에 대해 IECEE CB Scheme 하의 인정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이어야 함(부속서 2-나 제7조제3항)
- 기존 기술규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술규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상대방에 통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적절한 입장을 고려(부속서 2-나 제7조제4항)

〈참고〉 전기안전 인증 대상품목(36개)

연번	자율안전확인제도 예외품목	영문명
1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Cables and cord sets
2	스위치	Switches
3	기기보호용 차단기	Interceptor for electrical appliances
4	전자개폐기	Magnetic switches
5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Capacitors and noise filters
6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Installation accessories and connection devices
7	퓨즈 및 퓨즈홀더	Fuses and fuse holders, thermal-links
8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Power transformers and voltage regulators
9	전기청소기	Vacuum cleaners, floor treatment machines, steam cleaners, surface-cleaning appliances
10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Electric irons and press
11	주방용 전열기구	Heating appliances for kitchen
12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Washing machines and spin extractors
13	모발관리기	Appliances for hair care
14	주방용 전동기기	Motor-operated appliances for kitchen
15	전기액체가열기기	Electric appliances for heating liquids
16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Electric blankets and mats, electric beds
17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Cauterizing machines and foot warmers
18	전기온수기	Storage water heaters and instantaneous water heaters
19	전기냉장·냉동기기	Electric refrigerators and ice makers
20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s(using the frequencies of 300MHz-30GHz range)
21	전기충전기	Battery chargers
22	전기건조기	Electric driers
23	전열기구	Heaters
24	전기마사지기	Massage appliances
25	냉방기	Air-conditioners and dehumidifiers
26	전격살충기	Insect killing or repelling devices
27	팬, 레인지후드	Electric fans, range hoods
28	화장실용 전기기기	Electric appliances for toilets and electro-motive inhalers
29	가습기	Humidifiers
30	전동공구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31	직류전원장치	DC power supplies(with the rated capacity of at most 1kVA, including those used in combination with AC power)
32*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PC를 포함)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충전전압 4.4V 이상의 리튬 이차단전지로 한정	Cell(Secondary lithium cells with more than 700Wh/L volumetric energy density and 4.4V charging voltage that are used in smart phones, laptops and tablet PCs)
33	램프홀더(소켓)	Lamp holders
34	일반조명기구	Luminaires(general purpose luminaires)
35	안정기(램프제어장치)	Ballaster(lamps, control gears)
36	안정기내장형램프	Self ballasted lamps

* 연번 32번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자동차 비관세 (한-영 FTA 부속서 2-다, 부록 2-다-1/2/3/4)

0. 개요

■ 안전·환경 기준

- 한-영 양국은 각각의 국내기준과 유사한 UN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uncil for Europe) 규정과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한-영 FTA 체결 이전에 한-EU FTA 부속서 2-다에 도입된 모든 변경에 한해 한-영 FTA 부속서 2-다에도 적용됨

- 상응하는 UN ECE 규정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국내기준은 협정 발효일부터 해당 UN CEC 또는 GTR 규정과 조화

■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 자동차 작업반 설치

- 자동차 국제표준 제정기구에서의 협력과 자동차 비관세 합의 내용의 이행 감독

■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

- UN ECE 규정 : 안전, 환경, 에너지 및 도난방지 요건에 관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단일 표준 확립을 위한 58 협정(56개 체약국)에 근거한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우리나라는 2004. 11월 가입)
- GTR 규정 :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세계기술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한 98협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동차 기술 규정 (우리나라는 2000. 11월 가입)
-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오작동 여부를 감지하고 이를 차내 계기판의 정비 지시등(engine check)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1. 적용대상

- 통일 상품명 부호체계(HS)의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84류(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 제87장(일반 차량) 및 제90장(조명기기) 상의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과 그 부품에 적용
- 단, 트랙터, 설상차, 골프카트, 건설기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규정의 수렴

■ WP.29를 자동차 및 부품 관련 국제표준 제정기구로 인정

- WP.29를 표준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동 작업반에서 제정된 새 규정을 지체 없이 채택하기 위해 협력 (부속서 2-다 제2조제2항)

-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 ECE)의 내륙교통위원회(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의 자동차 기술표준의 조화와 개발을 담당하는 작업반으로 58협정과 98협정을 관리
- **58 협정(1958 Agreement)** : 안전, 환경, 에너지 및 도난방지 요건 등에 관한 자동차와 부품의 단일 표준 확립을 목적으로 UN 유럽경제이사회 주도로 체결된 협정
 - 58협정은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을 규정하여 체약국이 UN ECE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체약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체약국이 모두 승인한 규정에 한함)
- **98 협정(1998 Agreement)** : 규정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의 세계 기술규정(Global Technical Regulations) 제정에의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체결
 - 98협정의 당사국은 세계기술규정(GTR)을 채택하거나 또는 GTR을 채택하지 않고 동 규정을 준수한 제품을 인정할 수 있음

3. 시장 접근

- (국제기준 인정) 각 당사국이 국내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한 UN ECE 규정과 GTR 규정에 따라 제작된 차량에 대해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우리 안전기준 : 동등성 인정기준 총 34개 기준이 이에 해당(부속서 2-다 제3조)
 - 우리 환경기준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자동차 소음 관련 ECE 규정 인정
 - 또한, 휘발유 차량의 OBD(On-Board Diagnostics) 관련, Euro 6 OBD 기준 만족 시 우리 OBD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영국 기준 : 대부분의 유럽기준(EEC 기준)이 이에 해당(부속서 2-다 제3조)
 - 영국은 거의 모든 UN ECE 기준을 채택
- (국제기준과의 조화) 각 당사국의 국내기준에 상응하는 UN ECE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동 국내기준을 해당 국제기준과 조화(부속서 2-다 제3조)
 - 우리 기준 : 29개 기준이 이에 해당
 - 영국 기준 : 1개 기준(상용차 외부돌출물기준)이 이에 해당
- **상용자동차 외부돌출물기준** : 충돌시 상용자동차의 운전석 앞부분(앞범퍼, 앞바퀴)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준

- (국내고유기준 준수) 여타 UN ECE 또는 GTR 규정과 유사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국내 기준을 준수
- 인정기준과 조화기준 이외의 “여타 국내기준”과 관련하여 통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부속서 2-다 제3조)
 - “여타 국내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당국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
- 협정 발효 후 매 3년마다 국제적 또는 각 당사국 내에서 진행된 규정의 발전을 고려하여 인정기준과 조화대상기준 리스트를 검토(부속서 2-다 제3조)
 - 인정기준 또는 조화대상기준 리스트의 변경은 무역위원회에서 결정
 - 추후 조화가 완료된 기준은 해당 국제기준 채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동 조화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은 해당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4. 규정 수렴의 강화

- UN ECE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경우와 새로운 UN ECE 또는 GTR 규정의 제정이 임박한 경우, 동 기준이 규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부속서 2-다 제4조)
 - 단, 특정 UN ECE 혹은 GTR 규정이 도로안전, 환경, 공중보건보호에 부적합하다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 가능
- 새로운 UN ECE 혹은 GTR 규정이 채택된 경우, 동 기준들을 이정하거나 해당 국내기준과 조화(부속서 2-다 제4조)
- UN ECE 기준과 다른 국내기준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동 기준 유지 필요성을 협정 발효 후 매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타방 당사국에 통보 및 공표(부속서 2-다 제4조)
- UN ECE 또는 GTR 기준이 없거나 적어도 한 당사국이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국제기준 개발가능성에 대해 협의(부속서 2-다 제4조)
 - 국제기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각 당사국이 서로 다른 기준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기준의 근접화(approximation) 가능성에 대해 협의

5. 최혜국 대우

- 국내조세 및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를 부여(부속서 2-다 제5조)

6.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제품

- 신기술 혹은 신개념이 건강, 안전, 혹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기술 혹은 신개념을 적용한 제품의 시장접근의 거부나 지연 불가(부속서 2-다 제6조)
- 시장접근을 거부하거나 리콜을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함께 타방 당사국 관련 업체에 결정 내용을 통보

7. 무역제한 조치의 금지

- 자동차 부속서에 따른 시장접근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조치를 자제(부속서 2-다 제7조)
- 단, 도로교통, 공중건강 혹은 환경보호와 기만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적 혹은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가능

8. 규정의 적용

- 동등성을 인정한 UN ECE 기준 및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완료된 기준에 대한 EU의 형식승인서는 동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기준 적합성을 추정(부속서 2-다 제8조제1항)
- 단, 적합성이 추정되더라도 당사국이 자기인증제 또는 형식승인제에 따른 적합성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 협정을 통해 인정한 UN ECE 기준과 UN ECE 기준과 조화된 국내기준은 해당 UN ECE 기준을 채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우리 기준에의 적합성 추정이 가능하나, 적합성 여부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최종 판단
-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무작위로 제품을 선정하여 국내기준 혹은 자동차 부속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인정기준 또는 조화가 완료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의 경우 해당 제품을 리콜(부속서 2-다 제8조제2항)
- 형식승인제의 경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생산 적합성 검사절차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해당 제품이 국내기준 · 인정기준 · 조화가 완료된 기준에 따른 규정 및 요건들을 위반한 경우, 형식승인 취소 가능(부속서 2-다 제8조제3항)
-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급박하고 불가피한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시장접근 거부 또는 리콜 가능(부속서 2-다 제8조제4항)
- 단, 당사국과 관련 공급자에게 그 목적과 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

· 완성차 인증제도

- 자기인증제(self-certification) :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차량을 판매 하되, 정부는 사후적합성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형식승인제(type-approval) : 규제 당국이 제작차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는 제도
 - ▶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은 자기인증제를,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제를 채택
 - ▶ 영국의 경우 형식승인제를 채택

9. 자동차와 부품에 관한 작업반

■ 자동차 부속서 적용에 관한 문제 협의(부속서 2-다 제9조제1항)

- 자동차와 부품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접근 문제를 발생 이전에 검토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의
 - 양 당사국은 동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방사국에게 정보를 제공
 -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

■ 임무

- WP.29에서의 협력 준비
- 조화작업의 이행 논의, 통상문제 발생 시 협의(consultation)를 위한 forum 제공, 인정기준 및 조화대상 기준 리스트의 변경을 위한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의 결정 준비
- 각 당사국의 고유기준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 논의
- 신기술 · 신개념 도입 및 예외적인 경우의 시장접근 거부 및 리콜 통보 논의
- 병행수입 차량에 대한 기술규정의 적용 문제를 협의하고 적절한 경우에 권고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와 배출가스 관련 과도조치의 이행

- 자동차 병행수입(parallel import) : 자동차 제작자와 공식 공급계약(dealership contract)에 의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행위

10. 분쟁해결절차

■ 신속 분쟁해결절차 도입(부속서 2-다 제10조)

-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 신청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보다 신속한 절차 도입
- 협의 개최 시부터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 제출까지의 소요기간을 160일(일반절차)에서 100일로 단축
 - 협의기간 : 협의 요청 후 30일 → 15일
 - 중간보고서 제출 기간 : 패널 설치 후 90일 → 60일
 -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 : 패널 설치 후 120일 → 75일
- 패널 판정 결과, 자동차 관련 협정 위반조치의 시정에 국회의 입법조치(법률개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도모
 - 보통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특혜관세 이전 관세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조정
- 신속분쟁해결절차의 특정 규정의 적용 배제 합의 가능

〈참고〉 인정기준 리스트

대상		요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Occupant crash protection (충돌시 승객보호)	Frontal(정면)	UNECE Reg. 94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Side(측면)	UNECE Reg. 95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Steering control rearward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UNECE Reg. 12	자동차안전기준 제89조 제1항제2호
Impact protection for the driver from the steering control system (조향장치 충격흡수)		UNECE Reg. 12	자동차안전기준 제89조 제1항제1호
Seating system (좌석 및 그 잠금장치)		UNECE Reg. 17	자동차안전기준 제97조
Head restraints (머리지지대 강도)		UNECE Reg. 17 UNECE Reg. 25 GTR 7	자동차안전기준 제26조, 제99조
Door locks and door retention components (문열림방지장치)		UNECE Reg. 11 GTR 1	자동차안전기준 제104조 제2항
Instrument panel impact (계기판넬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제88조
Seat back impact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제98조
Armrest impact (팔걸이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제100조
Sun visor impact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UNECE Reg. 21	자동차안전기준 제101조
Inside rear view mirror impact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UNECE Reg. 46	자동차안전기준 제108조
Towing hook (견인장치)		77/389/EEC	자동차안전기준 제20조 제1호, 제2호, 제4호
Rear under-run protection (후부안전판 강도)		UNECE Reg. 58	자동차안전기준 제19조 제4항, 제96조
Lighting and signalling (등화장치)	Installation(설치기준)	UNECE Reg. 48	자동차안전기준 제38조~제45조, 제47조
	Head lamp(전조등)	UNECE Reg. 1, 2, 5, 8, 20, 31, 37, 98, 99, 112, 113, 123	자동차안전기준 제38조, 제48조 제3항, 제106조 제1호
	Front fog lamp(앞면안개등)	UNECE Reg. 19	자동차안전기준 제38조의 2 제1항, 제106조 제2호
	Backup lamp(후퇴등)	UNECE Reg. 23	자동차안전기준 제39조, 제106조 제3호
	Clearance lamp(차폭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제40조, 제106조 4호
	Registration plate lamp(번호등)	UNECE Reg. 4	자동차안전기준 제41조, 제106조 5호
	Tail lamp(후미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제42조, 제106조 6호

대상		요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Stop lamp(제동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제43조 제1항, 제106조 제7호
	Centre high mounted stop lamp(보조제동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제43조 제2항~제3항, 제106조 제8호
Lighting and signalling (등화장치)	Turn signal(방향지시등)	UNECE Reg. 6	자동차안전기준 제44조, 제106조 제9호
	Auxiliary turn signal (보조방향지시등)	UNECE Reg. 7	자동차안전기준 제44조, 제106조 제10호
	Rear fog lamp (뒷면안개등)	UNECE Reg. 38	자동차안전기준 제38조의 2 제2항, 제106조 제2호
	Retro-reflection devices (후부 반사지 또는 반사판)	UNECE Reg. 3, UNECE Reg. 70	자동차안전기준 제49조 제1항~제2항, 제107조
Driver's visibility (운전자의 시계범위)		UNECE Reg. 46	자동차안전기준 제50조, 제94조
Engine Power (원동기 출력)		UNECE Reg. 85	자동차안전기준 제11조 제1항제2호, 제111조
Device for driver's visibility (시계확보장치)	Windshield wiping system (창닢이거)	78/318/EEC	자동차안전기준 제51조 제2항, 제109조 제1호
	Defrosting system (서리제거장치)	78/317/EEC	자동차안전기준 제109조 제2호
	Defogging system (안개제거장치)	78/317/EEC	자동차안전기준 제109조 제3호
	Windshield washing system (세정액분사장치)	78/318/EEC	자동차안전기준 제109조 제4호
Passenger car brake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H	자동차안전기준 제15조, 제90조 제1호
Brake system except passenger and trailer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제15조, 제90조 제2호
Trailer brake system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제15조, 제90조 제3호
Anti-lock brake system, except trailer (바퀴잠금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제15조, 제90조 제4호
Trailer anti-lock brake system (바퀴잠금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ECE Reg. 13	자동차안전기준 제15조, 제90조 제5호
Steering effort(조향성능)		UNECE Reg. 79	자동차안전기준 제14조, 제89조 제2항
Speed limiter(최고속도제한장치)		UNECE Reg. 89	자동차안전기준 제110조의 2

대상		요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Speedmeter(속도계)		UNECE Reg. 39	자동차안전기준 제110조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장해 방지장치)		UNECE Reg. 10	자동차안전기준 제110조의 2
Fuel leakage in collision (충돌시 연료누출방지)		UNECE Reg. 34 (EC to check), 94, 95	자동차안전기준 제91조
Bumper impact(범퍼 충격흡수)		UNECE Reg. 42	자동차안전기준 제93조
Seat belt assembly anchorages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UNECE Reg. 14, UNECE Reg. 16	자동차안전기준 제27조 제1항~제5항, 제103조 제1항~제3항
Child seat anchorage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UNECE Reg. 14	자동차안전기준 제27조의 2, 제103조의 2
Horn noise, stationary noise and silencer for vehicles (4 wheels) (소음방지장치 및 경음기)		UNECE Reg. 28 UNECE Reg. 51	자동차안전기준 제35조, 제5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Emission and noise(except the passer-by noise of 3 or 4 wheels) for Moto cycles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3륜 이상 이륜차의 가속주행소음제외))		UNECE Reg. 40 UNECE Reg. 41 UNECE Reg. 47 Directives 2002/51/EC, 2003/77/EC, 97/24/EC Chapters 5, 9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Emission Diesel (incl. OBD)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OBD 포함))	Below 3.5t vehicle (3.5톤 이하)	UNECE Reg. 83 UNECE Reg. 24, Regulation(EC) 692/2008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Over 3.5t vehicle (3.5톤 초과)	UNECE Reg. 49, Regulation(EC) 692/2008	
Tyres (타이어)		UNECE Reg. 30, 54, 75, 106, 117, 108, 109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9조

〈참고〉 조화기준 리스트 (조화완료, '16.6.30)

대 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응하는UN ECE 규정
Maximum Stable Inclination Angle (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안전기준 제8조	UNECE 107
Minimum Turning Radius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안전기준 제9조	UNECE 107
Running Gear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 제12조	UNECE 30, 54
Controls and Displays (조종장치 등)	자동차안전기준 제13조	UNECE 121
Frame and Body (차대 및 차체)	자동차안전기준 제19조	UNECE 58, 73
Coupling Device (연결장치)	자동차안전기준 제20조 제3호, 제5호	UNECE 55
Theft Protection (도난방지장치)	자동차안전기준 제22조	UNECE 18
Riding Accommodation (승차장치)	자동차안전기준 제23조	UNECE 107
Driver's Seat (운전자의 좌석)	자동차안전기준 제24조	UNECE 107
Passenger Seat (승객좌석의 규격)	자동차안전기준 제25조	UNECE 107
Seat Belt (좌석 안전띠장치 등)	자동차안전기준 제27조	UNECE 16
Standing Space (입석)	자동차안전기준 제28조	UNECE 107
Entrance (승강구)	자동차안전기준 제29조	UNECE 107
Emergency Exit (비상구)	자동차안전기준 제30조	UNECE 107
Aisle (통로)	자동차안전기준 제31조	UNECE 107
Safety Glazing (창유리 등)	자동차안전기준 제34조	UNECE 43, GTR 6
Hazard Warning Signal Lamp (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안전기준 제45조	UNECE 48
Speedometer & Odometer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안전기준 제54조	UNECE 39
Fire Extinguisher (소화설비)	자동차안전기준 제57조	UNECE 36

대 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응하는UN ECE 규정
Running Gear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 제64조	UNECE 75
Service Brake System (제동장치)	자동차안전기준 제67조	UNECE 78, GTR 3
Head Lamp (전조등)	자동차안전기준 제75조	UNECE 53, 56, 57, 72, 74, 82
Registration Plate Lamp (번호등)	자동차안전기준 제76조	UNECE 50, 53
Tail Lamp (후미등)	자동차안전기준 제77조	UNECE 50, 53
Stop Lamp (제동등)	자동차안전기준 제78조	UNECE 50, 53
Turn Signal Lamp (방향지시등)	자동차안전기준 제79조	UNECE 50, 53
Rear Reflex Reflector (후부반사기)	자동차안전기준 제80조	UNECE 3, 53
Rear view Mirror (후사경)	자동차안전기준 제84조	UNECE 81
Speedometer (속도계)	자동차안전기준 제85조	UNECE 39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한-영 FTA 부속서 2-라)

0. 개요

- 한-영 양측의 보건의료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과 접근 촉진, 양자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한-EU FTA 수준에서 합의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 국제관행에 부합한 상대방의 적합성 평가 수용 요청을 고려하는 등 양자 간 규제협력 강화
-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 및 공급업체의 윤리적 관행 제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설치

1. 일반 규정 (부속서 2-라 제1조)

- 양측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한-영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 존중, 혁신의 중요성,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 규정
 - 양측이 공유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님
- 구체적으로 다음 원칙에 대한 중요성 확인
 -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
 -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혁신에 대한 유인
 -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한 의약품·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접근 촉진
 -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의 국제적 관행 개발 협력

2. 혁신에의 접근 (부속서 2-라 제2조)

- 동 조항은 양측이 의약품·의료기기 급여와 가격산정을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
- 의약품·의료기기의 급여와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절차·기준이 투명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일 것을 보장
 - 동 규정은 특정 가격 하에서의 급여 의무 부과 또는 가격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음
 - 급여나 가격결정은 객관적이고 명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에 근거하며, 동 기준은 “지침”, “공고”, 또는 “고려사항” 등의 형태를 취함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 협상 지침」 등을 통해 이미 가능
- 특허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치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는 급여액(가격)에 있어 적절히 인정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 협상 지침」 등을 통해 이미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비교 제품보다 높은 가격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 2)상 이미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 최초 가격 설정 이후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증거를 기초로 더 높은 가격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 이미 가능
- 안전성·유효성·품질·혜택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추가 적응증에 대한 급여 및 가격 조정 신청 허용
 - 현행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 이미 가능
-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조정을 할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
 -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가능

3. 투명성 (부속서 2-라 제3조)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정·절차 및 이행지침(이하 “규칙”)의 신속한 공개
- 제정 또는 개정되는 “규칙”을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가능
-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제시된 중요한 의견에 대한 서면처리 및 개정사항 설명
 -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가능
-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칙”의 최종 공표일과 발효일간 합리적 시간 설정
-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및 가격산정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 보장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신청을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처리하며, 제출된 정보가 미흡할 경우 보완 허용
 - 현행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1조의 2)상 이미 가능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련된 모든 규정·기준 등을 합리적이고 지정된 시간 내에 신청자에게 공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경제성 평가 지침」 및 「약가 협상 지침」 등을 통해 이미 가능

- 의약품 · 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 부여
 - 현행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및 제12조)상 이미 가능
- 의약품 · 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 결정의 근거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권고 · 결정에서 인용된 전문가 의견이나 학술연구에 대한 인용 포함)하며, 특히 보험등재 도는 약가 인상 거절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기준을 언급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공
 - 현행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1조의 2)상 이미 가능
 - 약가 협상 사항은 제외(제약회사와 보험공단이 당사자이므로 해당 없음)
- 권고 ·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 준사법적 또는 독립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가격과 급여에 대한 결정을 전달하는 시점에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 및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지
 - 가격산정과 급여 결정을 다룰 수 있는 사법적 절차로서 행정소송 제도는 이미 마련
- 혁신 및 복제 의약품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가격산정과 급여 관련 국가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공
- 의약품 · 의료기기 가격산정과 급여 관련 중앙기구 명단의 공개
 - 관련 중앙기구인 가격산정 · 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

4. 윤리적 영업 관행 (부속서 2-라 제4조)

-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자가 보건의료 전문가 · 기관에 부당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벌칙과 절차를 채택 · 유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시행 중
-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자가 행한 부적절한 유인행위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금지 경제개발협력기구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상기
- 한국은 1997. 12월, 상기 경제협력기구(OECD) 협약을 서명하였으며, 1999. 1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

5. 규제 협력 (부속서 2-라 제5조)

- 세계보건기구(WHO), OECD 등 국제기구가 개발한 의약품 ·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조항, 관행 그리고 지침을 적절하게 고려

- 적합성 평가가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 및 비임상 시험관리기준(GLP)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양국의 해당 관행이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동 평가를 수용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고려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 및 지원, 관련 사항 논의 및 상호 이해, 협력 증진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실무그룹 설치
 -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이상 회합

화학물질 비관세 (한-영 FTA 부속서 2-마)

0. 개요

- 한-영 양국간 정책 불균형 및 무역장벽 해소, 화학물질 규제 관련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매커니즘 확립
 - 화학물질 비관세 관련 사항을 “한-영 FTA”에 포함시킴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특히 화학물질 분야 협력 증진과 양측 기업들의 애로사항 논의 체계 확립을 위해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1. 목적과 원칙

- 개방성, 비차별주의, 투명성의 원칙에 따른 경쟁적 시장 조건 확립
- 호혜적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높은 수준의 공중보건과 환경보호
- 물질 위해성 평가 관련 대체 방법의 장려와 동물실험 축소
- 적절한 규제 매커니즘의 이행과 비밀정보 보호
- 국제 화학물질 관리전략(SAICM)의 이행에 기여
- 화학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우수 사례(best practice)의 개발과 증진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유엔환경개발계획(UNEP)에 의해 제기되어 '06년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에서 채택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원칙과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원칙 실행계획을 규정한 포괄적 추진 전략

2. 협력 분야

- 화학물질 분야에서의 무역 원활화와 증진 위해 아래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 화학물질 관련 법, 규정 및 조치의 투명성 확보
 -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규제와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적정 절차 제공
 - 법률의 채택 및 이행, 위험성 평가 및 사업비밀정보의 등록 · 인증 · 신고 · 승인 관련 우수 사례의 적용
 -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관련, 우수실험실 운영원칙(GLP, Good Laboratory Practice)과 실험지침(Test Guidelines) 분야에서의 협력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화학물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 및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 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 **실험지침(Test Guidelines)** : 화학물질,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시험조건 및 시험절차 등에 대한 지침

3. 화학물질 규제 관련 대화 매커니즘 확립

-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 양자 대화 매커니즘 확립
 - 화학물질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문제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합의
- 화학물질 분야 협력 증진과 규제 관련 대화를 위한 작업반 설치
 -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에 한 차례 개최

자료: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9.8)

» EU의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⁴⁷⁾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란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함

- (WTO SPS 협정) SPS 조치가 국가간 교역의 부당한 무역장벽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정으로,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SPS 조치의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의무를 가짐

✓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관한 협정

- (협상배경) 그간 각국의 동·식물 관련 규제는 GATT 제20조(b)*에 따라 GATT 규범의 예외로 취급되어 왔으나, UR 협상결과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동식물위생관련 제도가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이 제기

* <GATT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조치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협정문구성)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 (주요내용)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제2조), 조화(제3조), 동등성(제4조), 위험평가(제5조), 투명성(제7조), 분쟁해결(제11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제11조),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제10조, 제14조)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 SPS 협정) 협정문(영문 및 국문) 전문 확인 링크 :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11

자료: 외교부 웹사이트(<http://www.mofa.go.kr/>)

■ 앞서 확인한 UNCTA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EU의 SPS 조치 건수는 총 97건으로 나타남(검색일자 20.6.16 기준)

○ 97건의 SPS는 모두 EU의 개별 회원국들의 동식물위생검역(SPS)조치가 아닌, EU 공동체 차원에서의 글로벌 SPS에 해당함

– EU 회원국 간 경제통합이 점차 진전되면서 SPS 조치 또한 EU 차원에서의 통합적 규제로 시행되는 편이며, 해당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입국에게 적용됨

■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EU의 SPS 조치 주요 품목은 제15류, 제35류, 제17류, 제12류, 제07류, 제16류, 제03류 등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품목은 60건을 차지한 제15류(동·식물성 지방)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제35류(단백질) 54건, 제17류(당류·설탕과자) 42건 등으로 나타남

EU의 對한 SPS 주요 적용품목(HS 2단위 기준)

HS 2	품 명	SPS 건수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60건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54건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42건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38건
제0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37건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37건
제0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34건

주: 건수는 류별로 해당하는 SPS 건수를 산출한 것으로 1개의 조치가 여러 류에 해당될 수 있음

자료: UNCTAD TRAINS(검색일자 2020. 6. 16), K-stat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CE 인증 마크



- CE 인증마크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통합시키고 해당 상품이 EU 공동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임

○ CE 마크는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ne'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함

자료: ISO 인증경영지원센터

- 처음에 사용된 용어는 'EC 마크'였으며 1993년 7월 22일 유럽공동체 이사회에서 93/68/EEC 지침에 따라 'CE marking'으로 공식 교체됨
- CE 마크는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의 경우 CE인증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위반시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인증의 장점) CE 마킹은 유럽시장에서 일종의 무역여권에 해당함
 - CE 인증시, 생산자가 유럽경제지역(EEA) 30여개국에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설계 및 제조시 유럽 공통 요구사항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별로 상이한 국가규제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제조업체와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표준 요구사항을 따른 제품은 안전하고 이로 인한 손해, 책임, 보상 등의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장점을 가짐

✓ CE 인증 적용국가

1. EEA(유럽경제지역) 28개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2.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3개 회원국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CE 인증 대상품목 및 지침

No	분류	대상품목	관련규격 및 지침	적용모듈
1	기계류(MD)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2006/42/EC	A,B+C
2	저전압기기(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V - 1000V, DC75V-1500V 의 전기 제품, 가정용 소켓 콘센트, 가정용 조명기구, 케이블 등	2006/95/EC 2014/35/EU	A,Aa
3	전자파적합성(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전기, 전자 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TV, 라디오, 컴퓨터 등	89/336/EEC 2004/108/EC 2014/30/EU	A,B+C A,B+C
4	의료기기(MDD) Medical Device Directive	이식용 의료기기를 제외한 각종 의료 용품 및 장치	93/42/EEC (2000/70/EC)	B+D,B+F,H
5	능동삽입용 의료기기(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인공기관, (인슐린펌프 등)	93/68/EEC 90/385/EEC	H,B+D,B+F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진단 · 예방 · 검진용기기, 장치 등 (혈액검사기 등)	98/79/EC	B+C,B+D,H
7	승강기(LD) Lifts Directive	승강기	95/16/EC 2014/33/EU	B+C,B+D,H
8	방폭기기(ATEX)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제품	94/9/EC 2014/34/EU	A,B+C,B+D / B+E,B+F,G
9	완구의 안전(TD) Toys Directive	어린이완구(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등)	88/378/EEC 2009/48/EC	A,Aa,B+C
10	단순 압력용기(SPVD)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87/404/EEC 2014/29/EU	B+C,B+F
11	가스기구 GAS APPLIANCES DIRECTIVE	가정용 가스기구	90/396/EEC 2009/142/EEC	B+C,B+D,G / B+E,B+F
12	통신단말기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 무선통신 단말기	1999/5/EC 2014/53/EU	A,H 및 부속서 IV 참고
13	비자동 저울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90/384/EEC 2014/31/EU	B+D,B+F,G
14	개인보호장비(PP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개인보호장구	89/686/EEC	A,B+C / B+D,B+E
15	온수 보일러 Hot-water Boilers Directive	유류 및 가스 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2/42/EEC	B+C,B+D / B+E

No	분류	대상품목	관련규격 및 지침	적용모듈
16	건축 자재(CPD)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등 건축용 제품	89/106/EEC (EU) NO 305/2011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17	냉장고 및 냉동고 Efficiency of Refrigerators & Freezers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6/57/EC	A
18	압력기기(PED)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0.5bar 이상의 단순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기기	97/23/EC 2014/68/EU	압력기기의 등급 (category)에 따라 모두 적용
19	민수용 폭약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군사용을 제외한 민간용 폭약 등	93/15/EEC 2014/28/EU	B+C,B+D,B+E / B+F,G
20	레저용 선박(RCD)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소형선박 (선체길이 2.5m~24m)	94/25/EC 2013/53/EU	B+C,B+D / B+F,G,H
21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	물 · 가스 · 에너지 미터기, 택시요금 미터기 등 계량도구, 측정도구	2004/22/EC 2014/32/EU	B+C,B+D,H 및 부속서의 내용에 따름

3-2. 그 밖의 수입규제⁴⁹⁾

» 수입규제란?

-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임

○ 그 중,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라고 표현되는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WTO 협정 및 국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수입규제조치에 해당함

✓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l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 상계관세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 상계관세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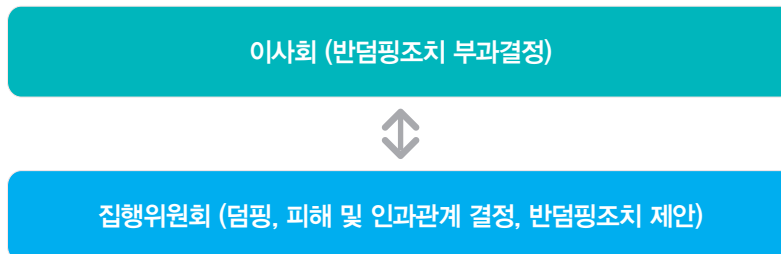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 EU의 무역구제 관련 기관

- EU의 덤핑방지 관련 무역구제를 위한 기관은 크게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EU 이사회(EU Council)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음

EU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영 기관 및 역할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EU 집행위원회) 기능적으로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용은 EU 집행위의 통상총국(Trade Directorate General)에서 담당함
 - 통상부는 8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는 H국(Directorate H)에서 이루어짐

- H국은 총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개의 팀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며, 나머지 5개 팀은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함

○ **(EU 이사회)** 집행위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덤핑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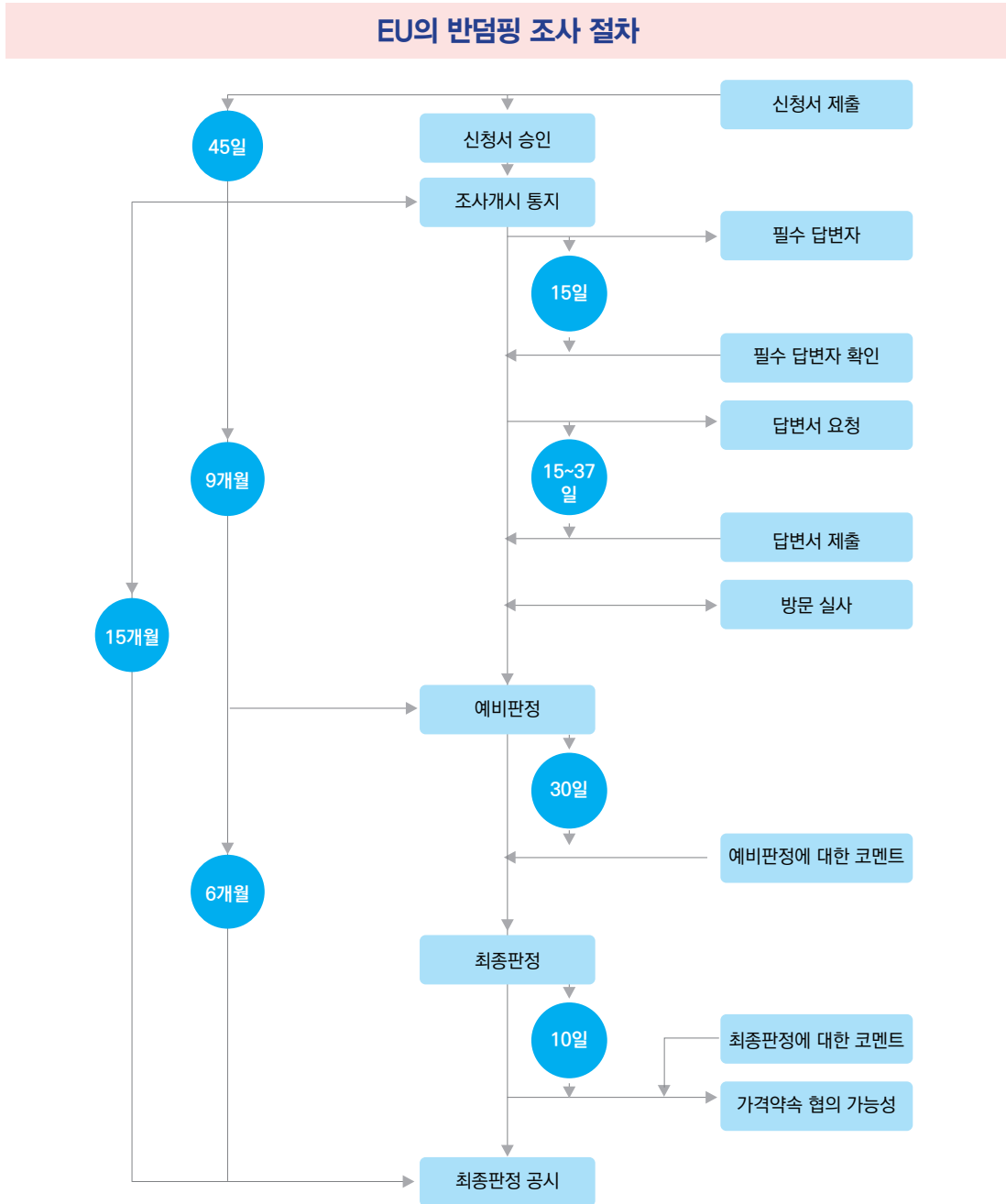
- 이사회는 각 EU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1인으로 구성되나, 논의되는 주제에 따라 구성원이 변경됨
-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제개정하고, 집행위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 또한 이사회는 실무기구로 상주대표위원회(COREPE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를 두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최종 검토하도록 하고 회원국과 이사회 사이의 연락기능을 담당함

○ **(자문위원회)** 각 회원국의 경제 또는 외교통상 관련 부서의 대표와 집행위 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 대표가 맡으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됨
- EU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각 단계별로 자문위원회의 협의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로부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수행해야 함
- 만일 자문위원회가 집행위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가부를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EU의 반덤핑 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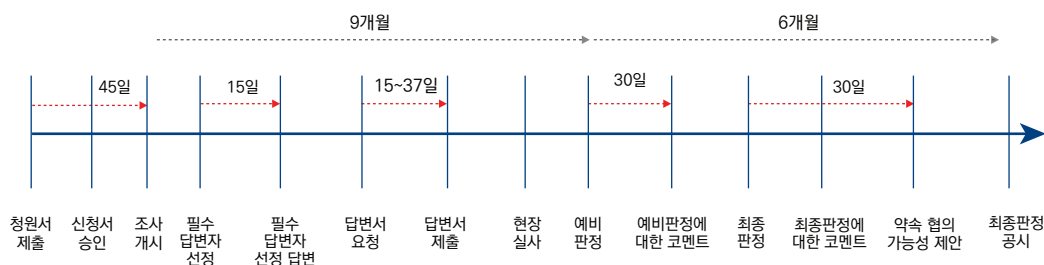
- EU의 반덤핑 조사는 EU 집행위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A. 조사개시)** EU 집행위는 역내 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
 - 적법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집행위는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문위원회가 반대시 덤핑조사는 개시되지 않음
- **(B.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집행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때 집행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예비판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부여함
- **(C. 최종판정)** 집행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고,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사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가격억속 수락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 후 이를 공시함
- **(D. 재심절차)** 재심절차는 덤핑조사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EU의 반덤핑 조사 절차 소요기간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4

영국의 수출규제⁵⁰⁾

» 수출규제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에 대해 상품의 유형, 원산지 및 도착지, 또는 거래 관계자에 따라 수출 당사국은 수출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 조치를 수출규제라고 함

○ 수출규제 대상은 국가 및 지역마다 상이하나 대표적으로 전략물자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전략물자란 민간용 또는 군사용, 두 가지 목적 모두로 사용될 수 있는 군수 품목 또는 이중용도 품목을 뜻함

○ 이와 관련하여 EU 회원국은 EU 공동차원의 수출 통제 법률을 제정 및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은 다음과 같음

- (이중용도 수출통제) EU 이사회에서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 법령 제정

· EU 이사회 규정 428/2009에 의거, 각국 관련 부처에서 이중용도

① EU 이중용도 수출통제 정책 관련 웹사이트 :

<https://ec.europa.eu/trade/import-and-export-rules/export-from-eu/dual-use-controls/>

- (무기 수출통제) 무기 수출에 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의거, 각국 관련 부처에서 무기 수출통제 시행

① EU 무기 수출통제 정책 관련 웹사이트 :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8465/arms-export-control_en

- (금수국 제재 및 금융제재) EU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 법령으로 제재 대상별로 다수의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각국 관련 부처에서 시행

① EU 금수국 제재조치 관련 웹사이트 :

https://ec.europa.eu/fpi/home_en

5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⁵¹⁾

»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영국은 미국, 독일, 중국과 함께 현재 세계 4대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국은 세계 3위의 거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가지고 있음
 - 영국의 전체 소매매출에서 온라인 소비는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인구 6,500만 명 중 90%에 달하는 5,9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추후 온라인 시장의 크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많은 기업들이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음

» 영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특징

(1) 영국 소비자의 특성 반영

- 영국인들의 주요 특징은 시간을 매우 중요시하며, 저렴한 가격을 무척 선호한다는 것인데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어 영국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함
-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온라인 쇼핑 비율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이로 지난 '12년 12월부터 '13년 1월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영국의 거대 오프라인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기에 이룸
 - 영국 최대의 가전 유통업체 Currys, 미디어 콘텐츠 유통업체 HMV, 비디오 대여점 Blockbuster 등
- 이로 최근 식료품 유통시장에서 대형 슈퍼마켓(SSM)들은 오프라인 매장 취급 상품 수를 줄이고, 온라인 배달 서비스에 판매 상품 수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2) 치열한 경쟁을 통한 급속 성장

- 영국의 대규모 온라인 소매기업으로는 Amazon, Tesco, eBay, Asos, Argos, Play.com, Next, John Lewi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음
 - 영국의 온라인 소매상들은 온라인 판매만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 소매상점과 온라인 소매상을 같이 운영하기도 함
- 각 업체들은 온라인 고객들의 편안한 쇼핑을 위해 결제와 배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격 할인 등도 매우 치열하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온라인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은 빠른 플랫폼의 발달과 가격 할인을 부추겨 영국 소비자들을 온라인 쇼핑으로 유입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
 - 실제 영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음

(3) 클릭 앤 콜렉트(Click-and-collet)

-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는 최근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한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송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주문 후 집 근처 소매점에서 물건을 찾는 배송방법을 말함
 -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는 소비자의 경우 배달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배송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늦은 배송, 부재 중, 물건 분실 등)을 해결할 수 있어 최근 소비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음
 - 또한 물건이 보관되는 라커는 소매상점 외부나 기차, 지하철역 등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물품의 구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을 직접 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4) 다양한 배송 시스템

- 영국은 고도로 발달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다양한 배송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경우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은 공유물류도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배송을 수행하여 더욱 쉽고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함
 - 물품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송 사업권을 허가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로 아이를 등교시키고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일반인이 승용차로 제품을 배송 하기도 하고, 트럭을 가진 사람이 물량을 받아 배송에 나서기도 함

(5) 모바일 커머스의 빠른 성장

- 영국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모바일 커머스 시장임
 - 2017년, 영국 온라인 구매의 43%가 모바일 기기에서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모바일 을 통한 구매가 영국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시간 및 비용 절약을 추구하는 영국 소비자들, 특히 젊은 쇼핑객들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거의 모든 구매를 수행하는 편임
-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바일 플랫폼은 거의 필수적으로 구축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패션 분야의 강세

- 2015년, 영국의 의류 및 신발 · 액세서리 전체 판매액(약 500억 파운드)의 20% 가량이 온라인에서 구매되었으며 현재는 약 30%까지 상승함
 - 영국에는 아소스(ASOS), 매치스패션, 파페치, 엔디클로딩과 같이 특히 유명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이 많으며 다양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은 전 세계 직구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United Kingdom



V

우리기업의 對영국 수출 및 FTA 활용애로와 그 대응방안

제1절 우리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제2절 주요 애로별 사례 및 대응방안

1

우리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우리기업의 對영국 수출 및 한-영 FTA 활용 애로

- 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 중 '19년 수출금액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을 선정하여 영국 수출 및 FTA 활용 애로에 관한 설문을 진행함

○ 설문결과, 총 75개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이를 애로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함

구분	애로유형	애로내용 사례
1	한-영 FTA 에 대한 정보부족	기존 한-EU FTA 협정을 한-영 FTA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
2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및 방법
3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수출품과 HS코드 불일치
4	영국관세청 및 관련 정보 수집	영국관세청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관련
5	원산지 및 비원산지 혼재시 6천유로 판단 기준	원산지, 비원산지 물품 혼재시 6천유로 판단 기준

자료: 75개의 영국 수출기업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구성

- 수집된 영국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① 한-영 FTA에 대한 정보 부족, ②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③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발생, ④ 영국 관세청 및 관련 정보 수집, ⑤ 원산지/비원산지 재료 혼재시 6천유로 판단 기준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다음에서는 우리기업이 영국 수출시 겪는 애로와 유럽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에 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함

2

주요 애로별 사례 및 대응방안

1. 한-영 FTA 관련 정보 부족

✓ 애로사항

- 영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M기업은 한-영 FTA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련규정

- 한-영 FTA 협정문
 - 원칙적으로 한-영 양국의 교역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도입함

- 다만 누적기준의 경우 상대국 또는 EU(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재료를 해당 당사국 원산지 재료로 인정
- 추가로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공정도 취득된 상품이 그에 후속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당사국내에서 수행했을 경우, 당사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인정(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적용)

✓ 문제해결

- 한-영 FTA는 한-EU FTA 양허수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본적으로 양허가 동일하다는 것은 인지하되, 해당 수출품목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한 자료는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FTA 일반현황 및 FTA KOREA(<http://www.fta.go.kr/main/>)의 FTA 정보광장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직접운송같은 경우에는 한-영 FTA 발효 후 3년간은 EU를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도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음

④ FTA 관련 정보 참고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털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관세법령정보포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YES FTA 교육지원센터: <http://www.yesftaedu.or.kr>
- FTA-PASS(활용) : <https://www.ftapass.or.kr/psr/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2.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 애로사항

- 영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A기업은 한-EU 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한-영 FTA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련규정

-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한-영 FTA 협정문 및 관세청 지침을 참고하되 해당내용이 한-영 FTA 발효 이후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 후 실행해야 함

✓ 한-영 FTA 인증수출자 규정

한-영 FTA 협정문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한-영 FTA 인증수출자 관련 지침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별도의 신청 없이 한-영 FTA 발효 후 자율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한-영 FTA 발효일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추가 지정 예정 - 자동 추가인증을 희망하는 한-EU FTA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한-영 FTA 발효예정일 기준으로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자율점검 필요 ▶ 자동 추가된 한-영 FTA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까지임 ▶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 이후인 경우 협정에 따라 한-영 FTA 발효일 3년 후 원산지 충족여부 등을 재심사 ▶ 한-영 FTA 품목별 신규 인증수출자 신청 시 한-영 FTA 발효 전에도 2019. 10. 2일 부터 인증신청 가능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19.10.02.)

☑ 문제해결

- 기존 한-EU FTA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영국 수출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한-영 FTA에서도 인증수출자를 활용할 수 있음
-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한-영 FTA 발효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을 그대로 가져감
- 만약,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 발효 전인 현재도 UNI-PA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관세청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對영국 수출기업이 한-영 FTA('21.1.1 발효예정)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 단, 한-영 FTA 발효 전에는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한-영 FTA 발효 후 확인 가능

3.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사항 발생

✓ 애로사항

- X기업은 영국 수출 시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영국 세관은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HS코드가 영국 HS코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함

✓ 관련규정

- 수출국과 수입국의 다른 HS 품목번호가 상이할 경우는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따름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원산지신고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신고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대국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 품목번호 확인서
-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식 서류는 최초 C/O 발행 시에 제출하고, 이후 동일 물품의 C/O 신청 시에는 제출의 생략이 가능함

자료: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18.07.09.)

○ 원산지 검증 관련

- 물품의 HS코드가 수출국-수입국 간 상이할 경우, 해당하는 HS코드가 모두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수입국 HS코드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검증시 불충족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 ① 공식서류로 HS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② 우리나라 HS코드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코드로 추가 인증 처리
- 즉, 수출국-수입국 간 물품의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시 먼저 우리나라 HS코드로 인증을 받은 후 품목분류가 상이하다는 공식서류와 수입국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면 수입국 HS코드로도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문제해결

- 수출자는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상대국 HS코드를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4. 영국 관세청 및 관련 정보 수집

✓ 애로사항

- 영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H사는 영국 관세청 및 영국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련규정

- 영국 관세청(HMRC) 및 영국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정보는 영국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① 접속 링크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및 HMRC(관세청) 접속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GOV.UK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yellow header with the GOV.UK logo and a search bar. Below this, a blue banner reads 'Welcome to GOV.UK' with the tagline 'The best place to find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Simpler, clearer, faster.' A search bar is also present. To the right, a section titled 'Popular on GOV.UK' lists several links: 'Coronavirus (COVID-19): guidance and support', 'Travel advice: coronavirus (COVID-19)', 'EU transition: get ready for 2021', 'Find a job', and 'Personal tax account'. Below the banner, a black bar contains the text 'Coronavirus (COVID-19) | Guidance and support'. A message box states 'Coronavirus guidance is being updated. Read the Prime Minister's statement for the latest information.' Below this, a list of 'HMRC services' is displayed, including 'sign in or register', 'Self Assessment', 'PAYE for employers', 'Tax credits', 'National Insurance', 'Income Tax', 'VAT', 'Child Benefit', 'Paying HMRC', 'Tax agents and advisers', and 'All HMRC services and information'.

자료: <https://www.gov.uk/>

- 세부내용

영국 관세청 연락처	
전화	(현지에서 걸 때) 0300-200-37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contact
주소	HM Revenus and Customs-CITEX Written Enquiry Team Local Compliance S0000 Newcastle NE98 1ZZ United Kingdom

자료: 주요 교역국 관세청 민원상담센터

- 기타 유럽국가 관세청 정보

구분	주요내용
네덜란드	명 칭: Customs Information Line 주요업무: 관세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연 락 처: [전 화] 0800-0143 [홈페이지] http://www.belastingdienst.nl/english
독일	명 칭: The Customs'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주요업무: 관세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연 락 처: [전 화] +49-351-44834-530 [홈페이지] https://www.zoll.de/EN/Home/home_node.html
이탈리아	명 칭: AGENZIA DELE DOGANE E DEI MONOPOLI 주요업무: 관세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연 락 처: [전 화] +49-351-44834-530 [홈페이지] https://www.zoll.de/EN/Home/home_node.html
폴란드	명 칭: Customs Service Information Center 주요업무: 폴란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연 락 처: [전 화] (현지에서 걸 때) 801-470-477 [홈페이지] www.mf.gov.pl

5. 원산지, 비원산지 물품 혼재시 6천유로 판단 기준⁵²⁾

✓ 애로사항

- S사는 영국에서 가구를 수입하고 있음. S사가 수입하는 단일 탁송화물은 EU산 물품과 EU 역외산 물품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인증수출자 제출 기준인 6,000 유로를 초과하지만, EU 역내산 물품만 고려할 경우엔 6,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음. 해당 수입시 인증수출자 번호의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관련규정

- 한-영 FTA 협정문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제품이 영국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자료: 한-영 FTA 협정문

☑ 문제해결

- 영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닐 때,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원산지 신고문안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생략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필요
- 6,000유로의 기준은 단일 탁송화물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원산지와 비원산지 제품이 혼적된 경우 인증수출자 원산지 신고서 발행 금액 기준인 6,000유로 금액에 비원산지 제품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인증수출자번호 기입없이 FTA 특혜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 표기를 하는 상업송장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을 구분해 표기가 필요함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United Kingdom



부 록 전문가 기고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전망 및
시사점

KIEP 윤형준 연구원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형준 연구원

1. 답보상태의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EU와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이 답보를 계속하고 있다. 2020년 3월 2일-5일 나흘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1차 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이 났다. 3월 18일 예정되었던 2차 협상은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중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의 협정문 초안 교환으로 마무리되었다. 영국측 제안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EU측에 따르면 아직 협상의 범위마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⁵³⁾

영국의 EU 탈퇴는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2020년 1월 개시까지 무려 3년 7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때문에 11개월 남짓의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은 미래관계 협상을 결론짓기엔 매우 짧은다는 점이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현재까지 이행기 연장을 고려하지 않아 또 다른 '노딜'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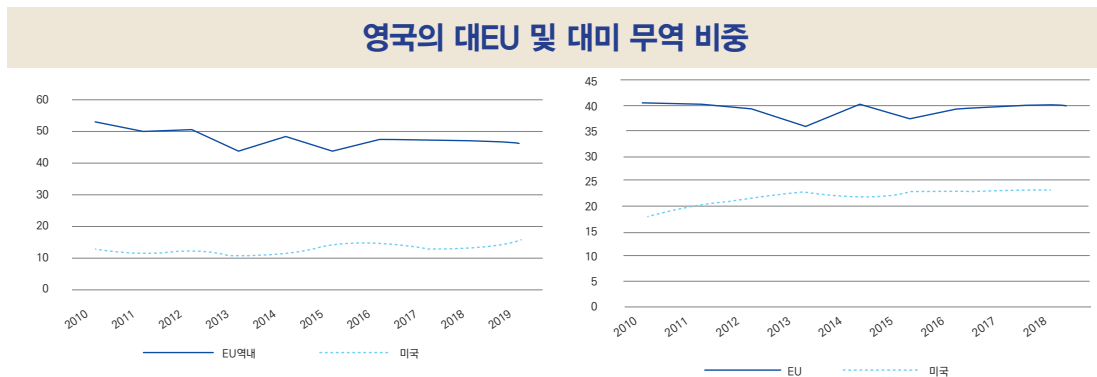
영국은 과연 EU 탈퇴를 통해 그동안 목표하였던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브렉시트로 발생한 영국의 통상정책 과제와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 주요 쟁점, 그리고 영국이 진행 중인 통상정책 현황을 살펴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을 전망해 보고 한국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과제

영국은 브렉시트로 오늘날 4억 5천만 인구 세계 2위의 경제권인 EU와의 관계를 백지에서부터 다시 설정하게 되었다. 영국이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에 가입하여 단일시장에 참여한 지 47년 만의 일이다. 통상정책 측면에서 영국은 브렉시트로 EU와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존 EU가 체결하였던 무역협정을 유지하는 한편 원산지 기준 적용 변화에 따른 무역 구조를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 EU와의 통상관계 재협상

EU는 영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지역이다. 이 때문에 영국의 가장 큰 과제는 EU와의 재협상을 통해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영국 상품 수출의 EU 비중은 46%이며 개별 회원국으로는 독일이 10% 그다음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각각 7%와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EU 개별 국가로는 미국이 15%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EU 단일시장 전체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에도 EU 의존은 매우 크다. 2018년 기준 영국 서비스 수출의 42%가 EU 대상이었으며 미국은 23%에 수준에 불과하다.(하단 그림 참고)



자료: Eurostat 통계토대 저자 작성 (검색일 2020.05.03.)

전문가들은 협상이 노딜로 끝날 경우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영국 무역이 WTO 협정관세 체제로 돌아갈 시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가 -2.9%에서 -8.7%까지 역성장 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⁵⁴⁾ 더군다나 경제 규모와 무역 비중 차이로 인해 그 피해는 EU보다 영국에 비대칭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영국정부로서도 EU와의 노딜 만큼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2) 기존 EU체결 무역협정 유지

영국은 브렉시트로 EU가 그동안 맺은 43개 무역협정에서 자동으로 이탈하게 되며 그에 따라 영국 무역의 16%가까이를 차지하는 70개국 이상에 대한 시장접근을 재협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그림)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참고). 대체협정 체결이 필요한 영국의 상위 10개 무역 상대국 중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남아공,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과는 대체무역협정이 체결된 상황이며 캐나다, 일본, 터키, 싱가포르, 멕시코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영국의 대체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비중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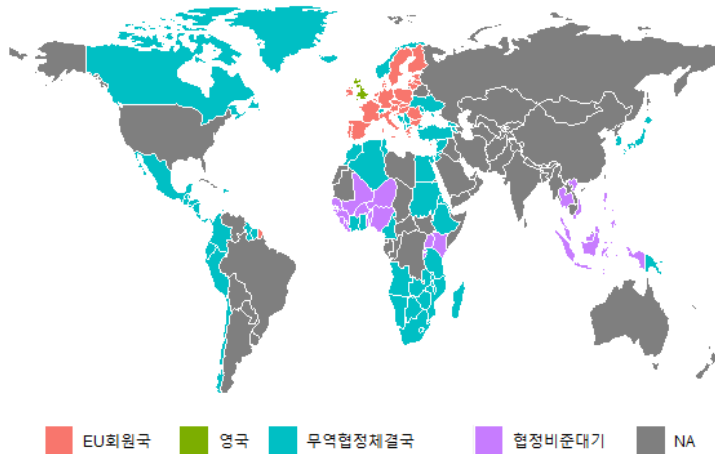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대체 FTA	수출		수입		교역규모		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4	스위스	체결	15,615	3.3	23,663	3.4	39,277	3.4	-8,048
5	노르웨이	체결	4,667	1.0	19,787	2.9	24,455	2.1	-15,120
6	캐나다	추진	6,725	1.4	15,910	2.3	22,635	2.0	-9,185
7	일본	추진	8,339	1.8	13,024	1.9	21,363	1.8	-4,685
8	터키	추진	6,414	1.4	12,123	1.8	18,537	1.6	-5,709
14	남아공	체결	2,349	0.5	8,459	1.2	10,808	0.9	-6,110
15	대한민국	체결	4,803	1.0	5,034	0.7	9,837	0.8	-231
16	싱가포르	추진	6,882	1.5	2,211	0.3	9,093	0.8	4,672
22	멕시코	추진	1,804	0.4	3,386	0.5	5,190	0.4	-1,582
26	이스라엘	체결	1,870	0.4	1,356	0.2	3,226	0.3	514
기타	66개국	-	14,282	3.1	12,099	1.7	26,381	2.3	2,184
계	76개국	-	73,751	15.8	117,052	16.9	190,803	16.4	-43,302

주: 2019년 기준. 순위는 영국 전체 교역 규모(수출 및 수입 금액의 합) 기준.

자료: 조동희, 윤형준(2020),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KIEP 기초자료

그러나 교역상대국 중 스위스, 노르웨이 등 비EU 국가들은 EU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무역연속성의 확보는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결과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행기 종료시점까지 대체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기타 국가들과의 무역에는 WTO협정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무역차질 또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노딜을 감내하더라도 EU의 간섭을 벗어나 신흥시장 확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일부 브렉시트 강경파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47년간 EU에 위임되어 있던 통상정책 역량을 모든 무역 대상국에 발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협상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본문 4장 참고).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자료: WTO RTA 데이터베이스 및 EC (검색일 2020.5.4.) 토대 저자 작성

(3) 원산지 기준 적용 변화에 따른 무역구조 재점검

영국의 기존 무역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영국제품은 브렉시트로 역내산 인정 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영국의 유통망과 부품공급선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산지 기준 관련하여 영국(북아일랜드)과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와 영국은 이행기 종료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관세동맹에서 탈퇴하지만 아일랜드(EU)와 북아일랜드(영국) 간 국경에서 통관은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아일랜드 섬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경 문제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EU-영국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주요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은 EU 시장 접근 유지, 기존 EU가 맺은 무역협정의 빠른 복원, 그리고 원산지조항에 따른 가치사슬 점검 등에 통상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은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의 완수이지만 양측은 협상의 형식과 범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1) EU의 '공정경쟁환경' 원칙과 영국의 'EU-캐나다 CETA' 모델

우선 EU는 영국과의 상호 의존 정도와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이 EU의 규제를 벗어나 유럽 시장접근만을 누리는 불공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EU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확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4월 공개된 협정문 초안에서 EU는 정부보조금, 경쟁법, 국영기업에 관한 규제, 세제, 사회 및 노동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는 영국이 유럽 표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법이 적용되 위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영국은 EU가 주장하는 공정경쟁환경 원칙과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애초에 브렉시트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위에서 언급된 분야에 대한 EU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였기 때문이다. 대신 영국은 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기반한 무역관계 설정을 희망하고 있다.⁵⁸⁾ EU-캐나다 CETA는 상품무역은 품목기준 98%를 무관세로 개방하며 서비스 시장 또한 선택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결국 시장접근은 극대화 하되 EU의 간섭은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2)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 : 금융시장 접근과 어업권

협상 기간 중 EU의 가장 큰 협상 카드는 데이터 적격성(Adequacy) 평가와 금융 동등성(Equivalence) 평가로 영국 금융서비스의 EU 진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 데이터 적격성 평가는 비 EU국가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의 기준에 대응함을 평가받는 것으로 금융 데이터의 EU 역외 반출 및 처리에 필수적이다. 금융 동등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의 규제가 EU수준에 부합함을 인정받는 것으로 EU 내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다. EU는 서비스 제공이 인력 이동의 자유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이 원하는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영국이 공정경쟁환경 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⁵⁹⁾

영국의 대EU 협상 카드는 어업권이다. 영국 경제수역은 유럽 최대 어장으로 유럽의 어획량의 약 46%가 이곳에서 산출되고 있어 유럽으로서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⁶⁰⁾ 그동안 EU 회원국 경제수역 내 어획은 EU차원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으로 관리되었으나 브렉시트로 EU는 영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어획 쿼타를 정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다년 쿼터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어장 접근을 희망하는 반면 영국은 현재 EU-노르웨이 어획협정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어업권 설정하여 협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금융시장 접근과 어업권이 서로 맞교환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어업의 경우 EU GDP의 0.5% 수준으로 그 비중은 매우 낮으나 EU 회원국 중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연안 국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으로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등성 및 적합성 평가 결과 발표와 어업협정이 체결이 예정된 6월과 7월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⁶¹⁾

(3) 협상 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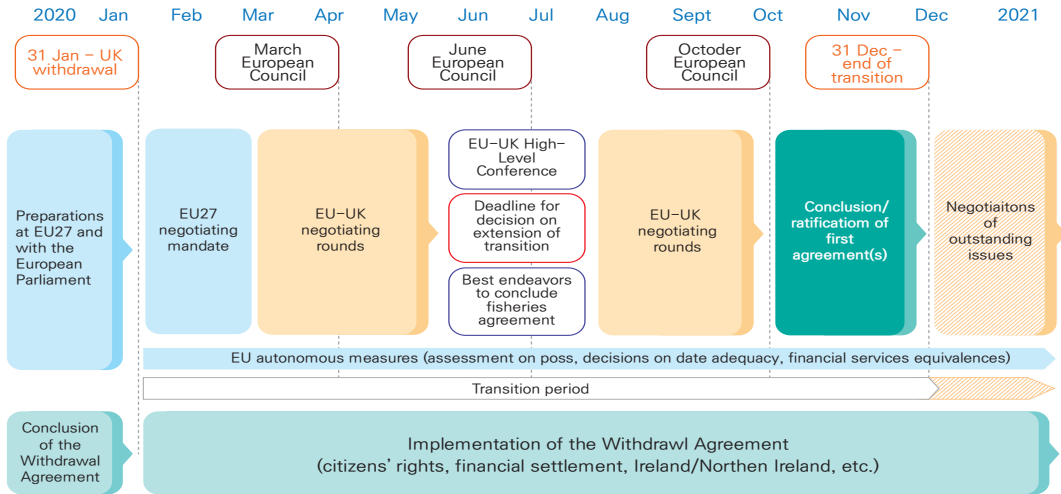
현실적인 문제는 이렇듯 복잡한 협상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양측의 비준 및 승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협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주요 일정 참고). 미래관계 협상은 탈퇴 협상과는 달리 영국의 비준뿐만 아니라 기존 EU 회원 27개국 정상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절차문제로 인한 우발적인 노딜 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양측의 협상 역량에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고 있어 연내 타결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 다만 EU의 미래관계 협상의 법적 근거가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로 개별 회원국의 의회 비준까지는 요구되지는 않는다.

EU-영국 탈퇴협정은 올해 7월 1일 전까지 양측이 합의할 경우 이행 기간을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⁶²⁾ 문제는 협상 연장에 적극적인 EU와는 달리 영국은 현재까지 이행기 연장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영국 보수당 정부가 지난 12월 총선 당시 브렉 시트의 완수 강조하며 선거에 승리하였고, 탈퇴 협정 이행법에 이행 기간 연장 요청 금지조항 까지 삽입하였기 때문에 실제 연장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⁶³⁾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주요 일정

Negotiations on EU-UK future partnership: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press-conference-slides.pdf> (검색일 2020.5.8.)

4. 영국의 통상정책 추진 현황

(1) 기본 방향 및 협상 우선대상국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개시 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향후 3년 동안 광범위한 무역협정 타결을 통해 통상의 80%를 자유무역에 기반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⁶⁴⁾ 이를 위한 우선 협상대상국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가 명시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들 국가들과의 통상관계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 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참여 중단으로 동력을 잃은 CPTPP에 논의에 다시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EU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 중 대한민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이스라엘 등과는 영국과 별도 FTA를 체결하여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있다.

(2) 영국의 우선협상 대상국 무역정책 현황

영국 정부는 2019년 미국, 일본 및 뉴질랜드와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우선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는 이행기 종료 후에도 전자파시험,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인증 절차의 중복을 피하게 되었다 (아래 표 참고). 일본과의 협정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체결 상호인증협정 적용 범위

제품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자파시험인증(EMC)	O	O	O
자동차 부품(automotive products)	X	O	X
저전압 제품(low voltage equipment)	X	O	O
기계류(machinery)	X	O	O
의료장비(medical devices)	X	O	O
압력장비(pressure equipment)	X	O	O
무선통신장비 (telecommunication equipment)	O	O	O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O	O	O
해상장비 (Marine Equipment)	O	X	X

자료: 영국정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agreements-with-non-eu-countries> (검색일 2020.5.8.)

한편 영국은 미국과 FTA협상을 공식 5월 4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⁶⁵⁾ 미국과의 협상은 농업 금융서비스, 의료, 자동차 산업 등 양측에게 민감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⁶⁶⁾ 일본과의 FTA협상은 기존 단계 발효 중인 EU-일본 FTA를 기반으로 재추진될 예정이며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큰 이견이 없어 연내 타결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5. 한국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2019년 한·영 FTA를 체결하여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원산지 규정 관련, 양측은 EU 부분품을 사용하거나 EU를 경유한 제품도 이행기 종료 후 3년간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⁶⁷⁾ 그러나 기존 한-EU FTA에서는 영국 부분품이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될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역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EU 및 영국간의 부품공급선과 유통망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영국과 우선협상 대상국간 무역 패턴을 살펴볼 때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와 중복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 표 참고). 영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저배기량 가솔린자동차 및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어 영-일 무역협정에서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또한 영국은 미국과 호주에 고배기량 자동차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품목과도 일부 겹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과 이들 국가 간의 FTA 협상 추이를 지속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국 주요 무역상대국별 수출입 상위 품목

(2019년, 금액기준)

대상국	수출	수입
미국	1. 1,500~3,000 cc 가솔린 자동차 (870323) 2. 백신 (300220) 3. 3,000cc 이상 가솔린 자동차 (870324)	2. 석유 (270900) 3. 터보제트 (841112) 4. 터보제트 부분품 (841191)
일본	1. 터보제트 (841112) 2. 의약품 (300490) 3. 터보제트 부분품 (841191)	2.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40) 3. 가스터빈 (841181) 4. 1,000~1,500cc 가솔린 자동차 (870322)
호주	1. 1,500~3,000cc 가솔린 자동차 (870323) 2. 인쇄물 (490199) 3. 의약품 (300490)	2. 납 (780199) 3. 의료기기 (902190) 4. 포도주 (220429)
한국	1. 석유 (270900) 2. 터보제트 (841112) 3. 2,500cc 이상 디젤자동차 (870333)	1. 1,000~1,500cc 가솔린 자동차 (870322) 2.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40) 3. 1,0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 (870321)

주 : HS코드 6자리 기준.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 반가공 금(710813)이 수입 1위지만 비정기적 무역으로 표에서 제외
출처: UNCOMTRADE (검색일 2020.5.3.) 토대 저자 작성

이렇듯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브렉시트를 기존 EU-영국 관계에서 보다 확대하여 세계 무역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관세청 및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문헌

- 1) World bank,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10.24.), '정년 없앤 영국에서 벌어진 일들' 주간조선 (2019.06.10.)
- 2) 주영대한민국대사관 '영국 2020.1/4분기 경제성장률(속보) -2.0% 기록'(2020.05.13.)
- 3) 영란은행, '20.6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및 시장반응, 한국은행 런던사무소(2020.06.18.)
- 4) KOTRA 해외시장뉴스(2018.12.24., 2020.01.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
- 5)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6.11.)
- 6) KOTRA 국가·지역정보(영국)
- 7)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8) BBC News “브렉시트: 영국, 47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2020.02.01.)
- 9) KOTRA 해외시장뉴스(201.08.03.), “英 상반기 금수출 798t 전년 동월비 9.6배 증가” 아시아 경제(2018.02.09.), 국가별 에너지 시장 현황 보고서 EU-영국편(2016.06.17.), “영국 북해 유전, 14년만에 효자로 변신” 파이낸셜뉴스(2018.02.27.), 대한석유회(<http://www.petroleum.or.kr/>),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영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2018), 영국의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2018-2030), BioNglobal, “2년전 법인세 내렸던 영국, 15%로 또 낮춘다”, 조선일보(2017.04.28.),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중기이코노미(2019.12.30.), 2018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7호(2016.10.14.)
- 11)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산통부 보도자료(2019.08.22.), “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산통부 보도자료(2019.10.28.)

- 12)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산통부 보도자료(2019.08.22.), “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산통부 보도자료(2019.10.28.)
- 13)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2019.8).관계부처합동, FTA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contents.do?method=contents&contents_seq=145)
- 14)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15)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16) 17년 국가별 통관정보-영국, ‘영국 정부 발표 No Deal 브렉시트 상황 대응 안내서’, 주영국 대사관(2018.09.26.)
- 17) ‘영국 정부 발표 No Deal 브렉시트 상황 대응 안내서’, 주영국대사관(2018.09.26.)
- 18) ‘영국, 독자적 관세 체계 ‘글로벌관세’ 발표’,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5.22.), “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01.21.), TRADLINK(<https://www.tradlinx.com/trade-dictionary/UKGT>)
- 19)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EU 수출자의 정의 규정 시행 안내”, 법률신문(2020.02.27.)
- 20) “다가오는 英 FTA,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간소화”, 한국관세신문(2019.10.02.),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 안내, 정부24(<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96349>)
- 21)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FTA 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mobile/faq.do?method=viewFaq&reqStdId=53&reqTp=00207¤tPage=1>)
- 22)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FTA 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mobile/faq.do?method=viewFaq&reqStdId=53&reqTp=00207¤tPage=1>)
- 23)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24)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 25)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26)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27)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BIFA 관세시스템변경 지연에도 정부지지”, Cargo news(2020.02.17.)
- 28)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29)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30)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31)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 32)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FTA 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mobile/faq.do?method=viewFaq&reqStdId=53&reqTp=00207¤tPage=1>)
- 33)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 FTA 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mobile/faq.do?method=viewFaq&reqStdId=53&reqTp=00207¤tPage=1>)
- 34) KOTRA 국가·지역정보(영국)
- 35) KOTRA 국가·지역정보(영국)
- 36)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www.gov.uk/>), “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중국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 보도자료(2020.02.13.)
- 37) BBC News(<https://www.bbc.com/>),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2627, 2020.01.31.), 브렉시트 진행경과 및 향후전망,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2019. 3), 영-EU 탈퇴 협정 개관, 주영한국대사관(2018.11.22.), 법률노트-브렉시트 관련 주요 영국법령 요약, 주영한국대사관(2019.12.19.)

- 38) 포스트 브렉시트, 동시다발적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영국,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5.22.),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 ‘커지는 노 딜 공포’… 영-EU 미래관계 4차 협상도 진전 없어, 연합뉴스(2020.06.06.)
- 39)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3.13.), “英, 세계 첫 ‘탄소 제로’ 법 제정”, 전자신문(2019.06.30.), “영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 되겠다“ G7 국가 중 최초”, 연합뉴스(2019.06.27.), “전기차 빅뱅...2020년을 잡는 자, 모빌리티의 미래 주도한다”, 중앙일보(2020.01.02.)
- 40) 영국의 코로나19 vs 2008년 금융위기 경제 상황 및 소비 트렌드 비교,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3.31.), “영국 보건장관 ”이동제한령 무시하면 야외운동 금지할수도“, 매일경제(2020.04.05.)
- 41) “10월 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산통부 보도자료(2019.10.28.), “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산통부 보도자료(2020.01.21.),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http://overseas.mofa.go.kr/gb-ko>)
- 42)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9.8), FTA 강국, KOREA - 비관세장벽 정의(<https://www.fta.go.kr/>),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 KSA(2018),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KIEP(2017), UACTAD TRAINS NTM DB 등
- 43)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
- 44) 한-영 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합동(2019.8), FTA 강국, KOREA - 비관세장벽 정의(<https://www.fta.go.kr/>),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 KSA(2018),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KIEP(2017), UACTAD TRAINS NTM DB 등, 제약산업정보포털(<https://www.khidi.or.kr/>) 등
- 45) UNCTAD TRAINS(<https://trains.unctad.org/>),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 산업의 영향 분석, KERI Insight(2017)
- 46) UNCTAD TRAINS(<https://trains.unctad.org/>),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KIET 산업연구원, 2016, TradeNavi(<http://www.tradenavi>.

or.kr/), 한-EU FTA 추진 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KOTRA 통상전략팀(2006), 제
약산업정보포털(<https://www.khidi.or.kr/>),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TBT) 동향과 피해사례,
KOTRA(2006), 국립전파연구원(<https://rra.go.kr/>), 적합성 평가제도 및 동향, 한국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김홍준 연구사(2011), 정보통신기기 DoC제도 도입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2003

47) UNCTAD TRAINS(<https://trains.unctad.org/>)

48) ISO 인증경영지원센터(<https://iso-certification.kr/>)

49)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www.ntb-portal.or.kr/>)

50)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

51) DHL 코리아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dhl_korea/)

52) <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selectOvrsCsclInfo.do?mi=10420>

53)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739
(검색일 2020.5.8.)

54) Catherine Mathieu, “Brexit: What Economic Impacts Does The Literature Anticipate?”

55) Oxford Analytica, “Brexit will Affect EU and UK trade policy differently” (검색일 2020.5.7.)

56) 한·영FTA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은 김정균(2020), 「전환기간에 돌입한 브
렉시트: 우리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국제원산지정보원 FTA무역리포트 2020년 1호 참고

57) 유럽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200318-draft-agreement-gen.pdf>
(검색일 2020.5.8.)

58) 영국의회, [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
statements/written-statement/Commons/2020-02-03/HCWS86/](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statement/Commons/2020-02-03/HCWS86/) (검색일 2020.5.8.)

-
- 59) 유럽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326
(검색일 2020.5.8.)
- 60) Fishing For Leave, <https://fll.org.uk/post-brexite-tac-boom-the-robbery-of-uk-resources/>
(검색일 2020.5.8.)
- 61)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0/02/28/fishing-uk-european-union-brexite-trade-talks-cfp/> (검색일 2020.5.8.)
- 62) 영국 유럽연합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 bill · WAB) 132조
- 63) 영국 총선 관련 내용은 조동희, 윤형준(2020),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02 참고
- 64) 영국의회, <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statement/Commons/2020-02-06/HCWS96/> (검색일 2020.5.8.)
- 65)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d-us-start-trade-negotiations> (검색일 2020.5.8.) 및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u>
- 66) Politico 2020.5.5. 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20/05/05/5-things-to-watch-in-uk-us-trade-talks-236837> (검색일 2020.5.8.)
- 67)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007&bbs_cd_n=81

신규 협정 체결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